

1995 인구주택 총조사

조 사 지 침 서

(표본조사구용)



통 계 청

차 례

I. 조사개요	3
II. 조사일정	6
III. 조사대상	8
IV. 준비조사	13
V. 본 조사	22
VI. 조사표 작성 요령(표본조사표)	26
VII. 외국인 조사	54
VIII. 빈집 조사	60
IX. OMR조사표 작성 및 관리 요령	63
X. 조사표류 검토, 정리 및 제출	79

I. 조사개요

1. 조사연혁

- 인구 총조사 : 1925년이래 15차 조사
- 주택 총조사 : 1960년이래 7차 조사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 3 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 5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승인된 법정 통계 조사

- ┌ 인구 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1호
- └ 주택 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2호

3.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199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 사 기 간 : 1995. 10. 30~11. 9

4. 조사지역 및 대상

- 조사지역 :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
- 조사대상 : 1995년 11월 1일 0시 현재 조사지역 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

6. 조사항목 : 총 28개 항목

가구원에 관한 사항(16개 항목)

- ①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별 ④ 나이 ⑤ 종교 ⑥ 출생지 ⑦ 5년전거주지
 ⑧ 교육정도 ⑨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⑩ 이용교통수단 ⑪ 통근·통학 소요시간
 ⑫ 경제활동상태 ⑬ 산업 ⑭ 직업 ⑮ 종사상의 지위 ⑯ 혼인상태

가구에 관한 사항(7개 항목)

- ① 거처의 종류 ② 가구구분 ③ 점유형태 ④ 임차료 ⑤ 사용방수
 ⑥ 주거시설형태 ⑦ 거주기간

주택에 관한 사항(5개 항목)

- ① 연건평 ② 대지면적 ③ 층방수 ④ 건축년도 ⑤ 편익시설수

※ 조사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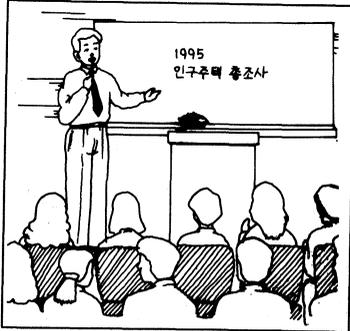
조사 휴대용품	준비조사용	본조사용	부재가구 조사용
조사요원증	가구명부(조사구별 3매)	일반조사표(표본, 외국인,	조사표 기입요령
조사요원마크	조사구요도(조사구별 2매)	빈집)	조사원 연락전
조사지침서	가구일련 번호표(스티커)	일반조사표 표지	비밀보호용 봉투
사무용품(가방, 볼펜, 받침대, 연필, 지우개)	가구(홍보용)전단	OMR조사표(표본 I, 표본 II, 외국인, 빈집) OMR조사표 보호용 비닐 연령조건표	

7. 조사결과와 활용(조사목적)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장·단기 계획수립
- *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 성별 및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여 식량 수급 계획, 노인복지, 병력 자원 수급, 인구정책 등의 수립에 활용
- * 지역별 인구, 가구, 주택수를 파악하여 지역투자계획, 지역개발계획, 국토건설개발 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활용
- *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등의 조사를 통한 가족구성, 규모 등을 파악하여 소년소녀 가정가구 대책, 노인가구 지원 계획 등 가족관련 계획수립에 활용
- * 국민의 교육정도를 파악하여 교육 수급 대책, 교육시설 확충, 교원양성, 국민 평생교육 진흥 계획 등의 수립에 활용
- * 출생지, 5년전 거주지의 조사를 통하여 이동 횟수, 이동 성향, 이동지 등을 파악하여 인구의 대도시 집중 문제와 그 대책,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 개발, 주택 및 주거시설 공급 계획 등의 수립에 활용
- * 통근·통학 상태,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및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도로망 확충, 전철·지하철 건설, 버스 노선 조정, 광역 교통행정 계획 등의 수립에 활용
- * 경제활동상태, 산업·직업 등 국민경제구조를 파악하여 고용대책, 신규 노동력 수급대책, 산업구조 개선, 여성 취업 확충, 노인 산업 육성 등 각종 고용정책 등의 수립에 활용
- * 주택종류별 주택수, 주거시설, 건축년도, 임차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택공급, 재개발, 주거시설 개선, 전세금 안정대책 등의 각종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
- * 주거의 안정상태, 사용방수 등 주거생활의 질을 파악하여 국민의 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에 활용
- * 각급 연구소와 교육기관 및 개인의 연구자료로 활용
- * 기업과 개인의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 *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 국제간 비교자료로 활용

II. 조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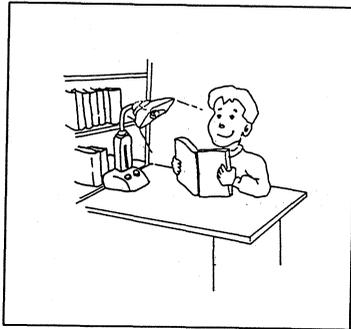
1. 조사요령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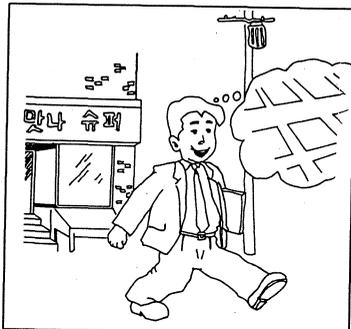
(10월 12일 ~ 26일 중 2일간)



2. 조사요령 숙지



3. 준비조사



(10월 30일 ~ 31일)

- 조사요령 교육
- 조사용품 수령
 - * 조사표류 관리 철저
 - * 오염이나 훼손 방지
 - * 조사표류 절약·보관 철저

- 조사요령 숙지

- 조사구 경계 확인
- 조사구역도 보완 작성(2부)
 - * 거처 확인 보완, 가구 파악, 거처번호 부여
- 가구명부 작성(3부)
- 가구(홍보용)전단 배부
- 가구 일련번호표(스티커) 부착
 - * 조사구번호, 가구번호를 기재하여 대문에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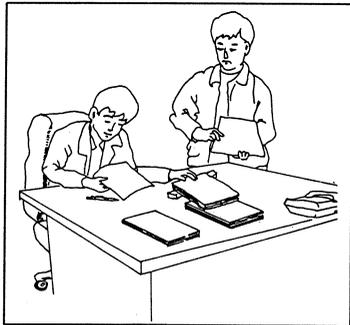
4. 본 조사



(11월 1일~9일)



5. 조사서류 검토·정리



(11월 1일~9일)



6. 제 출



(11월 9일까지)

- 가구 방문
- 적절한 응답자 선정
- 일반조사표 작성
 - *적합한 응답자가 없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재방문하여 조사(조사원 연락전을 이용하여 재방문 일자를 약속)

- 조사서류 정리
 - *조사표를 매일 검토하여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완성된 조사표는 재방문하여 작성
- 조사항목의 누락사항 등 확인 및 보완
- OMR조사표에 이기
 - *완성된 조사표는 매일 작성

- 조사서류의 내용 최종 점검
-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III. 조사대상

-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95년 11월 1일 0시 현재 담당 조사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가구 및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외국인도 모두 조사대상이 되나 외국의 외교관, 외국 군인·군속 및 그 가족과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가 구

가구란 1인 또는 2인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이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도 다를 수 있다.

○ 가구구분

① 일반가구

- 혈연가구 : 혈연가족 관계로만 구성된 가구
- 혈연가족과 혈연관계가 없는 5인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비혈연 5인이하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5인이하의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 1인 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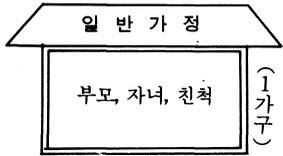
② 집단가구

- 비혈연 6인이상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6인이상의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수녀원, 대사찰 등 특정시설내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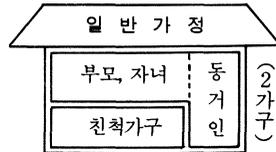
③ 외국인가구

- * 혈연관계와는 상관 없이 외국인(외국 국적 소지인)들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은 일반가구로 조사한다.
- *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외국인 가구로, 한국인은 일반 또는 집단가구로 조사한다.(「Ⅶ. 외국인 조사(54쪽)」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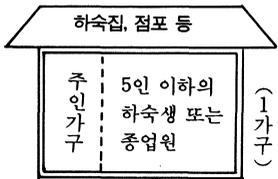
가구구분 사례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가구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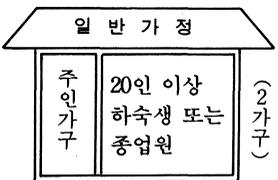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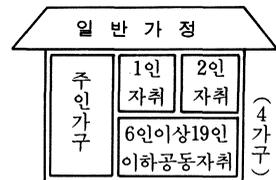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또는 종업원은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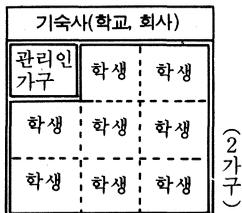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 또는 종업원이 6인 이상 19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인가구로부터 독립시켜 별개의 집단가구로 조사



*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인 이상의 하숙생 또는 종업원은 별개의 집단가구(기숙시설조사구)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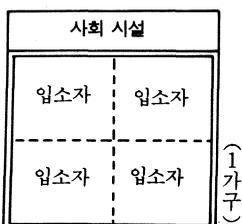
*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 하는 1인가구와 자취생은 자취단위별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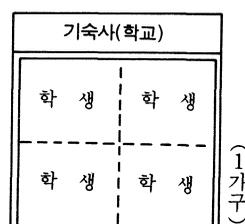
* 기숙사와 사회시설내에 관리인 또는 주인 가구가 독립취사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이들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기숙생 또는 집단인원들은 일괄하여 하나의 집단가구로 조사



* 외국인과 한국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은 외국인 가구로, 한국인은 한국인 가구로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가구로 조사



*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 사회시설과 대사찰, 수녀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시설가구로 조사



*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명칭이 기숙사라도 독립적인 취사, 취침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

2. 가구원

가구원이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원」과는 다를 수 있다.

가구원으로 조사되어야 할 사람



*본래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잠시 친척집 방문, 여행, 출장중인 가족



*기간을 불문하고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간병 중)인 가족



*예비군 훈련 또는 방위소집 근무 중인 가족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기능요원, 연구요원으로서 훈련중이거나 근무중인 가족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 (교도소)에 미결수로 들어가 있는 가족
*즉결 심판에 의하여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 중인 가족



*군부대 밖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으로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가족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만의 부재 중인 가족

타지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람



*취업, 취학 등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외지에서 하숙, 자취 중인 가족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요양소,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 중인 가족



*군(현역·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또는 전투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한 가족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족(간부후보생)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에 수용된 가족



*군부대 밖에서 혼자 방을 얻어 별도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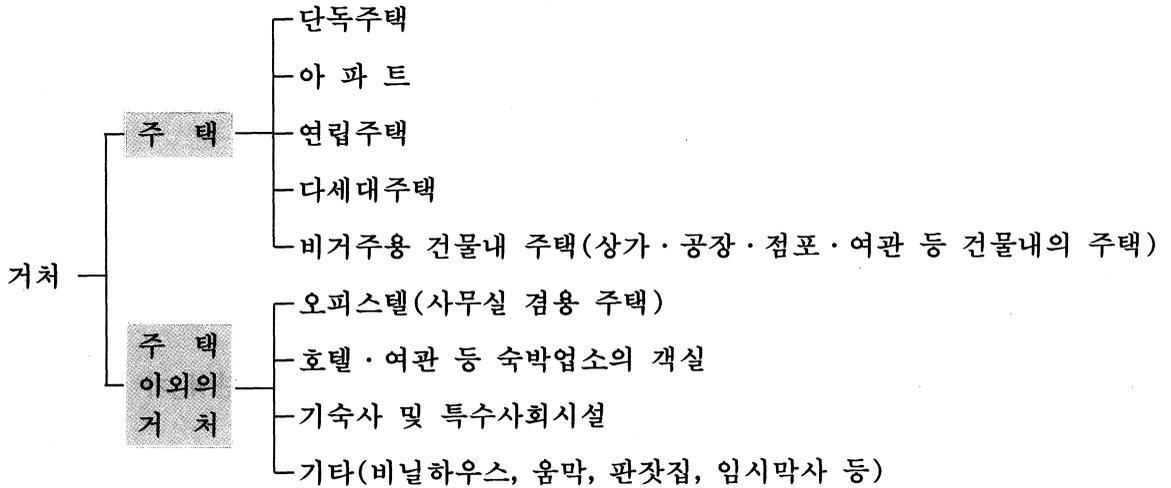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으로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가족은 기숙사에서 조사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난지 1개월이 넘는 가족
※일정 주거지가 없는 사람은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발견된 장소를 생계단위로 하여 1개의 가구로 간주하여 조사)

3. 거 처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주 택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첫째, 영구건물이며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통상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 및 매매(분양)가 불가능한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포함된다.

○ 아파트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상가아파트 포함).

○ 연립주택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다세대주택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르다.

*건물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주택」, 200평이하이면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공장·점포·여관 등)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주택의 요건 중 「④소유 또는 매매의 한단위」가 해당되지 않아도 주택이 됨을 유의한다.

*「단독주택」인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거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비교하여 주거용이 크면 「단독주택」으로, 영업용이 크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단위를 말한다.

○ 오피스텔 : 사무실 겸용 주택

○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구조물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의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부분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인가구의 거주부분이 숙박업소 건물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해당됨을 유의한다.

○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보육원, 수녀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이 해당된다.

○ 기타

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암자, 건설 공사장의 임시막사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된다.

IV. 준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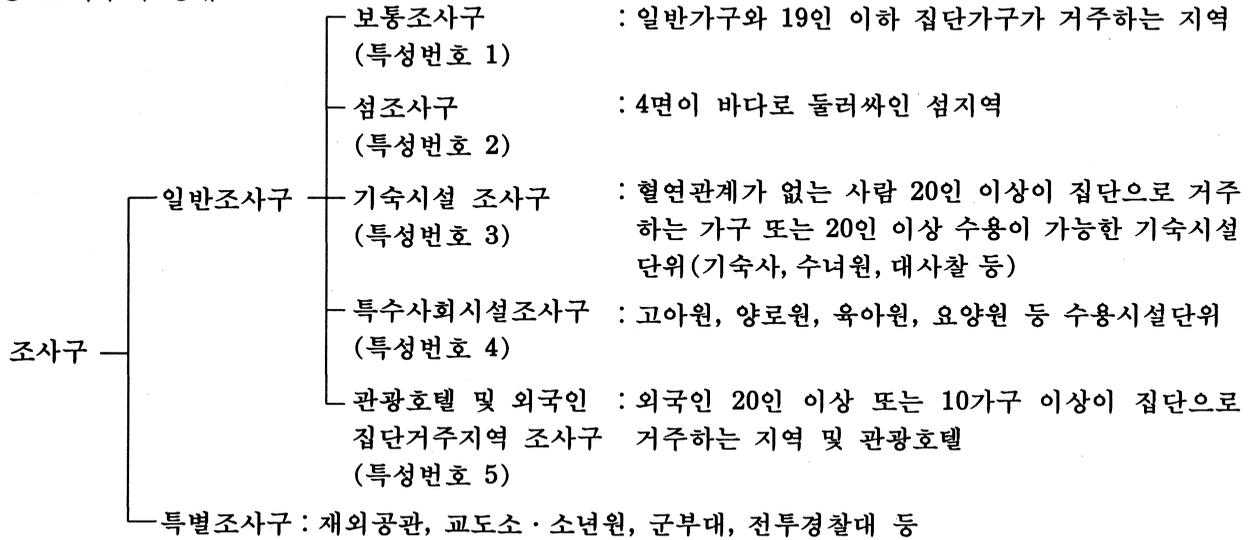
조사구의 정의와 종류

○ 조사구란 행정 읍·면·동 지역을 도로, 산, 강, 하천, 행정구역 경계 등에 따라 분할한 조사 지역단위로서 조사구설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구·주택의 누락 또는 중복 방지

*조사원 업무의 적정한 배분

○ 조사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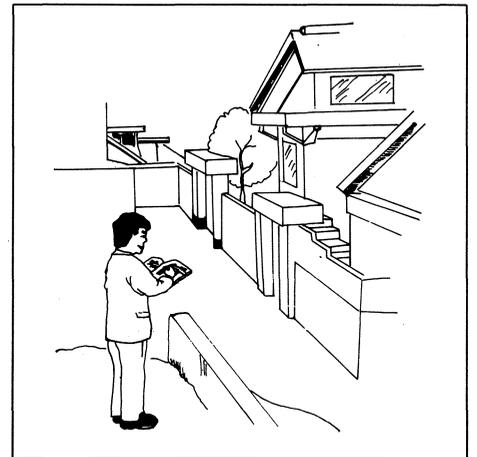
1. 조사구요도 작성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담당조사구의 경계와 조사대상 가구 및 거처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가. 조사구의 경계 확인

○ 통계청에서 전산제작하고 담당공무원이 보완한 조사구요도를 가지고 현지 답사하여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확인한다.

○ 경계가 불분명할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지 확인하여 인접 조사구와 중복 또는 누락지역이 없도록 한다.



나. 지형지물 및 건물 확인·보완

- 주요 건물과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호(요도상의 범례)를 사용하여 수정한다.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 관광호텔 조사구는 조사구요도를 작성하지 않는다.

- 조사구요도상에 건물은 로 표시하며, 신축 중인 건물은 로 표시한다.

*철거 등으로 없어지거나 잘못 표시되어 있는 건물은 적색으로 건물 표시위에 ×표를 한다.

다. 거처 확인 및 가구 파악

- 모든 건물(특히 다방, 점포 등 비거주용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와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확인한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건물)에는 출입구 표시를 ㅏ와 같이 한다.

- 모든 「주택(빈집 포함)」과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외의 거처(건물)」는 거처번호 등의 기입을 위하여 상태로 둔다.

-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은행, 상점, 공장 등)은 건물이름을 기입하고,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라. 거처번호 부여 및 거주가구수 표시

- 예상되는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주택」과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외의 거처(건물)」에 거처일련번호를 기입하고, 그 거처내의 가구수를 의 우측 상단(○ 내)에 기입한다(예 : 4[㉠] 또는 5^{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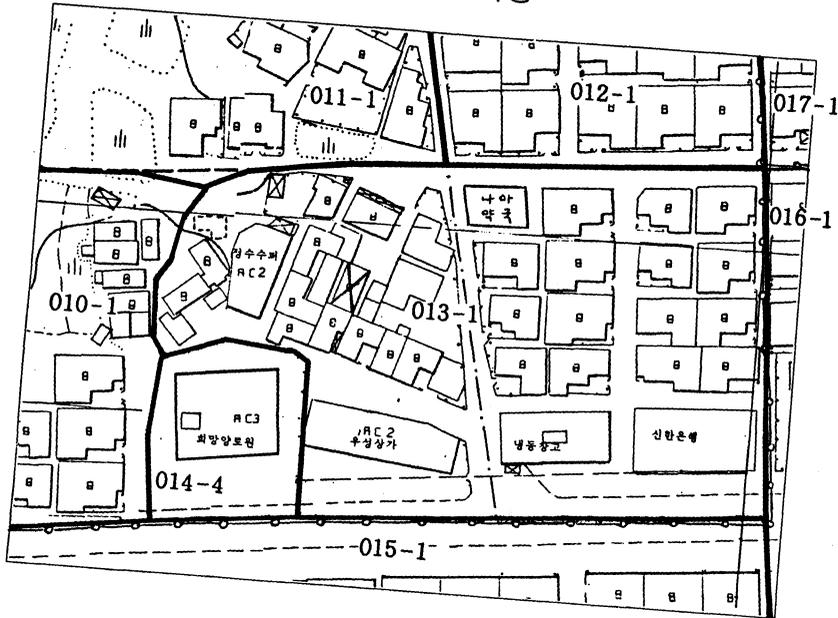
- 조사구내의 총가구수를 조사구요도 우측상단의 가구수란에 기입한다.

- 빈집(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과 수리를 위해 잠시 비워둔 집)도 조사대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축 중인 건물과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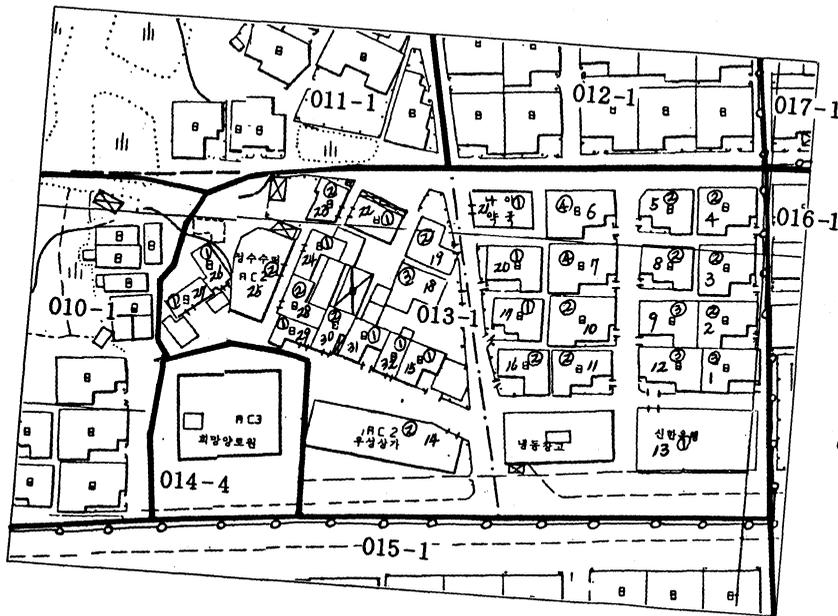
조사구 요도 작성 사례 : 시부

○ 1단계 : 동사무소 담당자가 작성



- 조사구 경계 확인
- 지형지물 확인·보완
- 건물과 거처의 확인·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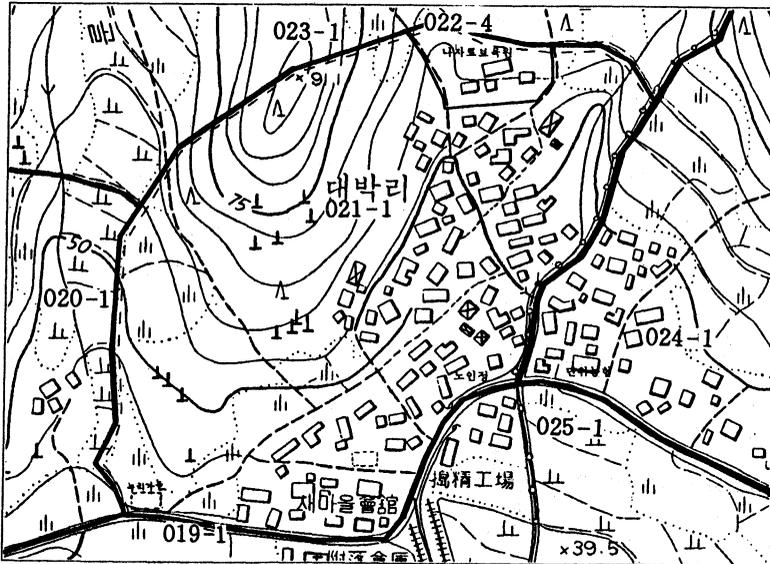
○ 2단계 : 조사원이 작성



- 조사구 경계 확인·보완
 - 주요 지형지물 확인·보완
 - 건물과 거처의 확인·보완
 - 거처번호의 부여
 - *출입구 표시(ㄷ, 卍)
 - 거주가구수 파악 기재(○내)
- ※동사무소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조사구 요도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요령으로 보완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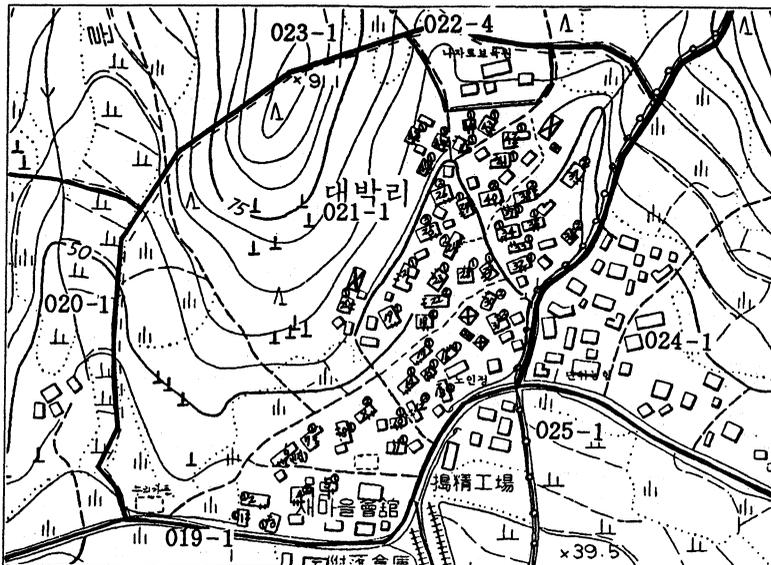
조사구 요도 작성 사례 : 군부

○ 1단계 :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작성



- 조사구 경계 확인
- 지형지물 확인·보완
- 건물과 거처의 확인·보완

○ 2단계 : 조사원이 작성



- 조사구 경계 확인·보완
- 주요 지형지물 확인·보완
- 건물과 거처의 확인·보완
- 거처번호의 부여
- *출입구 표시(卩, 卩)
- 거주가구수 파악 기재(○내)
-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조사구 요도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보완 작성한다.

2. 가구명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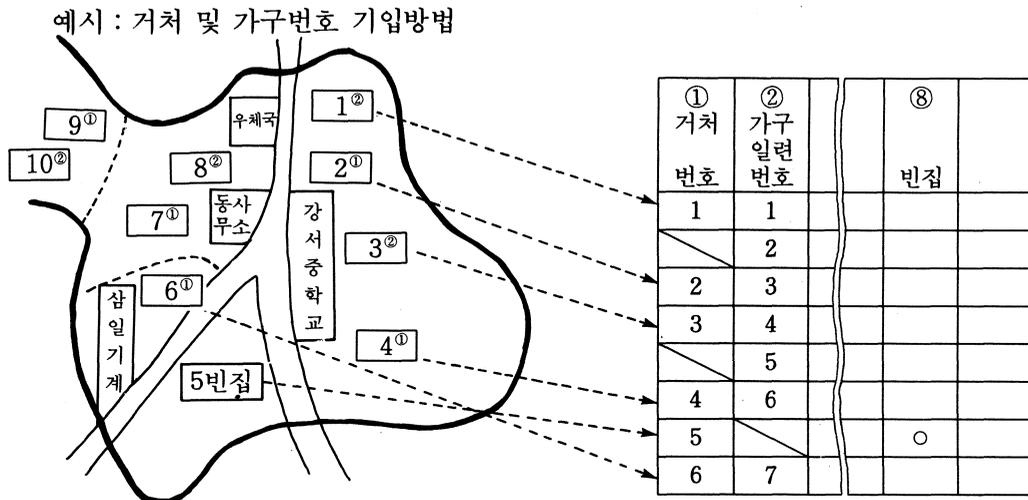
★ 가구(홍보용)전단을 반드시 가구마다 배부하면서 가구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11월 1일부터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 임을 가구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난외사항

- 「전수·표본」란 ◀ 표본에 ○ 표를 한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란 ◀ 해당 행정구역명칭을 기입한다. 「동」인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동명(동사무소 명칭)을 기입한다.
- 「조사구번호」란 ◀ 지정된 조사구번호를 기입한다.
- 「조사표 매수」란 ◀ 실시 조사에 필요한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조사 완료후에는 실제로 작성된 일반조사표와 OMR조사표 매수로 각각 수정 기입한다.
- 「가구명부 매수」란 ◀ 조사구별로 작성된 가구명부 매수를 기입한다(작성 예 : 1매중 1매, 2매중 1매, 2매중 2매 등)

난내사항

- ① 「거처번호」란 ◀ 조사구역도에 표시된 각 거처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 동일 거처내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인가구」를 가장 먼저 기입하여 거처번호를 부여한다.
 - * 주인가구 없이 세든 가구들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처에 대한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하여 가장 먼저 기입한다.
 - * 주인 또는 대표가구가 아닌 가구들의 「거처번호」란에는 사선(\)을 긋는다.
- ② 「가구 일련번호」란 ◀ 거처번호와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가구의 순서대로 기입한다.



(주의) : 빈집이라 하더라도 거처번호는 부여해야 하며 빈집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 ③ 「주소」란 ◀ 리·동, 통·반, 번지까지 정확히 기입한다. 「리·동」은 법정리 또는 법정동을 반드시 기입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동, 호수까지 기입한다.
- *주소는 주인 또는 대표가구만 기입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사선(\)을 긋는다.
- ④ 「가구주 또는 대표자 성명」란 ◀ 가구주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구가 가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구주가 된다.
- ⑤ 「가구원수」란 ◀ 가구별로 조사된 가구원수를 계, 남, 여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0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0'을 기입한다.
- ⑥ 「가구의 종류」란 ◀ 모든 가구에 대해 「가구의 구분」(8쪽)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가구의 종류란에 ○표 한다.
- *「외국인 가구」에 해당되면 「Ⅶ. 외국인 조사(54쪽)」에 의거 외국인 조사표를 작성한다.
- ⑦ 「거처의 종류」란 ◀ 「Ⅲ. 조사대상 3.거처(11쪽 참조)」에 의거 해당되는 거처의 종류에 ○표 한다.
- *거처의 종류는 주인 또는 대표가구만 기입하며, 이외의 가구는 이 난에 사선(\)을 긋는다.
- ⑧ 「빈집」란 ◀ 매매, 임대, 이사, 미분양, 폐가, 일시적 이용 등의 이유로 조사 시점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해당되면 ○표 한다.
- *빈집의 경우에도 「⑦ 거처의 종류」란에 반드시 ○표 한다.
- *빈집에 해당되면 「Ⅷ. 빈집조사(60쪽 참조)」에 의해 빈집 조사표를 작성한다.
- ⑨ 「농·어가구분」란 ◀ 「농가와 어가의 정의(20쪽 참조)」에 의거, 조사가구가 농가 또는 어가로 구분되면 해당란에 ○표 한다.
- *농가와 어가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표 한다.
- ⑩ 「비고」란 ◀ 조사기간중 전출·입한 가구가 있으면 전출·입 일자를 기입하고, 가구의 특성, 재방문 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 「소계」란 ◀ 페이지별로 가구원수(남, 여별), 가구유형별 가구수, 거처의 종류별 거처수, 빈집수, 농가수, 어가수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 「합계」란 ◀ 가구명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 여별 가구원 총수, 가구유형별 가구 총수, 거처의 종류별 거처 총수, 빈집 총수, 농가 총수, 어가 총수를 각각 기입한다.

- 누락가구 ◀ 조사가 누락된 가구가 발견된 경우에는 가구명부상의 마지막 가구로 추가한다. 「① 거처번호」란에 그 가구가 살고 있는 해당 거처번호를 기입하되, 「② 가구일련번호」란에는 마지막 가구 일련번호에 이어서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전입가구 ◀ 조사기간 중에 전입은 가구가 이전 거주지에서 조사가 안되었으면 가구명부상에 마지막 가구로 추가하고 「⑩ 비고」란에 전입일자를 기재한다.
 - * 「① 거처번호」란에 그 가구가 있는 거처번호를 기입하되, 「② 가구일련번호」란에는 마지막 가구 일련번호에 이어서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전출가구 ◀ 조사기준 시점('95. 11. 1)에 조사구내에 거주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아직 조사가 안된 채로 타지(담당조사구이외의 지역)로 전출한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두줄(=)을 긋고 「⑩ 비고」란에 전출일자를 기재한다.
- 【주의】 ① 11월 9일 이전에 전출이 예상되는 가구는 비고란에 「전출예정(11. 3)」과 같이 기입한 후 11월 1일에 다른 가구보다 먼저 조사하도록 한다.
- ② 자주 집을 비우는 가구도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고려한다.

농가와 어가의 정의

농 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다음과 같은 가구를 말한다.

- 경지를 300평(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구
- 위의 각 호별 규모 이외의 가구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가구
 - * 소, 말 등의 대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경마, 달구지용 소 등 운반용 제외)
 - * 돼지, 산양, 면양 등의 중가축을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 * 토끼 등의 소가축을 40마리 이상,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의 가금을 4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 * 꿀벌 5군(群) 이상을 치는 가구

어 가

어가라 함은 가구주나 가구원중에서 조사실시전 1년간에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채포나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3. 가구(홍보용)전단 배부

- 가구(홍보용)전단 뒷면 하단 전수·표본 조사구란의 「표본」에 ○ 표시를 하고, 조사원 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를 기재하여 각 가구 방문시 배부하여 조사시기, 조사항목, 조사결과의 활용, 비밀보호 등에 관한 사항들을 알려서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도록 한다.

3.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 부착

- 가구확인이 끝나면 거주 가구별로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에 조사구번호와 가구일련번호를 기입한 다음 거주 가구수만큼 출입구의 우측 상단(대문 ←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인다.
*준비조사기간 중에는 조사 여부를 알 비워 둔채로 부착(본조사 기간 중에 방문하여 조사를 한 다음 「조사」에 ○ 표시를 함).
-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에는 가구일련번호에 × 표시를 한후 붙인다.

V. 본 조사

1. 조사시 주의사항

- 조사기간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 교육받은 조사가원이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누설 또는 도용시에는 통계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담당공무원의 감독과 지시에 따르고 매일 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존의 기록(세대별 주민등록표, 통·리·반적부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도 통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2. 조사준비

-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 지침서를 숙지하여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
- 담당 조사구의 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기간 중에 모든 가구가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히 조사되도록 한다.



3. 가구방문

- 매일 조사 계획된 가구수에 해당하는 일반조사표와 비밀보호용 봉투 등을 조사원 가방에 넣어 가구방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담당조사구내의 가구를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 순에 따라 방문 조사하도록 한다.

※ 가구방문시 주의사항

- * 조사 요원증과 마크를 패용하여 응답자가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 단정한 복장으로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 조사표의 질문요령에 따라 알기 쉽고, 공손하게 질문한다.
- * 조사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서는 안된다.



4. 응답자 선정

- 가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응답자를 선정하여 직접 면접조사하여야 한다.
- 적합한 응답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조사원 연락전(별도 배부)」을 이용하여 재방문 일자를 약속,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원 연락전」은 ‘방문사유’, ‘재방문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가구원 또는 이웃집에 맡기거나, 안전하고 눈에 잘 띄는 장소(우편함, 현관 등)에 두어 가구주(또는 적합한 응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가정부, 종업원, 하숙인 등 동거인에 대한 조사는 본인에게 직접 질문, 조사하여야 한다.

5. 조사표의 작성

- 일반조사표는 흑색 또는 청색볼펜(또는 프레스펜)으로 작성한다.
- 일반조사표는 1가구를 단위로 하여 조사한다.
- 5인이 초과될 때마다 조사표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이때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 이후부터는 사선(\)을 긋는다.

6. 응답 거부가구 조사

- 「I. 7. 결과활용(5쪽 참조)」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 조사내용의 비밀보호와 통계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법규정을 설명한다.
- 비밀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배부 및 회수한다.
- 응답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지도원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 *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통계법 8조).
- *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통계법 9조).
- *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계법 18조1항).
- * 성명은 조사의 누락·중복 여부의 확인 및 부실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이용하며, 이외의 어떤 곳에도 이용되지 않으며 컴퓨터에도 입력하지 않아 어떤 개인 (또는 가구)에 관한 조사 내용인지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 조사된 조사표는 본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제공되지 않으며 컴퓨터 입력 후에는 폐기 처분된다.

7. 가구 재방문

- 가구원의 출타, 부재 등으로 적합한 응답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원 연락전」을 활용하여 재방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 결혼식, 상중 등 조사대상 가구에 특별한 일이 있어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구원에게 방문목적, 재방문 일자 등을 알려 재방문하여 조사한다.
- 조사 누락 또는 잘못 조사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방문하여 조사한다.



8. 가구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

○ 아래 가구에 해당하면 「표본조사표」와 「표본조사표 기입요령」 및 「조사원 연락전(조사표 회수방법·장소 등 기재)」을 「비밀 보호용 봉투」에 넣어 배부하여, 가구에서 직접 작성케 한다.

*비밀보호를 원하는 가구

*가구원이 부재중이거나 적합한 응답자(가구원)를 만날 수 없는 가구(예 : 맞벌이 가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기간동안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가구

○ 회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착오 기입된 부분이 있으면 재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완·조사한다.

*전화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후 착오 조사된 내용을 질문하고, 질문이 끝난 후에는 감사의 인사를 하여 불쾌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

*가구원으로서 조사되어야 할 사람과 조사되어서는 안될 사람인지를 확인

*세를 든 가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

*조사표 내용을 검토한 후 미비사항 확인

9. 외국인 조사 ⇒ 「Ⅶ. 외국인 조사요령(54쪽)」 참조

10. 빈집조사 ⇒ 「Ⅷ. 빈집 조사요령(60쪽)」 참조

VI. 조사표 작성 요령(표본조사표)

1. 난외 사항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반	10(번지 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조사표매수	가구원수
서 울	강 남	역삼(동	10통 3반	통계 아파트 102동 203호	0081	19	23	총 1 매중 1 매	5 명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 주소◀번지, 호수, 통반을 정확하게 기입하되 읍면동란에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명(관할 읍·면·동사무소명)을 기입한다.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연립주택)명, 동, 호수까지 기입한다.
- 조사구번호◀담당조사구의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 거처번호·가구번호◀조사구역도와 가구명부상에 부여된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가구당 조사표 매수
 - *가구별로 작성된 조사표의 총매수와 가구당 조사표의 일련번호매수를 기입한다.
 - *가구원수가 5명 이하로서 조사표 1매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1매중 1매로 기입한다.
 -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이어서 조사표 2매에 작성되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기입된 조사표에 2매중 1매, 두번째 조사표에 2매중 2매로 기입한다.
- 가구원수◀조사된 가구의 총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샘들이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맥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지역번호: 02 201 - 0001
장진실	

◀조사표 마지막 면 하단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청장

- 누락된 항목이나 착오 조사된 항목에 대하여 재방문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① 성명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① 성명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 가구주부터 기입하며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합니다.	김 통 계	장 진 식	김 인 구	김 ○ ○	이 간 난

○ 가구주(가구의 대표자)의 성명(이름)부터 기입한다.

○ 응답자가 대답한 사람들이 조사대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누락된 사람(특히 갓난 아기, 숙식을 같이 하는 종업원, 가정부, 하숙인 등의 동거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이름이 없는 갓난아기는 '김○○'와 같이 기입한다.

*성명을 기입하면서 조사표 상단의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중복 조사되는 가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가구주와의 관계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란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당 번호 ○표 합니다.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당번호에 ○ 표 한다.

○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응답자가 가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구주가 된다.

*가구주와의 관계에 ○표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예 : 자녀, 부모 등의 관계)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연장자 또는 대표자)을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⑬ 기타 동거인」에 ○표 한다.

○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는 가구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와 그 배우자'도 각각 해당된다.

○ 「⑫ 기타 친인척」은 「③ ~⑪」이외의 친인척이 해당된다.

③ 성별

③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1 남자 <input type="radio"/> 2 여자	<input type="radio"/> 1 남자 <input checked="" type="radio"/> 2 여자	<input checked="" type="radio"/> 1 남자 <input type="radio"/> 2 여자	<input type="radio"/> 1 남자 <input checked="" type="radio"/> 2 여자	<input type="radio"/> 1 남자 <input checked="" type="radio"/> 2 여자
------	---------------	--	--	--	--	--

○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경우에 성별 구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④ 나이

④ 나이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35 살 (소 띠)	32 살 (용 띠)	6 살 (띠 띠)	1 살 (돼지 띠)	62 살 (개 띠)
	그리고 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언제입니까?	<input type="radio"/> 1 양력 <input checked="" type="radio"/> 2 음력	<input type="radio"/> 1 양력 <input checked="" type="radio"/> 2 음력	<input checked="" type="radio"/> 1 양력 <input type="radio"/> 2 음력	<input checked="" type="radio"/> 1 양력 <input type="radio"/> 2 음력	<input type="radio"/> 1 양력 <input checked="" type="radio"/> 2 음력
		1961년 7월 17일	1964년 4월 20일	1990년 11월 2일	1995년 10월 28일	1934년 5월 23일

○ 반드시 「집에서 세는 나이」를 기입한다. 세는 나이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서로 틀릴 경우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조사되어서는 안된다.

* 만나이를 조사 기입해서는 안된다.

○ 띠를 정확히 질문하여 기입한다.

○ 생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 확인하여 해당번호에 ○표 한다(구분표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호적이나 주민등록부상의 출생년도와는 관계없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질문하여 기입한다.

○ 띠, 세는 나이, 출생년월일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연령조건표 참고) 가구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히 조사한다.

⑤ 종교

⑤ 종교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1 있음 <input type="radio"/> 2 없음	<input type="radio"/> 1 있음 <input type="radio"/> 2 없음	<input type="radio"/> 1 있음 <input checked="" type="radio"/> 2 없음	<input type="radio"/> 1 있음 <input type="radio"/> 2 없음	<input checked="" type="radio"/> 1 있음 <input type="radio"/> 2 없음	
	있다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1 불교 <input type="radio"/> 5 원불교 <input checked="" type="radio"/> 2 개신교 <input type="radio"/> 6 천도교 <input type="radio"/> 3 천주교 <input type="radio"/> 7 대종교 <input type="radio"/> 4 유교 <input type="radio"/> 9 그밖의 종교	<input type="radio"/> 1 불교 <input type="radio"/> 5 원불교 <input checked="" type="radio"/> 2 개신교 <input type="radio"/> 6 천도교 <input type="radio"/> 3 천주교 <input type="radio"/> 7 대종교 <input type="radio"/> 4 유교 <input type="radio"/> 9 그밖의 종교	<input type="radio"/> 1 불교 <input type="radio"/> 5 원불교 <input type="radio"/> 2 개신교 <input type="radio"/> 6 천도교 <input type="radio"/> 3 천주교 <input type="radio"/> 7 대종교 <input type="radio"/> 4 유교 <input type="radio"/> 9 그밖의 종교	<input type="radio"/> 1 불교 <input type="radio"/> 5 원불교 <input type="radio"/> 2 개신교 <input type="radio"/> 6 천도교 <input type="radio"/> 3 천주교 <input type="radio"/> 7 대종교 <input type="radio"/> 4 유교 <input type="radio"/> 9 그밖의 종교	<input type="radio"/> 1 불교 <input type="radio"/> 5 원불교 <input type="radio"/> 2 개신교 <input type="radio"/> 6 천도교 <input type="radio"/> 3 천주교 <input type="radio"/> 7 대종교 <input type="radio"/> 4 유교 <input type="radio"/> 9 그밖의 종교	<input checked="" type="radio"/> 1 불교 <input type="radio"/> 5 원불교 <input type="radio"/> 2 개신교 <input type="radio"/> 6 천도교 <input type="radio"/> 3 천주교 <input type="radio"/> 7 대종교 <input type="radio"/> 4 유교 <input type="radio"/> 9 그밖의 종교
		()	()	()	()	()	

○ 종교를 믿고 있으면 「1 있음」에 ○표하고, 믿지 않으면 「2 없음」에 ○표한다.

* 「1 있음」에 해당되면 믿고 있는 종교의 종류를 조사한다.

○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수계, 세례, 영세 또는 입교 등의 의식을 행한 사람과 종교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갖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 종교단체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교 신도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모나 어느 한 가구원이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여 다른 가구원까지 모두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해서는 안된다.

* 부모가 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에 그 자녀도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해서는 안된다.

○ 「㉑ 그 밖의 종교」에 해당되면 ()내에 해당 종교명을 기입한다.

—〈참 고〉—

① 불 교 : 수계(受戒)받은 사람은 물론 절에 다니는 사람도 포함된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관음종 등 불교 각 종단과 천화불교, 영산법화사, 한 세계 인류 성도종 등 포함.

② 개신교(기독교) :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포함된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포함.

③ 천주교 : 영세를 받은 사람은 물론 성당(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포함된다.

*천주교 각 교구 모두 해당됨.

*한국정교회는 제외.

④ 유 교 : 향교(鄕校), 서원(書院) 등의 제향(祭香)에 참석하거나 유도회(儒道會)나 유림(儒林)에 가입한 자 또는 일상생활에서 유교적 법도를 철저히 따르고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성균관, 향교, 유도회 등이 해당됨. 개정유도는 제외 ◀ 그밖의 종교에 해당

⑤ 원불교 : 법신불일원상(法身佛一圓相)의 진리를 믿는 자로서 득도식을 거쳤거나 원불교 당에 다니는 사람이 해당된다.

⑥ 천도교 :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을宗旨(宗旨)로 입교식(入教式)을 행하였거나 천도교 당에 다니는 사람이 해당된다.

*동학교, 수운교 등은 제외 ◀ 그밖의 종교에 해당

⑦ 대종교 : 단군 한백검을 믿고 참교(參教)를 받은 사람은 물론 대종교 교당에 다니는 사람도 해당된다.

*단군교, 한얼교 등은 제외 ◀ 그밖의 종교에 해당

⑧ 대순진리회 : 증산 상제를 믿고 입도의식을 필한 자로서 도규를 준수하여 수도의식을 계속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태극도는 제외 ◀ 그밖의 종교에 해당

⑨ 그밖의 종교 : 상기 이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해당된다.

*민족종교 계열 : 개정유도, 미륵불교, 수운교, 증산교, 태극도, 성덕도, 천존회, 영주교, 보천교, 각세도관, 광제원, 동학교, 무극대도, 순천도, 한얼교, 현정회 등

*외래종교 계열 : 이슬람교, 일연정종, 창가학회, 천리교, 세계구세교, 선린교, 일관도, 메시아교, 국제도덕협회, 한국바하이전국정신회 등

⑥ 출생지

⑥ 출생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북한일 경우에는 당시의 행정구역명을,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경기 특별·광역시 (국) 고양 시·군·구	충북 특별·광역시 (국) 청주 시·군·구	인천 특별·광역시 (국) 남동 시·군·구	특별·광역시 (국) 시·군·구	특별·광역시 (국) 시·군·구	특별·광역시 (국) 나진 시·군·구

○ 출생지(태어난 곳)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적지(또는 원적지)와 관계없이 출생당시 어머니(산모)가 주로 살았던 곳(상주지)을 말한다.

* 출산하였던 병원이나 어머니(산모)의 친정집 등을 표시(기입)하여서는 안된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이외의 다른 시·군·구(다른 시·도 포함)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에 ○표하고, 출생한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질문하여 기입한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출생지의 그 당시 행정구역 명칭이 현재와 다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준으로 기입한다(행정구역 분류표 참조).

○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④ 북한 또는 외국」에 ○표하고, 출생 당시의 북한지역 도명과 시·군명을 질문하여 기입한다.

○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④ 북한 또는 외국」에 ○표하고, 출생한 국가명을 질문하여 「특별·광역시·도(국)」란에 그 국가명만 기입한다.

○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에서 구(區)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명을 기입하고 「시·군·구명」란에 시의 명칭만을 기입한다(〈참고〉: 과거의 직할시는 '95년 3월부터 광역시로 개편되었음).

* 구(區)가 있는 일반시

경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울산시, 마산시

-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칭은 달라졌으나 출생지가 실제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같은 시·군·구내의 다른 집인 경우에는 「㉠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에 ○표 한다.

*단, 출생 당시 행정구역명으로 보면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에 해당되나, 행정 구역 개편으로 당시의 행정구역명이 그대로 있고 그 출생한 집이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에 ○표 하고, 현재의 변경된 행정구역명칭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 '94년~'95년 초에 통합된 시의 경우도 현재의 변경된 통합시 명칭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시·군 통합지역(33쪽) 참고
- 전남 여천시와 여천군의 경우에는 「시·군·구명」란에서 '시'인지 또는 '군'인지의 구분을 정확히 표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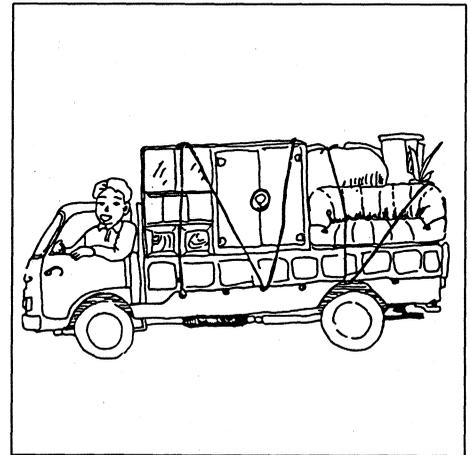
—(사 례)—

- ㉠ 「장진실」주부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에 살고 있으나 1987년에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 살고 있었다. 그 당시에 「장진실」주부는 친정인 인천에서 첫째 딸 「한 아름」을 출산하였다. 이 경우에 「아름」이의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 그 당시 「장진실」주부는 출산의 편의를 위해 친정인 인천에서 「한 아름」양을 출산하였기 때문에 「한 아름」의 출생지는 「장진실」주부가 계속 거주해 왔던 도봉구 상계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봉구 상계동은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 현재 노원구 상계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한 아름」의 태어난 곳은 서울시 노원구로 조사 기입되어야 한다.
- ㉡ 「백 일홍」주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살고 있으나 1990년에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에서 첫째 아들 「강 호동」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고양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어 고양시 성사동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강 호동」의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 「강 호동」의 태어난 곳은 경기도 고양군이나, 그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달라졌다고 다른 곳으로 간주하여 「㉢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로 표시하면 안된다. 그러므로 「㉡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에 ○표시를 한다(현재의 고양시는 시로 승격하기전에 고양군이었으므로 같은 시·군·구내로 간주함).

⑦ 5년전 거주지

	1	2	3	4	5
<p>⑦ 5년전 거주지</p> <p>1990년 11월 1일(5년전)에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p> <p>•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p>	<p>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p> <p>② 현재 살고 있는 집</p> <p>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p> <p>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p> <p>⑤ 북한 또는 외국</p> <p>부산 특별광역시(국) 서 시군구</p>	<p>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p> <p>② 현재 살고 있는 집</p> <p>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p> <p>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p> <p>⑤ 북한 또는 외국</p> <p>광주 특별광역시(국) 광산 시군구</p>	<p>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p> <p>② 현재 살고 있는 집</p> <p>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p> <p>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p> <p>⑤ 북한 또는 외국</p> <p>특별광역시(국) 시군구</p>	<p>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p> <p>② 현재 살고 있는 집</p> <p>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p> <p>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p> <p>⑤ 북한 또는 외국</p> <p>특별광역시(국) 시군구</p>	<p>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p> <p>② 현재 살고 있는 집</p> <p>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p> <p>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p> <p>⑤ 북한 또는 외국</p> <p>충북 특별광역시(국) 청원 시군구</p>

- 「④ 나이」에서 조사된 세는 나이가 6살 이상인 사람만 조사하며, 6살이 안된 사람(5살 이하)은 이후 『가구원에 관한 항목』에 사선(\)을 긋는다.
- 5년전('90년 11월 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조사하여 기입한다.
- 6살이지만 '90년 1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에 ○표 한다.
- 5년전('90. 11. 1) 거주지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면 ②에 ○표 한다.
- 5년전 거주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다른 집이면 ③에 ○표 한다.
- 5년전 거주지가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지역이면 ④에 ○표 하고, 그 지역의 현재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질문하여 기입한다.
* 시·도명과 시·군·구명은 「⑥ 출생지」의 조사요령을 참고하여 기입한다.
- 5년전 거주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⑤ 북한 또는 외국」에 ○표 하고 「특별·광역시·도(국)」명란에 '북한'이라고 기입한다.
- 5년전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⑤ 북한 또는 외국」에 ○표 하고 그 국가명만을 질문하여 「특별·광역시·도(국)」명란에 기입한다.
- 5년전에 현역으로 군복무중에 있었던 가구원은 가구주의 5년전 거주지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이외 행정구역명 조사요령은 『⑥ 출생지』의 조사요령을 참조한다.



—(사 례)—

- ㉡ 「박 달재」씨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살다가 군에 입대('89. 3. 5)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91. 9. 1)하였다. 그 기간 중에 본가는 경남 창원시로 이사('89년 12월)하였다. 「박 달재」씨의 5년전 거주지는 어디인가? 현재에는 경상남도 마산시에 살고 있다.
- ㉢ 군복무기간 중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따라서 5년전인 '90년 11월 1일에는 가족이 경남 창원시에 살고 있었으므로 5년전 거주지는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경남 창원시로 조사하여야 한다(단, 가구원의 5년전 거주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구주와 동일하게 기입).

시·군 통합 지역

- ◇경기도 : 남양주시 ◀미금시 + 남양주군, 평택시 ◀평택시 + 송탄시 + 평택군
- ◇강원도 : 춘천시 ◀춘천시 + 춘천군, 원주시 ◀원주시 + 원주군, 강릉시 ◀강릉시 + 명주군,
삼척시 ◀삼척시 + 삼척군
- ◇충 북 : 충주시 ◀충주시 + 증원군, 제천시 ◀제천시 + 제천군
- ◇충 남 : 천안시 ◀천안시 + 천안군, 아산시 ◀온양시 + 아산군, 공주시 ◀공주시 + 공주군,
서산시 ◀서산시 + 서산군, 보령시 ◀대천시 + 보령군
- ◇전 북 : 군산시 ◀군산시 + 옥구군, 익산시 ◀이리시 + 익산군, 정읍시 ◀정주시 + 정읍군,
남원시 ◀남원시 + 남원군, 김제시 ◀김제시 + 김제군
- ◇전 남 : 순천시 ◀순천시 + 송주군, 나주시 ◀나주시 + 나주군, 광양시 ◀동광양시 + 광양군
- ◇경 북 : 포항시 ◀포항시 + 영일군, 경주시 ◀경주시 + 경주군, 안동시 ◀안동시 + 안동군,
영주시 ◀영주시 + 영풍군, 경산시 ◀경산시 + 경산군, 김천시 ◀김천시 + 금릉군,
상주시 ◀상주시 + 상주군, 영천시 ◀영천시 + 영천군, 문경시 ◀점촌시 + 문경군,
구미시 ◀구미시 + 선산군
- ◇경 남 : 창원시 ◀창원시 + 창원군 일부, 마산시 ◀마산시 + 창원군 일부,
울산시 ◀울산시 + 울산군, 진주시 ◀진주시 + 진양군, 통영시 ◀충무시 + 통영군,
사천시 ◀삼천포시 + 사천군, 김해시 ◀김해시 + 김해군, 밀양시 ◀밀양시 + 밀양군,
거제시 ◀장승포시 + 거제군

⑧ 교육정도

⑧ 교육정도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교육으로 간주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은 정규교육으로 인정합니다.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교육정도

- 주간·야간을 구분않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각급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말한다.
- 단, 입시를 위한 학원과 타자, 경리, 부기 및 운전기술학원 등은 정규 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규 교 육	정규교육으로 보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학교(공민학교 포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 • 고등학교(구제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수학교 포함) • 초급·전문대학(초급대학, 구제전문학교 포함) • 대학(교)(각급 사관학교, 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 • 검정고시 합격자 중입 검정고시 합격 → 국졸로 인정 고입 검정고시 합격 → 중졸로 인정 대입 검정고시 합격 → 고졸로 인정 • 독학사 학위 취득자 → 대졸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미용학원 • 타자·경리·부기학원 • 재수생을 위한 입시학원 • 기술(정비)학원 • 직업훈련원 •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학원 • 노인대학, 주부대학 등 • 평생교육원 • 검정고시 시험준비중인 것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독학사 학위취득 시험준비중인 것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 이상을 말한다.
-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나이가 미달되어 취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받았음(미취학 포함)」에 ○표 한다.

- 교육상태(졸업, 재학, 휴학, 중퇴)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휴학은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복학할 예정인 경우에 해당된다.
- 대학원인 경우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는 졸업에 해당되며, 학위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다니거나 논문을 준비중인 경우에는 재학에 해당된다.
-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예 : 수료인 경우)는 졸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전 학력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예) *경영대학원, 무역대학원, 산업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을 수료한 경우

*고위 경영자(관리자) 관리과정 등을 수료한 경우

⑨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⑨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평소 직장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직장·학교 이름이나 인근의 널리 알려진 건물 이름 또는 특징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① 안함 → ⑫ 번부터 ② 통근함 기입함 ③ 통학함	① 안함 → ⑫ 번부터 ② 통근함 기입함 ③ 통학함	① 안함 → ⑫ 번부터 ② 통근함 기입함 ③ 통학함	① 안함 → ⑫ 번부터 ② 통근함 기입함 ③ 통학함	① 안함 → ⑫ 번부터 ② 통근함 기입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서울 특별·광역시도 영등포 시군구	서울 특별·광역시도 중 시군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직장, 학교, 건물 이름, 장소					
				서울고등학교			

- 세는 나이가 13살 이상인 사람만 조사한다. 13살이 안된 사람은 이후 『가구원에 관한 항목』에 사선(\)을 긋는다.

통근·통학 여부

- 살고 있는 거처이외의 사업장, 직장, 학교, 학원 등을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에만 「② 통근함」 또는 「③ 통학함」에 해당된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거처)내의 사업장(가게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① 안함」에 해당된다.
- 논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② 통근함」에 해당된다. 단, 집 울타리내의 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① 안함」에 해당된다.
- 택시, 개인용달 운전자인 경우 차고지가 자기집이면 「① 안함」에 ○표 한다.
- 입시학원, 이·미용학원, 기술학원 등 각종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③ 통학함」에 ○표 한다(「⑧ 교육정도」에서 정규교육으로 보지 않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 「① 안함」에 해당되면 「⑩ 이용교통수단」과 「⑪ 통근·통학 소요시간」에 사선(\)을 긋고 「⑫ 경제활동상태」부터 계속 조사한다.

통근·통학 장소

- 「② 통근합」 또는 「③ 통학합」에 해당하면 통근 또는 통학장소를 조사한다.
- 통근 또는 통학 장소가 「③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 명칭을 질문하여 기입한다(「⑦ 5년전 거주지」 조사요령 참조)
-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의 승무원은 소속 사무실이 통근 장소가 된다.
- 근무처가 일정하지 아니한 행상인들은 지난 1개월간 주로 행상활동을 한 지역을 통근 장소로 기입한다.
* 주로 활동(근무)한 장소가 없으면 최근에 활동(근무)한 장소를 통근 장소로 기입한다.
- 행정구역명칭을 모르는 경우에는 직장·학교의 이름이나 인근의 유명한 건물이름 또는 특 징있는 장소명을 기입한 후, 추후 검토·정리시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행정구역 명을 기입한다.[행정구역 분류부호 참조]
- 통근·통학 장소가 현재의 거주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예 : 2개 시 도를 넘어 서 통근·통학하는 경우) 다시 질문하여 확인한다.
<예> 서울↔부산, 강원↔대전, 대구↔부산, 서울↔광주, 서울↔제주, 광주↔부산 등
- 직장·학교관계로 타지에서 살다가 주말 등에만 집으로 오는 경우는 통근·통학은 물론 조 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타지-자취·하숙 등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조사되어야 함).

⑩ 이용교통수단

⑩ 이용교통수단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수단 2개에만 ○표 합니다. • 「⑨ 도보로만」은 걸어서만 통근·통학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① 시내버스 ⑬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차 (트럭등)

- ⑨번 항목에서 「② 통근합」 또는 「③ 통학합」에 해당하면 이용교통수단을 질문하여 ○표 한다.
-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갈아 타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개만 질문하여 ○표 한다.
- 「③ 기타버스」는 시외버스, 통근·통학버스, 마을버스 등이 해당된다.
- 「⑨ 도보로만」은 걸어서 통근·통학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따라서, 이용교통수단이 「⑨도보로만」일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에 ○표 되어서는 안된다.

⑪ 통근·통학 소요시간

⑪ 통근·통학 소요시간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할 때 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① 15분 미만	① 15분 미만	① 15분 미만	① 15분 미만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⑦ 120분 이상	⑦ 120분 이상	⑦ 120분 이상	⑦ 120분 이상

-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불규칙적일 경우에는 평균 소요시간에 ○표 한다.
- 통근·통학 장소와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질문하여 조사한다.
 - * 통근·통학 장소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이 너무 적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 * 통근·통학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데도 소요시간이 너무 많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사 례〉—

- ☐ 평소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출장으로 이번 일주일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였을 때 통근장소는 어디로 조사하는가?
 - ☞ 출장전의 평상시 근무하고 있던 장소를 통근장소로 조사한다.
- ☐ 농촌에서 운행되는 군내버스는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 시내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간주하여 「시내버스」로 조사한다.
- ☐ 일용 근로자(노동자)인 경우에 통근장소와 소요시간은 어디로 조사하는가?
 - ☞ 지난 1개월간 주로 일하였던 현장 사무소의 주소를 통근장소, 현장 사무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소요시간으로 조사한다. 단, 일하는 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 사무소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승용차로 통근할 때 이용교통수단을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승용차」로 조사한다.
- ☐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다니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다른 경우는 소요시간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 ☞ 평소 출근할 때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 자영업자로서 자택과는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에 매일 아침 나가는 경우도 통근하는 것으로 조사하는가?
 - ☞ 「통근함」으로 조사하고 소요시간은 자택에서 점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 출장으로 이번 일주일간 다른 장소로 출근하였을 때 소요시간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 출장전의 평상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⑫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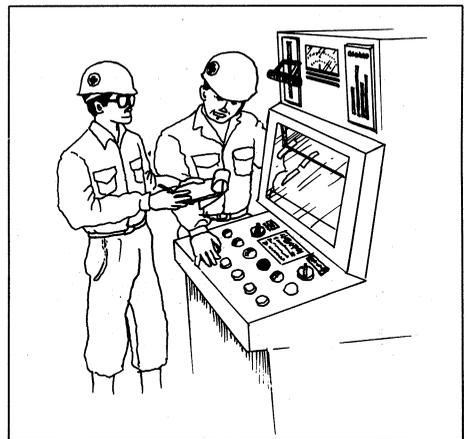
	1	2	3	4	5
<p>지난 1개월('95.10.1~10.31)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p> <p>• 일이란 상점의 일, 농사, 가내부업 등을 돕거나, 시간제 일,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모든 일)</p> <p>• 가사(집안일)란 밥짓기, 세탁, 육아 등을 말하며 이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한 경우는 「2」, 오직 집안일만 한 경우는 「7」에 해당됩니다.</p> <p>• 통학은 정규학교는 물론 입학원, 이·미용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원 등에 무보수로 다니는 것도 포함됩니다.</p> <p>• 「6」~「9」에 해당되면 ⑬부터 ⑮까지 사선「\」을 긋고 ⑯ 혼인상태부터 기입합니다.</p>	<p>① 주로 일하였음</p> <p>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④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p>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p> <p>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p> <p>⑦ 가사만을 돌보았음</p> <p>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p> <p>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p>	<p>① 주로 일하였음</p> <p>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④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p>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p> <p>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p> <p>⑦ 가사만을 돌보았음</p> <p>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p> <p>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p>	<p>① 주로 일하였음</p> <p>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④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p>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p> <p>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p> <p>⑦ 가사만을 돌보았음</p> <p>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p> <p>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p>	<p>① 주로 일하였음</p> <p>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④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p>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p> <p>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p> <p>⑦ 가사만을 돌보았음</p> <p>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p> <p>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p>	<p>① 주로 일하였음</p> <p>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④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p>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p> <p>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p> <p>⑦ 가사만을 돌보았음</p> <p>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p> <p>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p>

- 세는 나이가 16살 이상인 사람만 조사한다. 16살 미만(15살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가구원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 사선(\)을 긋는다.
- '95년 10월 1일~10월 31일의 1개월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는가를 조사한다.
- 「1」 주로 일하였음은 조사대상 기간 중 15일 이상 돈벌이 또는 생업에 주로 종사한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된다.

지난 1개월동안 15일 이상 돈벌이 또는 생업에 주로 종사한 사람은 하루 몇 시간을 일하였든 관계없이 「주로 일하였음」으로 조사한다.

* 단, 15일 미만 일은 하였더라도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사람(신규취업자 등)은 「주로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 * 농사를 짓거나 상점 또는 공장 등을 경영한 사람
- * 다른 사람 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일한 사람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봉급을 받고 일한 사람(직업군인 포함)
- * 일정한 직장이 없더라도 지난 1개월동안에 수입을 위해 일을 하였던 사람(행상, 막노동 등)



-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장의 수입있는 일을 도운 가족 종사자로 주로 일한 사람
- * 일정한 직장은 없더라도 작품활동 또는 연예활동을 하여 수입을 얻은 사람(소설가, 화가, 조각가, 사진사, 작곡가, 가수, 번역사 등)
- *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 학교를 다닌 경우
- * 밤에만 수입있는 일, 연예활동(야간업소 출연 : 악사 등)을 한 경우

틈틈이 일 한 사람은 조사대상 기간 중에 가사·통학, 기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지난 1개월동안 4일 이상 15일 미만 수입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 지난 1개월동안 15일 이상 일은 하였지만 하루 4시간(반나절) 미만 일하면서 가사, 통학 등 다른 활동을 주로 한 사람도 틈틈이 일 한 사람에 해당된다.

- 「㉒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은 주로 취사, 세탁, 육아 등의 가사(집안 일)를 하면서 틈틈이 가내부업을 하였거나 시간제로 직장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해당된다.
 - * 단, 가정주부가 가내부업을 전업으로 한 경우에는 「㉑ 주로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 * 가정부, 정원사, 자가용 운전사 등은 「㉑ 주로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 「㉓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은 주간에는 학교(학원)에 다녔지만 야간에는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등의 수입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 * 단, 주간에는 직장에 다니고 야간에 학교(학원)에 다닌 사람은 「㉑ 주로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 「㉔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은 보수를 받지 않는 사회봉사활동, 종교(선교)활동 등을 주로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 *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4일 이상 15일 미만 일한 사람도 해당된다.
 - * 단, 보수를 받으면서 주로 사회 봉사활동, 종교(선교)활동 등을 한 사람은 「㉑ 주로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 「㉕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은 직장이나 직업 등 하고 있는 일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쉬었던 사람이 해당된다.
 - * 자기 또는 가족의 일시적인 병, 휴가 또는 연가, 경·조사
 - * 일기 불순
 - * 노동 쟁의로 인한 파업(파업 가담자와 파업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 * 사업체의 사정(기계고장, 원료 미확보, 화재 등)
 - * 여성 취업자로서 출산 휴가중이나 직장에 복귀할 것이 명확한 경우
 - * 기타 상기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

1개월동안 총 4일 미만 일한 사람은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는가의 활동상태에 따라 ㉔ ~ ㉖로 분류 조사한다.

*「㉔ ~ ㉖」에 해당되면 ㉓ ~ ㉕ 번 항목에 사선(\)을 긋고 ㉖ 혼인상태부터 조사한다.

○ 「㉔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은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새로이 취업 전선에 나와서 수입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구직활동의 예시]

- 공공 또는 사설 직업 소개소에 등록, 사업주와 직접 면담 또는 전화상담
- 취업 알선 기관(노동관련 기관)에 취업(직업) 알선을 의뢰한 경우
- 친구, 친지 등에 취업(직업) 알선을 의뢰한 경우
- 구직광고 게재, 구인(채용)광고에 응모
- 취직시험을 위한 원서 접수 및 응시
- 무보수로 견습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업장, 농장, 건설 공사장 등을 방문한 경우 등

○ 「㉗ 가사만을 돌보았음」은 지난 1개월동안에 취사, 육아, 세탁 등의 가사(집안일)만을 하고 있었던 경우(일반 가정주부)와 일을 하였더라도 4일 미만 일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가정부, 정원사, 자가용 운전사 등은 「㉑ 주로 일 하였음」에 해당 된다.

○ 「㉘ 학교(학원)만을 다녔음」은 지난 1개월동안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각급 정규학교 또는 재수생 입시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기술(정비)학원, 타자·경리·부기학원, 무보수로 직업훈련원 등에만 다닌 사람과 일을 하였더라도 4일 미만 일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 「㉙ 기타」는 조사대상 기간에 상기(㉑ ~ 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된다.

*방위소집 근무 중인 자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사람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자원봉사·구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재산수입·이자수입·배당금·송금·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⑬ 산업

⑬ 산업	일을 한 직장이나 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 장소를 기입합니다. ·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직장·사업체 이름 서울전자공업(주)	직장·사업체 이름 강남생명보험(주) 남대문지점 명동영업소	직장·사업체 이름 길 북 동	직장·사업체 이름 (주)계룡건축 설계사무소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 내용 카세트 녹음기 제조	주된 사업 내용 보험모집 및 관리	주된 사업 내용 식료품 잡화소매 (구멍가게)	주된 사업 내용 주택건축설계	주된 사업 내용	주된 사업 내용

○ ⑫번 항목의 ① ~ ⑤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장(사업체)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는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여 기입한다.

직장 · 사업체 이름

○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 회사, 공장 등의 이름을 기입한다.

* 지점, 영업소, 현장 등의 명칭도 함께 기입한다.

[기입 예]

- 현대건설(주) 본사
- (주)금성사 평택공장
- 금강건설(주) 일산 신도시 공사현장
- 한성물산(주) 부산영업소
- 동양생명보험(주) 전주지점
- 한성은행 부전동 지점

○ 상호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경우 또는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기입한다.

[기입 예]

- 우리논, 남의 밭
- 농장 · 목장
- ○○시장내
- ○○빌딩내
- ○○지하상가내
- ○○상가내

주된 사업내용

○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사업체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즉 어떤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곳인지, 어떤 종류의 상품을 판매(도매, 소매를 구별하여야 함)하는 곳인지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기입 예]

(틀 립)		(웁 음)
· 도매업	⇒	문구용품 도매업
· 대리점	⇒	가구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 소매상(소매업)	⇒	포목소매, 벽지소매, 채소류 소매
· 건설업	⇒	도장공사업, 토목건설업, 아파트건설
· 보험업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 제조업체	⇒	TV제조, 냉장고 제조, 목재가구 제조
· 제조업체	⇒	아동용 의류 생산, 학생용 참고서적 출판

⑭ 직업

⑭ 직업 일하는 곳에서의 부서 및 직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하고 있)습니까? •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부서 및 직책 총무부 인사과장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직원 복무관리	부서 및 직책 영업(주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고객용 상대로 보험설명 및 가입권유	부서 및 직책 구멍가게 주인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식료품 잡화류 판매함	부서 및 직책 사장(대표이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주택설계사무소 경영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⑫번 항목의 ① ~ ⑤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하고 있었던 부서 및 직책과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일의 내용 또는 수행했던 업무(임무)가 무엇인가를 기입한다.

*수행업무(임무)가 여러가지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주된 것을 기입한다.

부서 및 직책

○ 부서는 ○○부, 국, 과, 계, 반명을 기입하고 직책에는 사장, 전무, 상무, ○○부장, 국장, 과장, 계장, 공장장, 반장, 공원, 사무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기입 예]

· 개발부 개발과장	· 경리과 경리계장
· 산업조사부 유통과 조사1계장	· 의류 소매업자
· 의류 판매원	· 자영자(혼자 사업하는 경우)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공무원, 회사원, 공원, 사무원, 직원, 상업 등 막연한 직업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기입 예]

- 양품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음
- 경리사무를 보고 있음
- 타자를 치고 있음
- 나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
- 알루미늄제품을 연마하고(깎고) 있음
- 제품을 구부리고 펴는 일을 하고 있음

⑮ 종사상의 지위

⑮ 종사상의 지위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였습니까? ·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해당 번호에 ○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 ⑫번 항목의 ①~⑤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업 또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수입이 있는 일을 어떤 지위(위치)에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① 임금·봉급 근로자」는 일정한 직장(국가나 공공단체, 민간업체,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그 대가로 봉급, 급여, 임금 또는 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 공무원, 회사의 직원(생산직·사무직·관리직 근로자 모두 포함)과 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감사 등 중역 포함),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이 봉급(월급,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단순히 거마비(교통비, 활동비)만 받는 비상근 임원은 제외]

*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가정부, 파출부, 정원사, 자가용 운전사 등)도 여기에 포함.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 일정하게 어느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정한 장소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 또는 수수료를 가정에서 직접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급여를 주는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 「④ 무급 가족 종사자」는 일정한 보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한 사람이 해당된다.

* 단,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① 임금·봉급 근로자」에 해당된다.

(사 례)

- ◆가사 종사자로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 가정에 소속되어 있으면 임금·봉급 근로자로 분류한다. 단, 개인 가정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공구로 소규모 수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분류한다.
-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행상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없이 길거리나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분류한다.
떠돌아 다니면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원이 없이 일을 수행하는 단순노무 자영자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분류한다.
- ◆법인 기업의 특정 임원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그 회사가 그 사람의 소유라 할지라도 임금·봉급근로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 ◆숙식·의복 등 현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임금·봉급 근로자로 간주하여 분류한다.
- ◆두사람 이상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업자도 고용원 유무에 따라 자영자 또는 사업주로 분류한다.
-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 등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 분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임금·봉급 근로자로 분류하나, 원료 자체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가내수공업으로 보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분류한다.
- ◆외판원중에서도 회사에서 봉급을(일부나마) 받는 경우는 임금·봉급 근로자로 분류하고 봉급을 전혀 받지 않고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급 또는 단가제의 경우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또는 고용원을 둔 사업주로 분류한다.
- ◆승려·목사·신부 등 성직자는 임금·봉급 근로자로 분류한다. 단, 교회나 사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곳에 다니면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때 그때 보수를 받는 자는 자영자로 분류한다.
- ◆가정에서 하숙을 치는 사람은 자영자로 분류한다.

⑩ 혼인상태

⑩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상태에 ○표 합니다.	① 미 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 별 ④ 이 혼
						③ 사 별

○ 세는 나이로 16살 이상인 사람에 대해 조사한다.

16살 미만(15살 이하)인 사람은 사선(\)을 긋는다.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한다.

○ 「① 미혼」은 지금까지 혼인(결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 「② 배우자 있음」은 혼인(결혼)하여 현재 배우자(처 또는 남편)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 재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③ 사별」은 혼인(결혼)하였으나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 해방전 또는 6·25사변때 배우자(처 또는 남편)중 어느 한쪽이 실종 또는 납치된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사별에 포함된다.

○ 「④ 이혼」은 혼인후 배우자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포함된다.



〈사 례〉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상태를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② 배우자 있음」으로 조사한다 (미혼모도 같은 요령으로 조사).

⊕ 혼인신고는 물론 결혼식도 하지 않고 자녀를 1명 낳고 같이 살다가 현재는 동거하였던 남자와 헤어져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 혼인상태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하므로 혼인하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④ 이혼」으로 조사한다.

3. 가구에 관한 사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이 되어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 이후에는 사선(\)을 긋는다.

① 거처의 종류

① 거처의 종류

택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 <input type="checkbox"/> ⑥ 오피스텔 |
| <input type="checkbox"/> ② 아파트 | <input type="checkbox"/> ⑦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 <input type="checkbox"/> ③ 연립주택 | <input type="checkbox"/> ⑧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
| <input type="checkbox"/> ④ 다세대주택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
| <input type="checkbox"/>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공장·점포·여관 등) | |

○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써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주장소를 가리킨다(「Ⅲ. 조사대상(11, 12쪽)」참고).

* 동일한 거처내에 살고 있는 가구들의 거처의 종류가 다르게 응답(기입)되었을 경우에는 재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구구분

② 가구 구분

택은 이 집을 대표하는 가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가구입니까?

- 주인가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집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가 대표가구입니다.
- 집단가구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6인 이상 살고 있는 가구와 고아원·양로원 등 특수 사회시설이 해당됩니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주인(대표)가구 | → | <input type="checkbox"/> ① 일반가구 |
| <input type="checkbox"/> ② 주인(대표)가구가 아님 | | <input type="checkbox"/> ② 집단가구 |

* ②집단가구에 해당되면 가구에 관한 사항 ③~⑦번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주인(대표)가구 여부

- 한 주택에 한 가구만 사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주인(대표)가구」에 해당된다.
- 주인가구가 없이 세든 가구들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가장 오래 살았거나 주택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주인(대표)가구」로 한다.

가구구분

- 「Ⅲ. 조사대상(8, 9쪽)」에서 설명된 가구의 종류를 참고하여 조사가구가 일반가구인지 집단가구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②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가구에 관한 사항 「③~⑦번」까지 사선(\)을 긋는다.

③ 점유형태, ④임차료

③ 점유형태 ④ 임차료

이 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 사글세인 경우에는 계약 개월수와 한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① 주거전용	① 자기집	전세·보증금			
	② 전세(월세 없음)	억	천만	백만	십만
② 영업겸용	③ 보증금 있는 월세	0	4	0	0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월세(사글세)			
	⑤ 사글세(개월)				
	⑥ 무 상				

주거전용여부

○ 조사대상 가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주거전용인지 또는 영업겸용인지를 조사한다.

* 주거면적과 관계없이 해당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의 일부를 영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영업 겸용에 해당된다.

점유형태 및 임차료

○ 조사대상가구가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와 임차료를 조사한다.

* 점유형태가 「② ~ 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차료도 조사하여야 한다.

○ 「① 자기집」: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

○ 「② 전세(월세 없음)」: 전세금만 내고 세들어 사는 경우로 「전세·보증금」란에 전세액을 기입하고 「월세(사글세)」란은 사선(\)을 긋는다.

* 전세 든 사람이 일부 방을 다시 세 놓는 경우에는 원래의 전세액에서 다른 가구에 세를 놓아 받은 전세액 또는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내는 경우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란에 사선(\)을 긋고 「월세(사글세)」란에만 그 금액을 기입한다.

○ 「⑤ 사글세(개월)」: 미리 몇 개월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공제하는 경우

* 이 경우 계약 개월수를 기입하고 그 전체 금액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계산해서 기입한다.

○ 「⑥ 무상」: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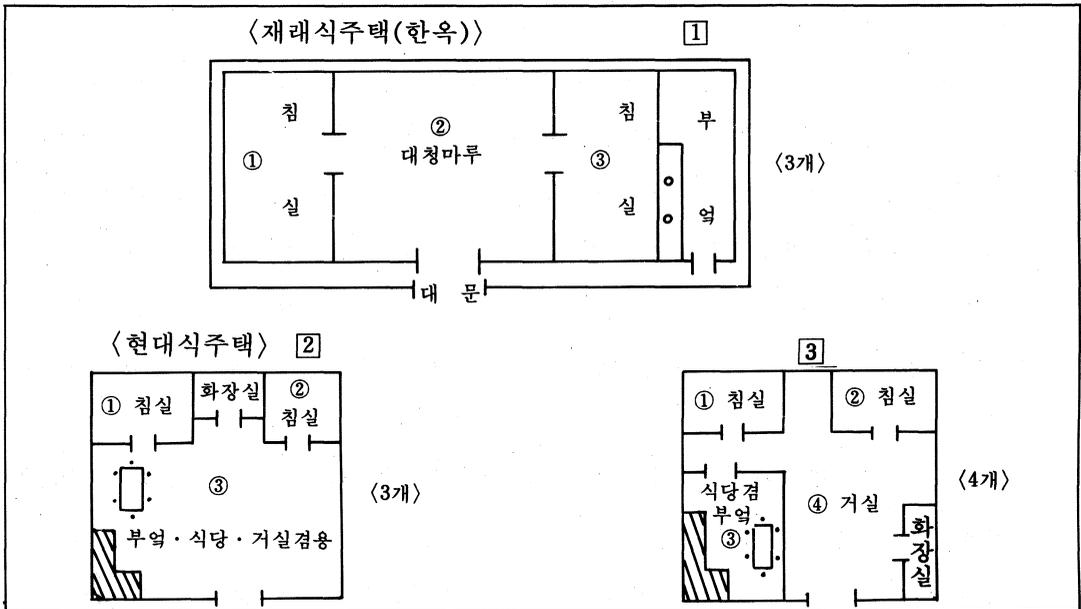
* 「전세·보증금」란과 「월세(사글세)」란에 모두 사선(\)을 긋는다.

⑤ 사용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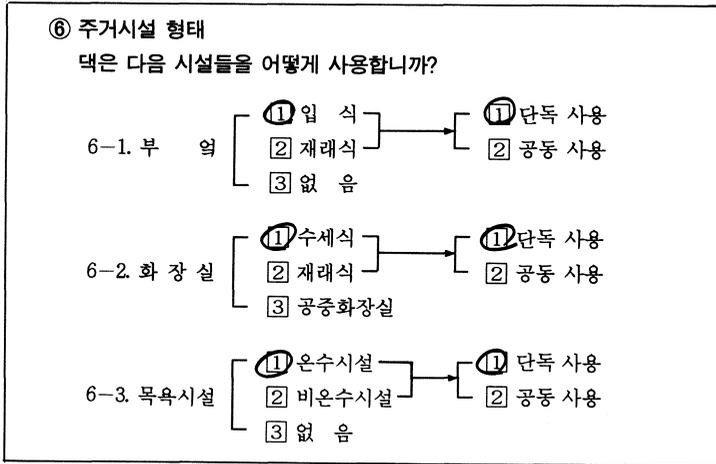
⑤ 사용방수
 데에서 사용하는 방은 침실(서재 포함),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 등을 포함하여 모두 몇 개입니까?
 • 벽 또는 문으로 각각 차단된 경우만 별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서로 띄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벽 또는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2개로 봅니다.

4 개

-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거실) 등과 같이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m(6척) 이상, 넓이가 3.3㎡(1평)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사람이 실제로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시키며, 단순히 물건만 쌓아 둔 경우에는 방으로 보지 않는다.
-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
- 거실, 식당도 반드시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보아 포함한다.
 *거실, 식당, 현대식 부엌이 서로 띄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간주하여 포함시킨다.
 *식당과 부엌은 하나로 띄어 있으나 거실이 이들과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으면 2개로 간주하여 방에 포함시킨다.
 *거실과 부엌은 하나로 띄어 있으나 식당과는 벽과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으면 2개로 간주하여 포함시킨다.



⑥ 주거시설 형태



부 역

○ 사용하고 있는 부역이 있으면 그 형태를 질문하고, 없으면 「③ 없음」에 ○표 한다.

*「① 입식」은 조리(취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 (입식) 시설을 갖춘 부역이 해당되며, 「② 재래식」은 싱크대가 없이 재래식 아궁이를 갖추고 있는 부역이 해당된다.

*여러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부역시설이 「① 입식」, 「② 재래식」에 해당되면 단독 또는 공동 사용 여부를 질문한다.

*단독 사용은 1가구만이 사용하는 경우이며, 공동 사용은 2가구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해당된다.

*한 가구가 한개(또는 여러개)의 부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역이 있으면 「① 단독 사용」에만 ○표 한다.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이 있으면 「① 수세식」에, 이외의 화장실은 「② 재래식」에 ○표 한다.

*조사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에 속하지 않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③ 공중화장실」에 ○표 한다.

*여러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 수세식, 「 재래식」에 해당되면 단독 또는 공동 사용 여부를 질문한다.

* 한 가구가 한개(또는 여러개)의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으면 「 단독 사용」에만 표 한다.

목욕시설

○ 조사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목욕시설이 있으면 온수시설 구비 여부를 질문한다. 목욕 시설이 없으면 「 없음」에 표 한다.

* 온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 온수시설」에 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 비온수시설」에 표 한다.

* 여러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⑦ 거주기간

⑦ 거주기간

이 집에 살고 있는 기간(가장 오래 살고 있는 가구원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6 10년~15년 미만 |
| <input type="checkbox"/> 2 1년~2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7 15년~20년 미만 |
| <input type="checkbox"/> 3 2년~3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8 20년~25년 미만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3년~5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9 25년 이상 |
| <input type="checkbox"/> 5 5년~10년 미만 |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95년 11월 1일까지 계속 살아 온 기간을 계산하여 해당되는 기간란에 표 한다.

○ 가구원들이 입주하여 살아온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오래 살아온 가구원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4. 주택에 관한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란의 ①번 조사항목(거처의 종류)에서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중에 해당되면서 ②번 조사항목(가구구분)에서 「1 주인(대표)가구」로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 이후에는 사선(\)을 긋는다.
- 주인가구(또는 대표가구)가 사용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구가 사용하는 부분(세를 놓고 있는 부분)과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특히 여러가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거처내의 한 가구만이 주인(대표)가구가 되므로 나머지 다른 세든 가구가 사용하는 부분도 모두 포함시켜 조사하여야 함에 주의한다.

① 연건평

① 연건평

이 주택의 연건평은 얼마입니까?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 부분만 기입합니다.

26 평 또는 m²

- 평 또는 평방미터(m²)중 한쪽만 조사한다.
* 평방미터(m²)로 조사된 경우에는 평(坪)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1평≒3.3m²).
-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조사하며, 차고, 창고, 외양간 등은 제외한다.
- 주거용 부분만 조사하고, 영업용 부분은 제외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입한다.

② 대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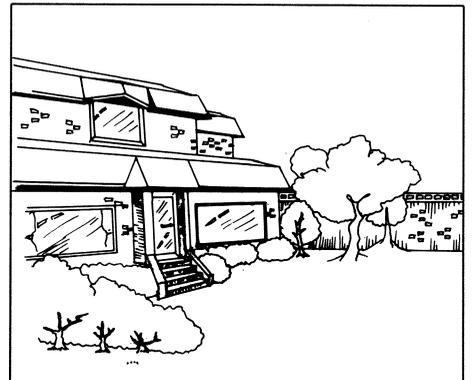
② 대지면적

이 주택의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독주택만 기입합니다.)

• 담장 안의 모든 면적을 포함하되,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45 평 또는 m²

- 대지면적은 『가구에 관한 사항』란의 ①번 조사항목(거처의 종류)에서 「1 단독 주택」으로 조사된 경우에만 조사한다.
* 주거용 부분만 조사하므로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담장(울타리)안의 텃밭을 제외한 전 면적을 조사하여 기입한다. 따라서 담내의 정원은 포함시킨다.



③ 총방수

③ 총 방 수
 이 주택에는 침실(서재 포함),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 등을 포함하여 방이 모두 몇 개입니까?

- 사용하고 있지 않는 침실(서재 포함)과 거실(대청마루), 식당도 포함합니다.
- 거실과 식당이 서로 툇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벽 또는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2개로 봅니다.

4 개

- 『가구에 관한 사항』란 ⑤번 항목(사용방수)의 조사요령과 동일하게 조사한다.
- 다른 가구(세든 가구)가 사용하고 있거나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방(침실, 서재), 거실(대청마루), 벽과 문으로 차단된 식당이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조사한다.
- *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단순히 물건만 쌓아 두고 있는 다락방, 점포, 사무실 등은 방 수에서 제외한다.
- * 사람이 살고 있는 다락방은 방에 포함시킨다.

④ 건축년도

④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증축·개축 면적이 주택 총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시기에 ○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 1995년	<input type="checkbox"/> 7 1989년~1980년
<input type="checkbox"/> 2 1994년	<input type="checkbox"/> 8 1979년~1970년
<input type="checkbox"/> 3 1993년	<input type="checkbox"/> 9 1969년~1960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1992년	<input type="checkbox"/> 10 1959년~1950년
<input type="checkbox"/> 5 1991년	<input type="checkbox"/> 11 1949년 이전
<input type="checkbox"/> 6 1990년	

- 신축시기를 조사하여야 하나 증축·개축면적이 주택 총면적(연건평)의 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시기에 ○표 한다.
- * 여러차례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증축 시기에 ○표한다.
-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은지 오래되어 건축년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인근 이웃집들의 건축년도를 참고로 비교하여 조사한다.
- 아파트로 건축년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인)에 질문하여 일괄적으로 조사한다.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년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건물(동)내에 거주하는 다른 가구들에게서 조사된 건축년도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⑤ 편의시설수

⑤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 있습니까?

- 독립된 출입구에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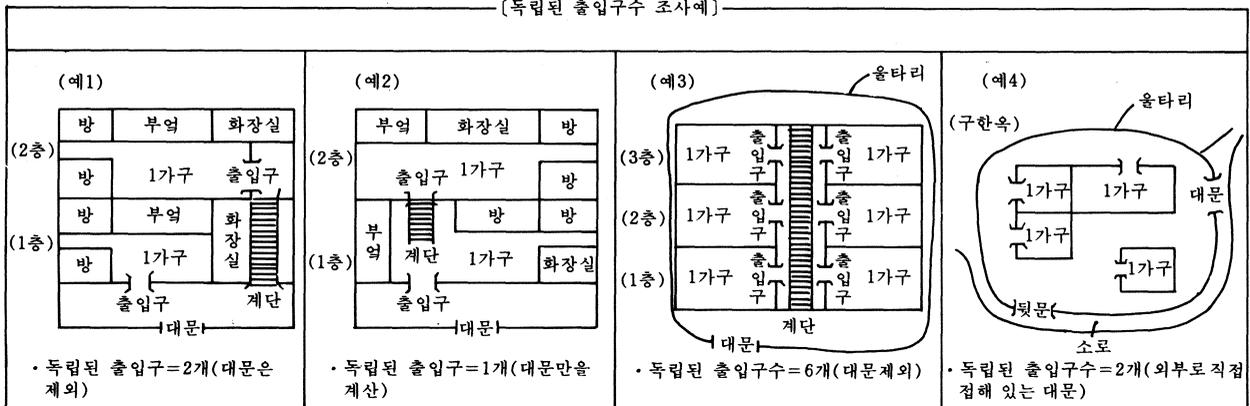
5-1. 부 엌 수 : 개

5-2. 화 장 실 수 : 개

5-3. 독립된 출입구 수 : 개

- 세든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이 주택에 설비된 각각의 총수를 확인 기입한다.
- 벽과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대식 부엌(수도시설, 조리대시설을 제외한 공간이 1평 이상)으로서 방으로 간주되어 ③번 항목(총방수)에서 조사되었다라도 이번 항목에서 다시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독립된 출입구는 옥외로 직접 접해 있는 출입구를 말한다.
 - * 단, 대문을 여러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각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현관문(출입구)이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출입구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이 경우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대문은 독립된 출입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대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각호의 현관문을 독립된 출입구로 조사한다.
- 방법 등의 목적을 위해 여러 주택의 둘레에 담(울타리)을 쌓고 문을 달아 놓은 경우에는 각 주택별로 독립된 출입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 구가옥 등 재래식 단독주택은 직접 외부와 접해 있는 출입구만을 독립된 출입구로 본다.

[독립된 출입구수 조사예]



VII. 외국인 조사

외국인은 체류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

* 단, 외국의 외교관, 외국 군인·군속 및 그 가족과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외국인만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 가구(1인가구 포함)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조사표」를 배부하여 본인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다.
- 한 집(거처)에 외국인 가구만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외국인 가구가 주인 또는 대표가구가 된다. 외국인이 여러가구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가구를 주인 또는 대표가구로 하며, 만일 그 거처내에 종업원(가사 사용인)이라도 한국인(가구)이 있으면 한국인(가구)을 주인 또는 대표가구로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는 「외국인 조사표」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토록 하며, 한국인(한국 국적 소지자)은 별도의 1가구로 간주하여 일반조사표를 사용하여 면접 조사한다.
- 이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가구)이 주인(또는 대표)가구가 된다.

공장·학교 등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공장, 기숙사 관리인에게 의뢰하여 외국인에게 조사표를 배부하여 작성해 주도록 의뢰한다.
- 한 기숙사내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하나의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되었으면, 한국인은 일반조사표(표본조사표)를, 외국인들은 외국인 조사표를 각각 사용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구번호(거처번호는 동일)를 부여하고 가구명부상에는 외국인 가구에 ○표 한다.
- 20명 미만의 외국인만 기숙사에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조사표로 조사한다.

집단거주 외국인(가구)

-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로 설정된 경우에는 외국인 조사표를 배부하여 본인이 직접 기입토록 한다.

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

- '95년 11월 1일 0시 현재 관광호텔(3등급 - 무궁화 2개 이상)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광호텔 조사구 담당조사원이 호텔 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외국인 투숙객에게 조사표를 배부 기입해 주도록 부탁 조사한 후 회수한다.
* 회수 즉시 조사표 작성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재확인하도록 한다.

2. 조사표 작성 요령

가. 난외 사항

- 일반조사표의 작성요령과 같다.
* 단, 기숙시설 조사구의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별도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한국인 가구번호를 먼저 부여한다)
* 보통조사구내의 외국인(가구)는 일반 한국인 가구와 동일한 요령으로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단, 「가구 구분」란은 조사표 배부시 한국인 거주여부와 다른 외국인 가구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인(대표)가구와 동거가구를 구분 표시한다.

〈사 례〉

- ㉠ 외국인 가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더니 한국인 가정부와 같이 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가?
- ㉡ 한국인(가정부)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2가구로 간주하여 외국인은 외국인용 조사표를 사용하고, 한국인은 일반 조사표(전수 또는 표본)를 사용하여 별도로 조사하도록 한다. 단, 한국인은 주인가구가 아니더라도 주인가구로 간주하여 주택에 관한 사항까지 조사하고, 외국인 가구는 동거가구로 조사한다.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내에 외국인만 살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 가구가 주인가구(또는 대표가구)가 된다.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① 성명

	1	2	3	4	5
①성명 Name 姓名 氏名	John.K.D	Mary.A.E	Mason.A.D	Tommy.F.A	Jesserson.A.M

○ 성명이 기입되어야 한다.

② 성별

②성 Sex 性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Male 男 <input type="radio"/> 여자 Female 女	<input type="radio"/> 남자 Male 男 <input checked="" type="radio"/> 여자 Female 女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Male 男 <input type="radio"/> 여자 Female 女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Male 男 <input type="radio"/> 여자 Female 女	<input type="radio"/> 남자 Male 男 <input checked="" type="radio"/> 여자 Female 女
----------------	---	---	---	---	---

○ 성별 구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생년월일

③생년월일 Date of brth 生年月日	(1955년 4월 20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59년 7월 29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63년 4월 12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68년 10월 11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71년 3월 28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	---	---	---	--	---

○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기입되도록 한다.

④ 국적

④국적 Nationality 國籍	<input type="radio"/> 중국(조선족)中國(朝鮮族)				
	<input type="radio"/> 중국(조선족외)中國(朝鮮族外)				
	<input type="radio"/> 대만 臺灣				
	<input type="radio"/> 일본 日本				
	<input type="radio"/> 필리핀 The Philippines				
	<input type="radio"/> 파키스탄 Pakistan				
	<input type="radio"/> 네팔 Nepal				
	<input type="radio"/> 태국 Thailand				
	<input type="radio"/> 말레이시아 Malaysia				
	<input type="radio"/> 인도네시아 Indonesia				
	<input type="radio"/> 방글라데시 Bangladesh				
	<input type="radio"/> 인도 India				
	<input type="radio"/> 베트남 Vietnam				
	<input checked="" type="radio"/> 미국 USA				
	<input type="radio"/> 영국 United Kingdom				
	<input type="radio"/> 프랑스 France				
	<input type="radio"/> 독일 Germany				
	<input type="radio"/> 호주 Australia				
	<input type="radio"/> 기타 Others 其他 其他				

○ 외국인의 해당국적에 ○표 하고, 해당국가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19 기타」란에 ○표하고 ()내에 그 국가명을 기입토록 한다.

○ 한국인이라도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취득국적에 ○표 한다.

○ 중국인은 반드시 '조선족'과 '조선족외'를 구별하여 ○표 한다.

⑤ 체류목적

⑤주된 체류목적 Main Purpose of stay 主居留目的 主な在留目的	①영주 Permanent immigration 永住				
	②취업 Employment(work) 雇傭				
	③종교활동 Religious Mission 宗教活動				
	④교육·훈련 Education or training 教育及訓練				
	⑤관광·사업차 일시방문 Visiting for sightseeing or business 觀光及辦公事感事業上の事情 觀光又は事業訪問	⑤관광·사업차 일시방문 Visiting for sightseeing or business 觀光及辦公事感事業上の事情 觀光又は事業訪問	⑤관광·사업차 일시방문 Visiting for sightseeing or business 觀光及辦公事感事業上の事情 觀光又は事業訪問	⑤관광·사업차 일시방문 Visiting for sightseeing or business 觀光及辦公事感事業上の事情 觀光又は事業訪問	⑤관광·사업차 일시방문 Visiting for sightseeing or business 觀光及辦公事感事業上の事情 觀光又は事業訪問
	⑥친지방문 Visiting kin 拜訪親知 親戚訪問				
	⑦가족동반 Accompanying family 家族同伴 家族と共に				
	⑧기타 Others 其他 其の他				

○ 여권·비자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입국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입국 목적을 기입한다.

* 특히 조선족, 동남아인이 친지방문, 관광으로 위장 입국한 후 취업을 한 경우에도 「② 취업」에 해당된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목적을 기입한다(2개 이상의 체류목적이 있으면 주된 목적 하나에 만 ○표 한다).

○ 「② 취업」에는 불법취업자도 포함된다.

○ 「③ 종교활동」에는 선교목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

○ 「④ 교육·훈련」에는 대학·연구소,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해당된다.

* ‘훈련생(연수생)’으로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학교와 학원 등에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교사, 강사 등은 「② 취업」에 해당된다.

○ 「⑤ 관광·사업차 일시방문」에서 ‘사업차 방문’은 국내에서의 취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간 계약, 협의, 고객 상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⑥ 친지방문」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⑦ 가족동반」은 본인의 체류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따라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⑧ 기타」는 ①~⑦ 이외의 목적이 해당된다.

⑥ 일하는 장소

⑥일하는장소 Place of work 工作處 勤務先	①공장 Factory 工場 ②음식점·판매업소 Restaurant or shop 飯館. 小商店 飲食店·販賣業所 ③사무실 Offices 辦公室 事務室 ④가정집 Home 一般家庭 家 ⑤학교·학원 School or institute 學校·補習班(學院) 學校·學院 ⑥기타 Other places 其他 ⑦일하지 않음 None 不工作 なし	①공장 Factory 工場 ②음식점·판매업소 Restaurant or shop 飯館. 小商店 飲食店·販賣業所 ③사무실 Offices 辦公室 事務室 ④가정집 Home 一般家庭 家 ⑤학교·학원 School or institute 學校·補習班(學院) 學校·學院 ⑥기타 Other places 其他 ⑦일하지 않음 None 不工作 なし	①공장 Factory 工場 ②음식점·판매업소 Restaurant or shop 飯館. 小商店 飲食店·販賣業所 ③사무실 Offices 辦公室 事務室 ④가정집 Home 一般家庭 家 ⑤학교·학원 School or institute 學校·補習班(學院) 學校·學院 ⑥기타 Other places 其他 ⑦일하지 않음 None 不工作 なし	①공장 Factory 工場 ②음식점·판매업소 Restaurant or shop 飯館. 小商店 飲食店·販賣業所 ③사무실 Offices 辦公室 事務室 ④가정집 Home 一般家庭 家 ⑤학교·학원 School or institute 學校·補習班(學院) 學校·學院 ⑥기타 Other places 其他 ⑦일하지 않음 None 不工作 なし	①공장 Factory 工場 ②음식점·판매업소 Restaurant or shop 飯館. 小商店 飲食店·販賣業所 ③사무실 Offices 辦公室 事務室 ④가정집 Home 一般家庭 家 ⑤학교·학원 School or institute 學校·補習班(學院) 學校·學院 ⑥기타 Other places 其他 ⑦일하지 않음 None 不工作 なし
---------------------------------------	---	---	---	---	---

○ 실제로 일하고 있는 곳에 ○표 한다.

* 「⑤번 항목에서 조사된 체류목적」과 일하는 장소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착오 기입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한다.

⑦ 입국일자, ⑧ 출국 예정일자

⑦입국일자 Date of entry 入國日字	1990년 4월 23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90년 4월 23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91년 3월 18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92년 7월 29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92년 7월 29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⑧출국예정일자 Expected date of departure 出國豫定日字	1997년 2월 18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97년 2월 18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97년 2월 18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97년 5월 20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1997년 5월 20일 Year Month Day 年 月 日

○ 여권(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실제의 출국 예정일자를 기재한다.

* 입국일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여권(비자)상의 「입국일자」를 기입한다.

*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입국일자」를 「생년월일」로 기입한다.

* 영구 거주(영주)인 경우는 「출국 예정일자」란에 사선(\)을 긋는다.

다. **가구에 관한 사항**

①~③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사용방수

○ 한국인 일반조사표 조사요령에 의해 조사한다.

④ 사용 부엌시설 형태

④사용부엌 시설형태 Kitchen facility in use 使用廚房設施情況 使用している台所の施設形態

①수도시설·취사시설 모두 있음 With both plumbing and cooking facility 都有自來水設施·炊事設施 水道施設·炊事施設公に有り

②수도시설만 있음 Plumbing only 只有自來水設施 水道施設のみ有り

③취사시설만 있음 Cooking facility only 只有炊事設施 炊事施設のみ有り

④수도시설·취사시설 모두 없음 Neither plumbing nor cooking facility 都沒有自來水設施·炊事設施 水道施設·炊事施設共に交し

○ 수도시설과 취사시설의 유무를 조사한다.

⑤ 사용 화장실(목욕시설) 형태

④사용화장실(목욕시설) 형태 Toilet and bathroom in use 使用廁所(沐浴設施)情況 使用している便所(浴室)の形態

①화장실·욕실 모두 있음 With both toilet and bathroom 都有廁所·浴室設施 便所·浴室共に有り

②화장실만 있음 Toilet only 只有廁所設施 便所のみ有り

③욕실만 있음 Bathroom only 只有沐浴設施 浴室のみ有り

④화장실·욕실 모두 없음 Neither toilet nor bathroom 都沒有廁所·沐浴設施 便所·浴室共に交し

○ 화장실과 욕실의 유무를 조사한다.

〈사 례〉

문 거처의 종류가 7 여관·호텔에 해당될 경우에는 점유형태를 무엇으로 조사하여야 하는가?

☞ 특별한 임대차 계약 없이 숙박일수에 따라서 숙박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6」기타 에 해당 된다.

VIII. 빈집 조사

1. 조사대상

- 매매, 임대, 분양, 이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해당된다.
-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해 둔 폐가도 해당된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 전체(모든 가구분)가 모두 비어 있을 경우만 빈집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 신축된 주택은 준공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한 상태인 경우만 해당된다.
*신축 중인 주택은 제외된다.
- 별장은 관리인 가구가 살지 않는 경우만 빈집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 주택이외의 거처는 빈집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조사방법

- 그 빈집을 소유한 사람(가구)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가구)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 빈집 소유자가 타지에 있어 직접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이웃 또는 통·반·이장에게 질문하여 조사한다.
- 이외에 복덕방(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을 통해서 탐문 조사하도록 한다.

3. 조사표 작성요령

가. 난외사항

- 주소 ◀ 빈집 소재지(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를 기입한다.
- 조사구번호 ◀ 지정된 조사구번호를 기입한다.
- 빈집조사표 매수 ◀ 한 조사구내에서 이용한 빈집조사표의 총매수와 그 중 몇 매째인가를 '5매중 2매' 등과 같이 기입한다.
- 조사표당 빈집수 ◀ 1장의 조사표에서 조사된 빈집수를 기입한다. 단,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 경우에는 동일 거처내의 빈 호수 모두를 합쳐 1개의 빈집으로 간주한다.
- 빈집일련번호 ◀ 한 조사구내에서 조사된 빈집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한다.
- 거처번호 ◀ 가구명부상에 표시된 빈집의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나. 빈집 조사항목

① 빈집(주택)의 종류

<p>① 빈집(주택)의 종류</p> <p>① 보통 단독주택</p> <p>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___ 가구분)</p> <p>③ 아파트</p> <p>④ 연립주택</p> <p>⑤ 다세대주택</p> <p>⑥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p>	<p>① 빈집(주택)의 종류</p> <p>① 보통 단독주택</p> <p>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5 가구분)</p> <p>③ 아파트</p> <p>④ 연립주택</p> <p>⑤ 다세대주택</p> <p>⑥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p>
--	--

- 빈집의 유형을 「거처의 종류 조사요령(11, 12쪽 참조)」에 의해 조사·기입한다.
-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전체가 다 비어 있을 경우만 해당되며, 총 몇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기입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빈집은 각 호별로 작성한다.
 - * 별장은 관리인 가구가 살지 않는 경우만 빈집으로 조사하며 빈집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그 종류에 따라 ○표 한다.

② 비어있는 기간

<p>② 비어있는 기간</p> <p>① 3개월 미만</p> <p>② 3~6개월 미만</p> <p>③ 6~12개월 미만</p> <p>④ 12개월 이상</p>	<p>② 비어있는 기간</p> <p>① 3개월 미만</p> <p>② 3~6개월 미만</p> <p>③ 6~12개월 미만</p> <p>④ 12개월 이상</p>
--	--

- 비어있는 기간을 조사하여 해당되는 기간에 ○표 한다.
 - * 별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④ 12개월 이상」으로 조사한다.
 - *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경우는 완공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③ 빈집사유

<p>③ 빈집사유</p> <p>① 매매·임대·이사</p> <p>② 현재 수리중</p> <p>③ 일시적(가끔) 이용</p> <p>④ 폐가</p> <p>⑤ 기타()</p>	<p>③ 빈집사유</p> <p>① 매매·임대·이사</p> <p>② 현재 수리중</p> <p>③ 일시적(가끔) 이용</p> <p>④ 폐가</p> <p>⑤ 기타()</p>
--	--

- 그 집(주택)이 비게 된 사유에 ○표 하고, ⑤ 기타인 경우는 ()내에 사유를 기재한다.
- 매매, 임대를 위해서 비어 있거나, 이사를 오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 이사를 오지 못한 주택은 「① 매매·임대·이사」에 해당된다.
 - * 분양 대기중이거나 입주 대기중인 주택도 해당된다.
- 잠시 다른 곳에서 살면서 현재 수리중인 것은 물론 매매·임대 등을 위해서 현재 수리중인 주택도 「② 현재 수리중」에 해당된다.

○ 오랫동안 방치되어 대폭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는 다시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태의 주택은 「4 폐가」에 해당된다.

④ 빈집의 파손 정도

④ 빈집의 파손 정도 ① 파손 없음 ② 일부 파손 ③ 반이상 파손	④ 빈집의 파손 정도 ① 파손 없음 ② 일부 파손 ③ 반이상 파손
---	---

○ 다음 기준에 의거 주택의 주요 부분(지붕, 벽, 기둥, 방바닥, 부엌 등)과 기타부분의 파손 상태에 따라 파손정도를 판단하여 해당란에 ○표 한다.

○ 「① 파손 없음」: 주택의 주요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파손도 없는 경우와, 건물의 주요부분은 조금이라도 파손이 없으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리를 요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외벽이 여기저기 조금씩 떨어져 나갔거나, 벽 일부에 금이 갔거나, 기와 일부가 떨어졌거나, 빗물받이 홈통이 일부 파손되는 등 부분적으로 약간만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정도의 파손상태가 해당된다.

○ 「② 일부 파손」: 주택 주요부분의 노후와 파손 등 불완전한 곳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지붕, 벽, 기둥 등의 교체와 보강이 필요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으면 주택의 수명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파손상태가 해당된다.

○ 「③ 반이상 파손」: 주택의 수명이 다되어 앞으로 주택으로서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택과 재해 등으로 인해 크게 파손된 주택 등이 해당된다.

* 폐가인 경우는 「반이상 파손」에 ○표 한다.

◆ 기둥의 기울어짐, 지붕의 뒤틀림 또는 주택 주요부분의 노후와 파손의 정도가 지나쳐 폭풍우 등의 재해에도 위험을 느낄 정도의 파손상태가 해당된다.

—〈사 레〉—

㉠ 조사기간 동안에 수리중에 있는 주택은 파손상태를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수리가 완료되었을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파손이 없거나 주요부분 이외에서 일부만이 파손되어 손으로도 수리가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파손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 아파트 건물내의 각 호(주택)별로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각 주택별이 아닌 아파트 건물 전체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건물 내의 모든 주택은 「① 파손 없음」으로 조사한다.

IX. OMR조사표 작성 및 관리 요령

1. 일반사항

- OMR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2B연필(컴퓨터용)**로 기입하여야 한다.
(타 필기구 사용 절대 금지)
- OMR 조사표에서 는 글자 및 숫자를 기입하는 난이며, 은 마크「」를 하는 난이다.
- 마크란() 테두리내에 굵고 진하게 마크한다.

※ 마크의 기본 원칙

- 연필심 부분은 둥글게 깎아서 사용한다.
- 마크는 마크테두리내의 좌측선에서 우측선까지 한다.
- 농도는 가급적 진하게 한다.

* 양호한 마크의 예 :

* 불량한 마크의 예

- 가늘거나 희미한 경우 :  
 - 짧은 경우 :   
 - 마크 테두리에서 2mm이상 벗어난 경우 :  
 - 마크 테두리 밖에 표시된 경우 :  
 - 잉크, 볼펜 등으로 마크되어 있는 경우 : 
 - 가득차게 마크한 경우 : 
- 글자 또는 숫자를 기입할 경우에는 기입 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OMR 조사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 이기시 단위의 착오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숫자가 “0”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크를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잘못 마크하여 수정할 경우에는 컴퓨터용 지우개를 사용하여 깨끗이 지우고, 지우개 흔적이나 가루가 남지 않도록 한다.
 - 마크테두리 부분() 밖에 있는 번호에는 일체 기입하지 않아야 하고, 낙서나 불필요한 표기가 없어야 한다.
 - 조사표 전면의 우측상단 및 우측면의 타이밍 마크() 주위에는 낙서나 불필요한 표기가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리요령

- 조사표는 환경조건(특히 온도, 습도)이 급격히 변화하기 쉬운 장소(예 :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 또는 난방장치 부근)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 조사표가 물기나 습기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조사표의 모서리 부분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조사표에 구멍을 뚫거나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 조사표에 클립이나 지철기(스테플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먼지, 기름, 물방울 등의 오염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표 보관시 자석 등의 접근은 피해야 한다.
- 조사표 취급시 가급적 타이밍 마크 쪽은 삼가하고, 조사표의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조사표를 다룬다.
- 완성된 OMR조사표는 항상 「보호용 비닐」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3. OMR조사표 작성요령

가. 표본조사표 I 작성 요령

난의사항

※ '90년 총조사와 '95년 총조사의 시험조사 결과 OMR조사표를 작성할 때에 에러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므로 OMR조사표 작성시 정확하게 마크하도록 주의한다.

○ 주 소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는 OMR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주소를 빠짐없이 매장마다 기입한다.

주 소	시	읍	리	101번지	25호
	서울특별시	강남	군역삼	(10동	통계 아파트)
	도	구	동	3번	(102동 203호)

○ 조사구번호 및 조사구 종류

*조사구번호는 4자리로 앞의 3자리는 조사구번호를, 마지막 한자리(조사구 종류)는 조사구의 특성번호를 기입하고 마크한다 ("0"란 마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도 조사표 매장마다 마크한다.

예) 050-1인 경우

조사구번호	0	백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5	십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0	일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조사구종류	1	일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 거처번호

* 한 가구에 2매 이상 사용하는 경우

조사표 매장마다 마크한다.

예) 30인 경우

거 처 번 호	0	백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3	십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0	일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 가구번호

*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도

조사표 매장마다 마크한다.

예) 40인 경우

가 구 번 호	0	백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4	십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0	일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및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예) 가구원수가 8명으로 OMR조사표를 2매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장마다 마크한다.

(첫째장 : 표본조사표 I, 둘째장 : 표본조사표 II)

가 구 당	0	백	가구당조사표	0	백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조 사 표	0	십	매 수 중	0	십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총 매 수	2	일	일 련 번 호	1	일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셋째장 : 표본조사표 I, 넷째장 : 표본조사표 II)

가 구 당	0	백	가구당조사표	0	백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조 사 표	0	십	매 수 중	0	십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총 매 수	2	일	일 련 번 호	2	일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 가구원수

*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첫째장에만 마크한다.

예)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

예) 가구원수가 10명인 경우

가 구 원 수	0	백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0	십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5	일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가 구 원 수	0	백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1	십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0	일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4"/>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6"/>	<input type="text" value="7"/>	<input type="text" value="8"/>	<input type="text" value="9"/>	

가구원에 관한 사항

① 성명

○ 일반조사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1	2	3
1.성 명	김 통 계	장 진 실	김 인 구

② 가구주와의 관계

예) 「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2.가구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	---

③ 성별

예) 「 남자」인 경우

3.성 별	1.남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여자 <input type="checkbox"/>
-------	--	-------------------------------

④ 나이

○ 세는 나이(“0”이 있을 경우에는 “0”란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주의 : 0~9까지 숫자가 두줄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숫자 확인하고 착오 없도록 마크

예) 세는 나이가 5세인 경우

세는 나이	백	1 <input type="checkbox"/>				
	십	0	1	2	3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1	2	3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6	7	8	9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띠

예) 잔나비띠인 경우

띠	쥐	소	범	토끼	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뱀	말	양	잔나비	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돼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양·음력 구분과 생년월일

* "0"이 있을 경우에는 "0"란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예) 1960년 3월 10일(음력)인 경우

생년월일	양·음력		1. 양력		2. 음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백	19		18		
		십	0	1	2	3	4
		일	5	6	7	8	9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십	1		2		3	
	일	0	1	2	3	4	
		5	6	7	8	9	

⑤ 종교

예) 「1」있음」 이고 「2」개신교(기독교)」인 경우
(OMR조사표에는 있음에 마크를 하지 않게 되어 있음)

5.종	교	1. 있음		2. 없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① 불교	⑤ 원불교	⑨ 그밖의종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② 개신교	⑥ 천도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③ 천주교	⑦ 대종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④ 유교	⑧ 대순전리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⑥ 출생지

○ 출생지가 「1」현재 살고 있는 집, 「2」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인 경우 해당 번호란에 마크하고 아래의 시도, 시군구란은 공백으로 둔다.

○ 「3」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인 경우는 해당번호란에 마크한 후 시도란의 해당 시·도를 찾아 마크하고 시군구란에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시·군·구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 하단의 이기·내검요원 기입란은 마크하지 않음(이기·내검요원이 마크하는 난임).

예) 경남 울산시인 경우

6. 출생지	1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input type="text"/>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input type="text"/>				
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input type="text"/>				
시군구	북한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울산시					

- 「㉔북한 또는 외국」으로서 북한이 출생지인 경우는 해당번호란과 시도란의 북한에 마크하고 시군구란에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도명과 시·군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 하단의 이기·내검요원 기입란은 마크하지 않음(이기·내검요원이 마크하는 난임).

- 「㉔북한 또는 외국」으로서 외국이 출생지인 경우는 해당번호란과 시도란의 외국에 마크하고 시군구란에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국가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 하단의 이기·내검요원 기입란은 마크하지 않음(이기·내검요원이 마크하는 난임).

⑦ 5년전 거주지

- 세는 나이가 6살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조사표에 사선(\)이 그어진 경우(조사를 안한 경우) OMR조사표에도 사선을 그으면 안된다(공백으로 둬).

- 「㉒」 또는 「㉓」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마크만 하고 아래의 시도, 시군구란은 공백으로 둔다.

- 「㉔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인 경우 해당번호란에 마크한 후 시도란에서 해당시도를 찾아 마크하고, 시군구란에는 조사된 시군구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 「㉕북한 또는 외국」인 경우 해당 번호란에 마크한 후 북한일때는 북한에 마크하고 시군구란에 「북한」이라고 기입, 외국일때는 외국에 마크하고 시군구란에 「국가명」을 기입한다.

* 하단의 이기·내검요원 기입란은 마크하지 않음(이기·내검요원이 마크하는 난임).

예) 「㉔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부산광역시 북구)인 경우

7. 5년전 거주지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북한	외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북구					

예) 북한 평안남도 평양시인 경우

6. 출생지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북한	외국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양시					

예) 필리핀인 경우

6. 출생지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북한	외국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리핀					

예) 「㉕북한 또는 외국」(독일)인 경우

7. 5년전 거주지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북한	외국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독일					

⑧ 교육정도

○ 세는 나이가 6살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조사표에 사선(\) 그어진 경우(조사를 안한 경우)에 OMR조사표에도 사선을 그으면 안된다(공백으로 둬).

예) 「⑤초급·전문대」, 「①졸업」인 경우

8. 교육정도	<input type="checkbox"/> ①안받았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졸업 <input type="checkbox"/> ②제학 <input type="checkbox"/> ③휴학 <input type="checkbox"/> ④중퇴
	<input type="checkbox"/> ②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③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④고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초급·전문대	
	<input type="checkbox"/> ⑥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⑦대학원	

⑨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 세는 나이가 13살 미만으로 조사를 안한 경우에는 공백으로 둔다.

(⑩~⑪번 항목도 동일)

○ 「①안함」인 경우 시도란과 시군구란은 공백으로 둔다.

○ 「①통근함」 또는 「②통학함」이면서 「①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이나 「②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에 표기된 경우 시도란과 시군구란은 공백으로 둔다.

○ 「②통근함」 또는 「③통학함」이면서 「③다른 시·군·구」로 조사된 경우 해당 번호와 시도명란에 마크하고 시군구란에 조사된 행정구역명(시·군·구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예) 「②통근함」과 ③다른 시·군·구」(경남 마산시)인 경우

*하단의 이기·내검요원 기입란은 마크하지 않음(이기·내검요원이 마크하는 난임).

9.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1	2	3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2	3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마산시		

⑩ 이용교통수단

예) 「③기타버스」와 「④전철·지하철」인 경우

10. 이용교통수단	<input type="checkbox"/> ①시내버스	<input type="checkbox"/> ⑥승용차
	<input type="checkbox"/> ②좌석버스	<input type="checkbox"/> ⑦택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기타버스	<input type="checkbox"/> ⑧자전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전차·지하철	<input type="checkbox"/> ⑨도보로만
	<input type="checkbox"/> ⑤기차	<input type="checkbox"/> ⑩기타(트럭등)

⑪ 통근·통학 소요시간

예) 「⑤ 60분~90분 미만」인 경우

11. 통근·통학소요시간	<input type="checkbox"/> ①15분미만
	<input type="checkbox"/> ②15~3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30~4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45~60분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60~9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90~12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120분 이상

표본조사표Ⅱ 작성 요령

난외사항

- 표본조사표 I 작성 요령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① 성명
- 표본조사표 I 에 기재된 성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가구원에 관한 사항

- ⑫ 경제활동상태
- 세는 나이가 16살 미만으로 조사를 안한 경우에는 공백으로 둔다.
- (⑬~⑮번 항목 동일)

예) 「☑주로 일 하였음」인 경우

12.경제활동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로·연소·장기질병 등)
-----------	---

⑬ 산업 ⑭ 직업

- 「직장·사업체 이름」과 「주된 사업내용」, 「부서 및 직책」과 「맡아 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일반조사표에 기재된 그대로 이기한다.

*OMR조사표 하단의 산업란, 직업란(통계청 기입란)은 공백으로 남겨 둔다.

13.산 업	직장·사업체 이름	서울전자공업(주)
	주된 사업내용	카세트녹음기제조
14.직 업	부서 및 직책	총무부 인사과장
	하고 있는 일의종류	직원복무관리

⑮ 종사상의 지위

예) 「**1**임금·봉급 근로자」인 경우

15.종사상의 지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⑯ 혼인상태

○ 세는 나이가 16살 미만으로 조사를 안한 경우는 공백으로 둔다.

예) 「**2**배우자 있음」인 경우

16.혼인 상태	<input type="checkbox"/> ①미 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 별
	<input type="checkbox"/> ④이 혼

가구에 관한 사항

○ OMR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한 경우는 첫째장에만 마크하고 둘째장부터는 마크하지 않는다.

① 거처의 종류

예) 「**1**단독주택」인 경우

1.거처의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input type="checkbox"/> ⑥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②아파트	<input type="checkbox"/> ⑦호텔·여관등 숙박업소의 객실
<input type="checkbox"/> ③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⑧기숙사 및 복수사회시설
<input type="checkbox"/> ④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⑨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input type="checkbox"/> ⑤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공장·점포·여관 등)	

② 가구 구분

○ 주인 또는 대표가구의 여부와 가구의 종류(일반 또는 집단가구)가 각각 마크되어야 한다.

예) 「**1**주인(대표) 가구», 「**1**일반가구」인 경우

2.가구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주인(대표)가구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일반가구
<input type="checkbox"/> ②주인(대표)가구가 아님	

③ 점유형태 ④임차료

○ 주거전용·영업겸용 구분과 자기집인지 셋집인지의 형태가 구분 마크되어야 한다.

○ 점유형태가 「**1**자기집」이나 「**5**무상」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금액란은 공백으로 둔다.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사글세)란에는 조사된 금액을 우선 기입하고 각 금액 단위별로 해당되는 숫자란에 마크한다.

* 각 금액 단위별로 "0"이 있을 경우 "0"란 마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①주거전용」, 「②전세」(4,000만원)인 경우

3.점유 형태 4.임차료

①주거전용 ②영업전용

①자가집 ②전세(월세 없음)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사글세 ⑥무 상

전 세	0	억	1	2	3	4	5	6	7	8	9	
	4	천만	0	1	2	3	4	5	6	7	8	9
	0	백만	0	1	2	3	4	5	6	7	8	9
	0	십만	0	1	2	3	4	5	6	7	8	9
월 세 (사글세)		천만	1	2	3	4	5	6	7	8	9	
		백만	0	1	2	3	4	5	6	7	8	9
		십만	0	1	2	3	4	5	6	7	8	9
		만	0	1	2	3	4	5	6	7	8	9

예) 「②영업전용」, 「③보증금 있는 월세」(보증금:500만원, 월세:20만원)인 경우

3.점유 형태 4.임차료

①주거전용 ②영업전용

①자가집 ②전세(월세 없음)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사글세 ⑥무 상

전 세	0	억	1	2	3	4	5	6	7	8	9	
	0	천만	0	1	2	3	4	5	6	7	8	9
	5	백만	0	1	2	3	4	5	6	7	8	9
	0	십만	0	1	2	3	4	5	6	7	8	9
월 세 (사글세)	0	천만	1	2	3	4	5	6	7	8	9	
	0	백만	0	1	2	3	4	5	6	7	8	9
	2	십만	0	1	2	3	4	5	6	7	8	9
	0	만	0	1	2	3	4	5	6	7	8	9

⑤ 사용방수

○ 일반조사표에 조사된 사용방수를 우선 기입하고, 해당 숫자란에 마크한다.

* "0"이 있을 경우 "0"란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사용방수가 3개인 경우

5.사용방수

0	3	개	십	1									
			일	0	1	2	3	4	5	6	7	8	9

⑥ 주거시설 형태

○ 주거시설 종류별로 형태 구분 및 단독 사용, 공동 사용의 구분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예)

6.주거시설 형태

6-1.부엌 ①일 식 ②제례식 ③없 음

①단독 사용 ②공동 사용

6-2.화장실 ①수 세 식 ②제례식 ③공동화장실

①단독 사용 ②공동 사용

6-3.목욕시설 ①온수시설 ②비온수시설 ③없 음

①단독 사용 ②공동 사용

⑦ 거주기간

예) 「43년~5년 미만」인 경우

7.거주기간

<input type="checkbox"/> ①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10년~1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1년~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15년~2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2년~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⑧20년~25년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3년~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⑨25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⑤5년~10년 미만	

주택에 관한 사항

-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보고 주택의 주인 또는 대표가구만 마크한다.
- OMR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한 경우는 첫째장에만 마크하고 둘째장부터는 마크하지 않는다.

① 연건평

- 평을 기준으로 기입하고 해당 숫자란에 마크한다.

* 각 단위별로 "0"이 있을 경우 "0"란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40평인 경우

예) 50㎡인 경우(50÷3.3≒15.15⇒15평)

1.연 건 평 (평)

0 4 0 평	백	1	2	3	4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1.연 건 평 (평)

0 1 5 평	백	1	2	3	4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② 대지면적

- 「1」단독주택」만 마크한다(단독주택으로 조사되지 않은 경우는 공란으로 둠).
- 평을 기준으로 마크한다(◇ 연건평 마크 방법과 동일).

③ 총방수

- 『가구에 관한 사항』에서 ⑤사용방수 마크방법과 동일

예) 총 방수가 10개인 경우

3.총 방 수

1 0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④ 건축년도

예) 「1989~1980년」인 경우

4.건축년도

<input type="checkbox"/> ①198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⑦1989년~1980년
<input type="checkbox"/> ②1994년	<input type="checkbox"/> ⑧1979년~1970년
<input type="checkbox"/> ③1993년	<input type="checkbox"/> ⑨1969년~1960년
<input type="checkbox"/> ④1992년	<input type="checkbox"/> ⑩1959년~1950년
<input type="checkbox"/> ⑤1991년	<input type="checkbox"/> ⑪1949년 이전
<input type="checkbox"/> ⑥1990년	

⑤ 편의시설수

예) 부엌 2개, 화장실 2개, 독립된 출입구
2개인 경우

5.편의시설수

5-1.부엌 수

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일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9

5-2.화장실 수

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일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9

5-3.독립된 출입구수

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일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9

나. 외국인 OMR조사표 작성 요령

난외 사항

○ 표본조사표(OMR)와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한다.

가구원에 관한 사항

- ① 성명
- 외국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1	2
1.성 명	John. K. D	Mary. A. E

② 성별

예) 「남자」인 경우

2.성 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남자	<input type="checkbox"/> ②여자
-------	---	------------------------------

③ 생년월일

*“0”이 있을 경우 “0”란 마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1970년 3월 20일인 경우

3. 생년월일	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십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월	1월	<input type="text"/>							
		2월	<input type="text"/>							
		3월	<input type="text"/>							
		4월	<input type="text"/>							
		5월	<input type="text"/>							
		6월	<input type="text"/>							
	일	십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④ 국적

○ 「외국인」인 경우 일반조사표에 기재된
국가명을 그대로 기입하고 이기내검 요
원 기입란은 공백으로 둔다.

예) 「외국인(터어키)」인 경우

4. 국 적	1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4	<input type="text"/>				
	5	<input type="text"/>				
	6	<input type="text"/>				
	7	<input type="text"/>				
	8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10	<input type="text"/>				
	11	<input type="text"/>				
	12	<input type="text"/>				
13	<input type="text"/>					
14	<input type="text"/>					
15	<input type="text"/>					
16	<input type="text"/>					
17	<input type="text"/>					
18	<input type="text"/>					
19	<input type="text"/>					
국 명	터어키					
이기 내검 요원 기입 란	백	<input type="text"/>				
	십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백	<input type="text"/>				
	십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⑤ 주된 체류 목적

예) 「②취업」인 경우

5. 주된 체류목적	<input type="checkbox"/> ①영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취업
	<input type="checkbox"/> ③종교활동
	<input type="checkbox"/> ④교육·훈련
	<input type="checkbox"/> ⑤관광·사업차 일시방문
	<input type="checkbox"/> ⑥친지방문
	<input type="checkbox"/> ⑦가족동반
	<input type="checkbox"/> ⑧기타

⑥ 일하는 장소

예) 「①공장」인 경우

6. 일하는 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공장
	<input type="checkbox"/> ②음식점·판매업소
	<input type="checkbox"/> ③사무실
	<input type="checkbox"/> ④가정집
	<input type="checkbox"/> ⑤학교·학원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input type="checkbox"/> ⑦일하지 않음

⑦ 입국일자 ⑧ 출국 예정일자

* "0"이 있을 경우 "0"란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1994년 1월 10일인 경우

7. 입국일자	백	19		18		
	년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십		1	2	3		
		0	1	2	3	4
일		5	6	7	8	9

가구에 관한 사항

① 거처의 종류

예) 「아파트」인 경우

1. 거처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④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⑦ 호텔·여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input type="checkbox"/> ⑧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③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⑥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② 점유형태

예) 「전세」인 경우

2. 점유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자기집	<input type="checkbox"/> ④ 보증금 없는 월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전세	<input type="checkbox"/> ⑤ 무상
<input type="checkbox"/> ③ 보증금 있는 월세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③ 사용방수

예) 「2개」인 경우

3. 사용방수

<input type="checkbox"/> ① 1개	<input type="checkbox"/> ④ 4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2개	<input type="checkbox"/> ⑤ 5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③ 3개	

④ 사용 부엌시설 형태

예) 「수도시설만 있음」인 경우

4. 사용 부엌시설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수도시설·취사시설 모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취사시설만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수도시설만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 수도시설·취사시설 모두 없음

⑤ 사용 화장실(목욕시설) 형태

예) 「 화장실·욕실 모두 있음」인 경우

5. 사용 화장실(목욕시설)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화장실·욕실 모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욕실만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화장실만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 화장실·욕실 모두 없음

다. **빈집 OMR조사표 작성 요령**

난외사항

○ 시·도, 시·군·구, 읍·면·동명, 조사구번호는 표본조사표(OMR)와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한다.

○ 빈집조사표 매수

예) 총 5매중 3매인 경우

빈 집	0	백	조사표	0	백	0	1	2	3										
조사표	0	십	매 수 중	0	십	0	1	2	3	4	5	6	7	8	9				
총 매 수	5	일	일련번호	1	일	0	1	2	3	4	5	6	7	8	9				

○ 조사표당 빈집수

예) 5호인 경우

조사표당	0	십		1															
빈 집 수	5	일		0	1	2	3	4	5	6	7	8	9						

○ 빈집 일련번호

예) 7인 경우

빈 일련번호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 거처번호

* 표본조사표(OMR)와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한다.

예) 20인 경우

거 처 번호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빈집에 관한 사항

① 빈집(주택)의 종류

예) 「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10가구분)」인 경우

1. 빈집(주택)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① 보통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③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⑤ 다세대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다가구용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④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⑥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총가구분	<table border="1"> <tr> <td>심</td> <td>0</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 </tr> <tr> <td>일</td> <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checked=""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심	0	1	2	3	4	5	6	7	8	9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심	0	1	2	3	4	5	6	7	8	9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비어 있는 기간

예) 「 3개월 미만」인 경우

2. 비어있는 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3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6~12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3~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12개월 이상
------------	---

③ 빈집 사유

예) 「 매매·임대·이사」인 경우

3. 빈집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매매·임대·이사 <input type="checkbox"/> ④ 폐가 <input type="checkbox"/> ② 현재 수리중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③ 일시적(가끔)이용
---------	---

④ 빈집의 파손 정도

예) 「 파손 없음」인 경우

4. 빈집의 파손 정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파손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일부파손 <input type="checkbox"/> ③ 반이상파손
--------------	---

X. 조사표류 검토, 정리 및 제출

1. 일반조사표의 검토 및 정리

가. 일반조사표의 수량 확인

○ 조사가 완료되면 일반조사표의 수량을 확인한다.

* 가구당 조사표 매수가 5명까지 1매, 10명까지 2매, 15명까지 3매 등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조사구내의 가구원 5명 이하인 가구수+가구원 6명 이상인 가구수×2+가구원 11명 이상인 가구수×3=총 조사표 매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나. 일반조사표의 내용 확인

난외 사항

○ 주소

* 통·반, 번지까지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등인 경우 아파트(연립주택)명, 동, 호수가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

* 가구명부의 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와 대조 확인한다.

* 한 거처내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주인(대표)가구의 가구번호가 먼저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가구당 조사표 매수

* 1가구의 조사표 매수가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조사표마다 매수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한다(예 : 가구원수가 6명인 경우 2매중 1매, 2매중 2매)

○ 가구원수

* 조사가구에 살고 있는 가구원수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가구원이 6명 이상 되기 때문에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한 경우 가구원수가 첫째장에만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가구원에 관한 사항

① 성명

-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1995. 11. 1이후 출생자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기입되어 있으면 가구에 다시 확인한 후 정정 또는 삭제한다).

②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가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특히, 남편이 직장 등으로 외지에서 살고 있는 경우 부인이 가구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가 각 가구원별로 어느 하나에 ○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성별

- 남자, 여자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와 대조하여 잘못 기입되어 있으면 다시 확인하여 조사한다.
* 예 : 가구주와 그 배우자(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성은 서로 달라야 한다.

④ 나이

- 세는 나이, 띠, 생년월일과 양·음력 구분 이 기입 또는 ○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세는 나이=띠=생년월일』이 서로 일치되는가 확인
* 연령조건표에 의거 이들 응답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시 확인한다.

⑤ 종교

- 「①있음」에 ○표된 경우 어느 하나의 종교명에 ○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②없음」에 ○표된 경우에는 종교의 종류가 조사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⑥ 출생지

- 「③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인 경우 시·도명과 시·군·구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④북한 또는 외국」인 경우 북한의 도명과 시·군명 또는 국가명(외국일 경우)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⑦ 5년전 거주지

- 세는 나이로 6살 이상인 사람만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6살 이하인 어린이는 사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90년 11월 1일~'90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사람은 「1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에 ○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5년전 거주지가 「4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일 경우 시·도명과 시·군·구명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5북한 또는 외국」일 경우 『북한』 또는 『국가명』만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⑧ 교육정도

- 교육정도 또는 교육상태(졸업, 재학, 휴학, 중퇴)란 중에 누락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세는 나이와 학력관계는 다음 표를 비교하여 현재 조사된 사항이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교육 정도	졸업 연령	재학 연령	중퇴 연령
국민학교	12세 이상	7세 이상~13세 미만	7세 이상
중 학교	15세 이상	12세 이상~16세 미만	12세 이상
고등학교	18세 이상	15세 이상~19세 미만	15세 이상
전문대	20세 이상	18세 이상~30세 미만	18세 이상
대학(교)	22세 이상	18세 이상~30세 미만	18세 이상
대학원	24세 이상	22세 이상	22세 이상

⑨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 세는 나이로 13살 이상인 사람만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12살 이하인 사람은 사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1안함」에 ○표 된 경우에는 ⑩, ⑪번 항목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2통근함」이나 「3통학함」에 ○표 된 경우에는 통근·통학하는 장소와 「10이용 교통수단」 및 「11통근·통학 소요시간」도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통근·통학 장소가 「3다른 시·군·구」인 경우에 통근·통학 장소의 시·도명과 시·군·구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직장·학교, 건물 이름, 장소가 조사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부 등을 이용하여 이들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을 확인 기입한다.
- 2개 시·도를 넘어서 통근·통학하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와 같이 통근·통학 장소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가구에 확인한다.

⑩ 이용교통수단

-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하나 또는 2개에만 ○표 되었는지 확인한다.
- 도보로 통근·통학 하는 경우는 「4도보로만」에만 ○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도보로만」에 ○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이용교통수단에 ○표 되어 있으면 다시 확인한다.

⑪ 통근·통학 소요시간

○ 한 곳에만 ○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⑫ 경제활동상태

○ 세는 나이로 16살 이상인 사람만 조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16 살 미만(15살 이하)인 사람은 사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⑬ 산업

○ ⑫번 항목에서 「㉠~㉤」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직장·사업체 이름」과 「주된 사업 내용」이 조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⑫번 항목에서 「㉥~㉨」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하 「⑬~⑮」번 항목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직업 군인은 「직장·사업체 이름」에 ‘직업 군인’을 기입하고 ⑬번 항목 이후 「⑭,⑮」번 항목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⑭ 직업

○ ⑫번 항목의 「㉠~㉤」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부서 및 직책」과 「하고 있는 일의 종류」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⑮ 종사상의 지위

○ ⑫번 항목의 「㉠~㉤」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종사상의 지위」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⑯ 혼인상태

○ 세는 나이로 16살 이상인 사람만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세는 나이로 15살 이하인 사람은 사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란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한다.

* 예 :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의 배우자」이면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에 ○표 되어 있어야 한다.

가구에 관한 사항

○ 모든 가구에 대해서 조사되어야 하므로 조사가 누락된 가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첫째장에만 가구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고 둘째장 이

후에는 사선(\)이 그어졌는지 확인한다.

- 「②가구구분」에서 「②집단가구」에 해당되면 가구에 관한 사항 「③~⑦」번 항목에 사선(\)이 그어졌는지 확인한다.

주택에 관한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 「①거처의 종류」 항목에서 주택(「①~⑤」)에 해당되고 「②가구 구분」항목에서 「①주인(대표)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만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첫째장에만 기입되고 둘째장 이후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2. OMR조사표 검토 및 정리

가. 조사표의 수량 확인

- 빈집과 외국인 조사표를 제외하여 OMR조사표가 일반조사표 매수의 2배가 되는지 확인한다.

나. 조사표 이기내용 확인

난외 사항

-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 가구원수가 누락된 조사표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누락된 조사표가 있으면 일반조사표를 찾아 이기한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일 경우 OMR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매장마다 이기되어야 한다(가구원 수는 첫째장에만 기입).

조사항목에 관한 사항

- ① 성명 ②가구주와의 관계 ③성별 ④나이 ⑤종교 ⑥출생지 ⑦5년전거주지 ⑧교육정도
- ⑨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⑩이용교통수단 ⑪통근·통학 소요시간 ⑫경제활동상태
- ⑬산업 ⑭직업 ⑮종사상의 지위 ⑯혼인상태 및 가구·주택에 관한 사항 중 이기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첫째장에만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둘째장 이후에는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공백으로 둬).

3. 조사표류 검토·정리 및 제출

검토·정리

○ 가구명부와 조사표 대조 보완 및 편철

* 준비조사시 작성한 가구명부는 본조사가 완료된 후 일반조사표와 대조 보완하고 조사기간 중 전출, 누락 등에 의하여 가구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여 3부를 작성한다.

○ 조사구요도 수정 보완 및 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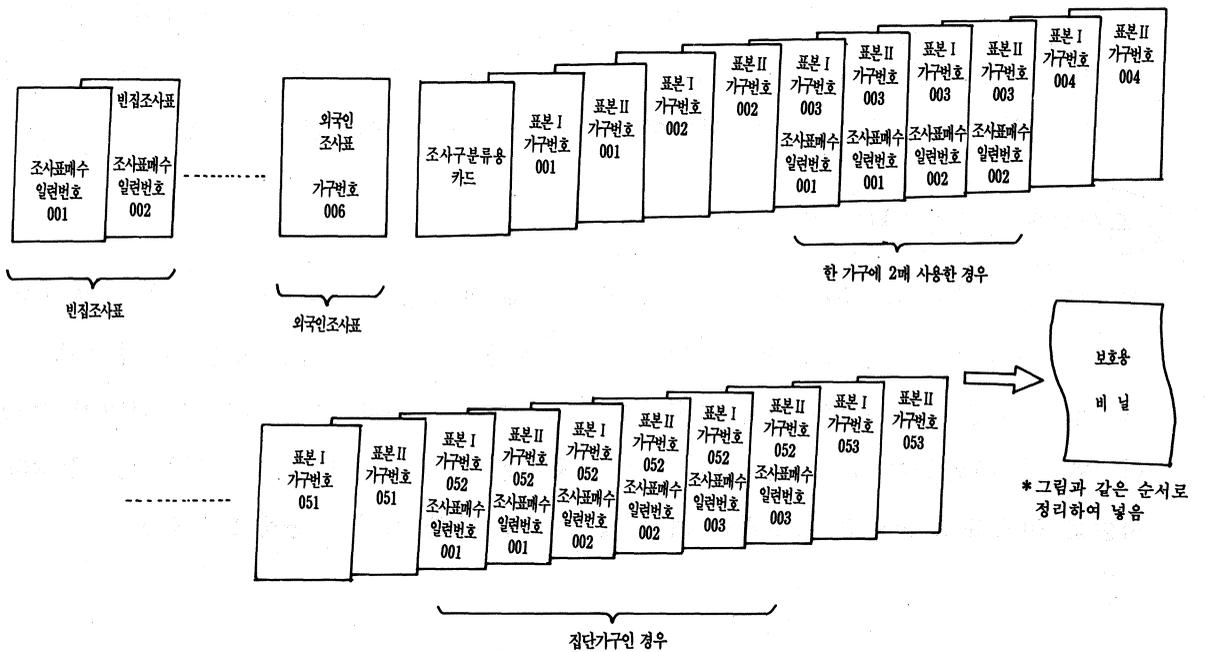
* 준비조사시 작성한 요도는 본조사 완료후 요도상의 변동사항(거처의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하여 2부를 작성한다.

○ 일반조사표 편철

* 일반조사표는 조사구별로 가구번호순으로 편철하며 마모,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 빈집과 외국인 조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빈집 조사표(조사표 매수 일련번호순), 외국인 조사표(가구번호순), 표본조사표(가구번호순) 순으로 정리한 후 그 위에 가구명부, 조사구요도를 올려 놓고 조사구별로 편철한다.

OMR 조사표 정렬요령



○ OMR 조사표 정리

- * 조사원은 일반조사표를 토대로 OMR 표본조사표 I 과 표본조사표 II를 함께 사용하여 OMR조사표에 이기하고, 이기 작업이 끝나면 조사구 단위로 보호용 비닐에 넣어 읍·면·동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 조사구마다 조사구 분류용카드 1매를 작성하여 OMR표본조사표 맨위에 정리하고, 표본조사표는 가구번호순으로 정리하되 표본조사표 I · II,…… I · II 순으로 정리한다.
- * 빈집과 외국인 조사표가 있는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OMR 빈집 조사표(조사표 매수 일련번호순), OMR 외국인 조사표(가구번호순), 조사구 분류용카드, OMR 표본조사표(가구번호순) 순으로 정리하여 조사구 단위별로 보호용 비닐에 넣어 읍·면·동 지도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 조사구마다 조사구 분류용카드 1매를 작성하여 OMR표본조사표 맨위에 정리한다.
- ♣ 조사구마다 가구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 1가구에 2매 이상 조사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사표매수 일련번호순으로 표본조사표 I · 표본조사표 II, 표본조사표 I · 표본조사표 II 순으로 정리한다.
- ♣ 담당 조사구내에 외국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하여 작성한 후 OMR조사표를 요청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 ♣ 담당 조사구내에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빈집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 작성한 후 OMR 조사표를 요청하여 이기하여야 한다(읍·면·동 사무소 지도 공무원이 관리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 *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도 OMR 표본조사표 I 과 표본조사표 II를 함께 사용하며 OMR 조사표 정리방법은 표본조사구와 동일하게 한다.

조사표류 제출

- 조사표 내용 검토가 끝나면 지도원과 읍·면·동 지도공무원의 최종 점검을 받아 보완한 후 '9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조사표류를 읍·면·동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일반조사표(표본, 외국인, 빈집)
- * OMR 조사표(표본 I, 표본 II, 외국인, 빈집)
- * 가구명부(3부)
- * 조사구요도(2부)
- * 조사요원증



승 인 번 호
제 ○ ○ ○ ○ ○ 호

정부에서는 통계법 제3조에 의거 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통계조사만 “정부승인 통계마크”를 표시토록 하였으니 이 마크가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성실한 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응답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995 인구주택 총조사

가 구 명 부

(전수·표본)

이 조사항목의 조사표 매수는 한국인 가구수가 36가구, 6인이상 가구수가 6가구가므로, 한국인 조사표는 42매가 된다.
외국인 가구와 빈집이 각각 1개씩 있으므로, 조사표 수도 각각 1매씩 된다.

① 도	서울	② 시·군	강남	③ 읍·면	역삼1	조사구 번호	007	조사표 매 수	가구명부매수	조사원	강 은 진
								일 반 조 사 표	매 중	지 도 원	김 남 수
								한국인 외국인 빈 집	매	지 도 공 무 원	이 영 보
								한국인 외국인 빈 집			
								42	1	42	1
								OMR조사표			

① 거 처 번 호	② 가 구 일련번호	③ 주 소 (동·리·동, 반, 번지, 아파트 등호)	④ 가 구 주 또는 대표자 성명	⑤ 가 구 원 수		⑥ 가 구 의 종 류		⑦ 거 처 의 종 류			⑧ 빈 집	⑨ 농 · 어 가 농 가 어 가	⑩ 비 고		
				남	여	일 반 가 구	집 단 가 구	외 국 인 가 구	주 아 파트	연 립 주 택				다 세 대 주 택	비 건 물 내 주 택
1	1	58번지 10동 1반	장경환	4	2	2	0	0	0	0	0				
2	2	59번지 10동 1반	조고현	7	3	4	0	0	0	0	0				
3	3	58번지 10동 1반	백희순	5	2	3	0	0	0	0	0				
4	4	59번지 10동 1반	문세환	6	4	2	0	0	0	0	0				
5	5	59번지 10동 1반	김두원	3	2	1	0	0	0	0	0				
6	6	59번지 10동 1반	한우권	4	1	3	0	0	0	0	0		95. 11. 2 전입		
7	7	60번지 10동 1반	최학준	2	1	1	0	0	0	0	0				
8	8	61번지 10동 1반	천창희	6	2	4	0	0	0	0	0				
9	9	62번지 10동 1반	정종만	3	2	1	0	0	0	0	0				
10	10	62번지 10동 1반	송기래	3	1	2	0	0	0	0	0				
11	11	62번지 10동 1반	김영배	4	2	2	0	0	0	0	0				
12	12	89번지 10동 2반	이교선	3	2	1	0	0	0	0	0		빈집일 경우라도 ①, ③, ⑦란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13	13	90번지 10동 2반	홍두원	5	2	3	0	0	0	0	0				
14	14	91번지 10동 2반	오광식	4	2	2	0	0	0	0	0				
15	15	92번지 10동 2반	홍복	4	1	3	0	0	0	0	0				
16	16	93번지 10동 2반	조유학	3	2	1	0	0	0	0	0				
17	17	94번지 10동 2반	양재진	5	2	3	0	0	0	0	0				
18	18	95번지 10동 2반	심진호	3	2	1	0	0	0	0	0				
19	19	99번지 10동 2반	안병수	2	1	1	0	0	0	0	0				
20	20	100번지 10동 2반	이삼수	4	2	2	0	0	0	0	0				
21	21	101번지 25호	고형수	3	2	1	0	0	0	0	0				
22	22	101번지 25호	강동용	3	1	2	0	0	0	0	0				
23	23	101번지 25호	김동계	6	3	3	0	0	0	0	0				
24	24	동아연립가동 101호 48번지 11동 2반	김동운	7	7	0	0	0	0	0	0				
25	25	" 102호 "	문경수	4	2	2	0	0	0	0	0				
26	26	" 201호 "	John.K.D	4	2	2	0	0	0	0	0				
27	27	" 202호 "	남영덕	3	1	2	0	0	0	0	0				
28	28	" 301호 "	신봉순	5	3	2	0	0	0	0	0				
29	29	" 302호 "	강영봉	6	3	3	0	0	0	0	0		아파트, 주택 등도 연립주택 등도 다세대 주소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0	30	동아연립가동 101호 48번지 11동 2반	임순방	5	3	2	0	0	0	0	0				
31	31	" 102호 "	진병호	4	1	3	0	0	0	0	0				
32	32	" 201호 "	류종호	5	2	3	0	0	0	0	0				
33	33	" 202호 "	정형수	3	2	1	0	0	0	0	0				
34	34	" 301호 "	강영수	2	1	1	0	0	0	0	0				
35	35	" 302호 "	차상제	3	1	2	0	0	0	0	0				
36	36	152번지 11동 1반	안철호	2	1	1	0	0	0	0	0		0		
37	37	56번지 10동 1반	김경기	4	2	2	0	0	0	0	0		0		
38	38	59번지 10동 1반	박만부	3	2	1	0	0	0	0	0		0		
소 계				148	116	32	35	1	1	18	0	12	0	1	1

전거주지에서 조사되었던 가구를 물어, 조사 전입 여부를 기재하고 조사한다.
이때, 동읍면 사무소 등에 제출한 수장·보관 등일(누락, 전출도 동일).

「①거처번호」와 「⑦거처의 종류」는 주가구만 기입하고 동거가구는 「①거처번호」의 제1큰 숫자와 「⑦거처의 종류」란 중 합계와는 일치하여야 한다.

「②가구일련번호」란의 마지막 가구의 번호와 「⑥가구의 합계」란의 명부에서는 일치하여야 한다. 「②가구일련번호」의 마지막 번호 38에서 전출가구(6번가구)를 뺀 37가구가 된다.



19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반	101번지25호
서울	강남	여신인동	10동	3반	아파트 동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조사표매수	가구원 수
008 /	19	23	총 2 매중 / 매	6 명



비밀의 보호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준수되도록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이 조사는 11월 1일 0시 현재,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 데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 0시 이후에 출생한 아이나 11월 1일 0시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되어야 할 사람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사,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
- 예비군출련 또는 방위근무 중인 사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교도소)의 미결수
- 구직·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떠난지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은 가족
- 숙식을 같이 하는 가정부와 하숙인

조사되어서는 안 될 사람

- 군(전투경찰, 의무경찰 포함)에 입대한 가족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외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주말에 잠시 들르러 오는 가족
-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그 가족
- 학교나 직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특수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 숙식을 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가구로 조사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2	3	4	5
1 성명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 가구주부터 기입하며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 사표를 추가합니다.	2 장진선	3 김인구	4 김○○	5 이간난
2 가구주와의 관계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란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당 번 호에 ○표 합니다.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가구주의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7 손자녀·그 배우자 8 증손자녀·그 배우자 9 조부모 10 형제자매·그 배우자 11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 기타 친인척 13 기타 동거인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가구주의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7 손자녀·그 배우자 8 증손자녀·그 배우자 9 조부모 10 형제자매·그 배우자 11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 기타 친인척 13 기타 동거인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가구주의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7 손자녀·그 배우자 8 증손자녀·그 배우자 9 조부모 10 형제자매·그 배우자 11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 기타 친인척 13 기타 동거인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가구주의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7 손자녀·그 배우자 8 증손자녀·그 배우자 9 조부모 10 형제자매·그 배우자 11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 기타 친인척 13 기타 동거인
3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자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자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자
4 나이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리고 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언제입니까? 35 (소 띠) 살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력 1961년 7월 19일 1964년 4월 20일	32 (용 띠) 살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력 1964년 4월 20일	6 (말 띠) 살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력 1990년 11월 2일	/ (돼지 띠) 살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력 1995년 10월 28일	62 (개 띠) 살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력 1934년 5월 23일
5 종교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불교 2 개신교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원불교 6 천도교 7 대종교 8 대순진리회 9 그밖의 종교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불교 2 개신교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원불교 6 천도교 7 대종교 8 대순진리회 9 그밖의 종교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불교 2 개신교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원불교 6 천도교 7 대종교 8 대순진리회 9 그밖의 종교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불교 2 개신교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원불교 6 천도교 7 대종교 8 대순진리회 9 그밖의 종교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불교 2 개신교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원불교 6 천도교 7 대종교 8 대순진리회 9 그밖의 종교
6 출생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부한일 경우에는 당시의 행정구역명을,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input type="checkbox"/>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 (국) ④군구	<input type="checkbox"/>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input type="checkbox"/>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 (국) ④군구	<input type="checkbox"/>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input type="checkbox"/>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 (국) ④군구	<input type="checkbox"/>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input type="checkbox"/>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 (국) ④군구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모두 기입합니다 (뒷면으로 계속)

		1	2	3	4	5
6살 (세는 나이) 부터	⑦ 5년전 거주지	1990년 11월 1일(5년전)에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부산 특별광역시(국) 시군구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광주 특별광역시(국) 시군구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국) 시군구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충북 특별광역시(국) 시군구
	⑧ 교육정도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교육으로 간주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은 정규교육으로 인정합니다.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13살 (세는 나이) 부터	⑨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평소 직장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직장·학교 이름이나 인근의 널리 알려진 건물 이름 또는 특징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① 안함 → ⑫ 번부터 기입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서울 특별광역시(국) 영등포 시군구	① 안함 → ⑫ 번부터 기입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서울 특별광역시(국) 중 시군구	① 안함 → ⑫ 번부터 기입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특별광역시(국) 시군구	① 안함 → ⑫ 번부터 기입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특별광역시(국) 시군구
	⑩ 이용교통수단	평소 택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수단 2개에만 ○표 합니다. • 「⑨ 도보로만」은 걸어서만 통근·통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시내버스 ⑥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타(트럭등)	① 시내버스 ⑥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타(트럭등)	① 시내버스 ⑥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타(트럭등)	① 시내버스 ⑥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타(트럭등)
	⑪ 통근·통학 소요시간	평소 택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기입 예

	<기입 예 1>	<기입 예 2>	<기입 예 3>	<기입 예 4>	<기입 예 5>
⑬ 산업	직장·사업체 이름 서광 산업사 주된 사업 내용 자동차용 브레이크 생산	직장·사업체 이름 인구건설(주) 주된 사업 내용 아파트 건축	직장·사업체 이름 우리논에서 주된 사업 내용 벼 농사	직장·사업체 이름 상아 전산학원 주된 사업 내용 개인용컴퓨터교육	직장·사업체 이름 라라슈퍼마켓 주된 사업 내용 원용잡화류 소매
⑭ 직업	부서 및 직책 생산부 종업원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생산제품 검사	부서 및 직책 설계부 대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건축 설계	부서 및 직책 자영농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벼베기 및 탈곡	부서 및 직책 원장 겸 강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경영 및 컴퓨터 강의	부서 및 직책 가족 판매 도우미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잡화 판매 및 돈반음
⑮ 종의 사지 상위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계속)

		1	2	3	4	5	
16 살 (세 는 나 이) 부 터 기 입 합 니 다	⑫ 경제활동상태	<p>지난 1개월('95.10.1~10.31)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p> <p>• 일이란 상점의 일, 농사, 가내부업 등을 돕거나, 시간제 일,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모든 일)</p> <p>• 가사(집안일)란 밥짓기, 세탁, 육아 등을 말하며 이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한 경우는 「2」, 오직 집안일만 한 경우는 「7」에 해당됩니다.</p> <p>• 통학은 정규학교는 물론 입시학원, 이·미용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원 등에 무보수로 다니는 것도 포함됩니다.</p> <p>• 「6~9」에 해당되면 ⑬부터 ⑮까지 사선「\」을 긋고 ⑯혼인상태부터 기입합니다.</p>	<p>① 주로 일하였음</p> <p>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④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p>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p> <p>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p> <p>⑦ 가사만을 돌보았음</p> <p>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p> <p>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p>	<p>① 주로 일하였음</p> <p>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④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p>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p> <p>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p> <p>⑦ 가사만을 돌보았음</p> <p>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p> <p>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p>	\	\	<p>① 주로 일하였음</p> <p>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④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p>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p>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p> <p>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p> <p>⑦ 가사만을 돌보았음</p> <p>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p> <p>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p>
	⑬ 산업	<p>일을 한 직장이나 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p> <p>•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 장소를 기입합니다. •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p>	<p>직장·사업체 이름 서울전자공업(주)</p> <p>주된 사업 내용 카세트 녹음기 제조</p>	<p>직장·사업체 이름 강남생명보험(주) 남대문 지역 명동 영영소</p> <p>주된 사업 내용 보험 모집 및 관리</p>	\	\	<p>직장·사업체 이름</p> <p>주된 사업 내용</p>
	⑭ 직업	<p>일하는 곳에서의 부서 및 직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하고 있)습니까?</p> <p>•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p>	<p>부서 및 직책 총무부 인사과장</p> <p>하고 있는 일의 종류 직원 복무관리</p>	<p>부서 및 직책 영업주임</p> <p>하고 있는 일의 종류 고객을 상대로 보험 설명 및 가입 컨설팅</p>	\	\	<p>부서 및 직책</p> <p>하고 있는 일의 종류</p>
	⑮ 종사상의 지위	<p>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였습니까?</p> <p>•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해당 번호에 ○표 합니다.</p>	<p>① 임금·봉급 근로자</p> <p>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④ 무급 가족 종사자</p>	<p>① 임금·봉급 근로자</p> <p>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④ 무급 가족 종사자</p>	\	\	<p>① 임금·봉급 근로자</p> <p>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④ 무급 가족 종사자</p>
	⑯ 혼인상태	<p>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p> <p>•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상태에 ○표 합니다.</p>	<p>① 미 혼</p> <p>② 배우자 있음</p> <p>③ 사 별</p> <p>④ 이 혼</p>	<p>① 미 혼</p> <p>② 배우자 있음</p> <p>③ 사 별</p> <p>④ 이 혼</p>	\	\	<p>① 미 혼</p> <p>② 배우자 있음</p> <p>③ 사 별</p> <p>④ 이 혼</p>

↓ (뒷면으로 계속)



가구에 관한 사항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① 거처의 종류

택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공장·점포·여관 등)
- ⑥ 오피스텔
- ⑦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⑧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 ⑨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② 가구 구분

택은 이 집을 대표하는 가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가구입니까?

- 주인가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집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가 대표가구입니다.
- 집단가구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6인 이상 살고 있는 가구와 고아원·양로원 등 특수 사회시설이 해당됩니다.

- ① 주인(대표)가구
- ② 주인(대표)가구가 아님
- ① 일반가구
- ② 집단가구

* ②집단가구에 해당되면 가구에 관한 사항 ③~⑦번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③ 점유형태 ④ 임차료

이 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 사글세인 경우에는 계약 개월수와 한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① 주거전용	① 자기집	전세·보증금			
	② 전세(월세 없음)	억	천만	백만	십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0	4	0	0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월세(사글세)			
	⑤ 사글세(____개월)				
	⑥ 무 상				
② 영업전용					

⑤ 사용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침실(서재 포함),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 등을 포함하여 모두 몇 개입니까?

- 벽 또는 문으로 각각 차단된 경우만 별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서로 턱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벽 또는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2개로 봅니다.

4 개

⑥ 주거시설 형태

택은 다음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6-1. 부엌	① 입 식	① 단독 사용	
	② 재래식		② 공동 사용
	③ 없 음		
6-2. 화장실	① 수세식	① 단독 사용	
	② 재래식		② 공동 사용
	③ 공중화장실		
6-3. 목욕시설	① 온수시설	① 단독 사용	
	② 비온수시설		② 공동 사용
	③ 없 음		

⑦ 거주기간

이 집에 살고 있는 기간(가장 오래 살고 있는 가구원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2년 미만
- ③ 2년~3년 미만
- ④ 3년~5년 미만
- ⑤ 5년~10년 미만
- ⑥ 10년~15년 미만
- ⑦ 15년~20년 미만
- ⑧ 20년~25년 미만
- ⑨ 25년 이상



주택에 관한 사항

위의 가구에 관한 사항 ①번 항목에서 ①~⑤ 에 해당되면서 ②번 항목의 ① 주인(대표)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만 기입합니다.(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구가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① 연건평

이 주택의 연건평은 얼마입니까?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 부분만 기입합니다.

26 평 또는 m²

② 대지면적

이 주택의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독주택만 기입합니다.)

- 담장 안의 모든 면적을 포함하되,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45 평 또는 m²

③ 층 방 수

이 주택에는 침실(서재 포함),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 등을 포함하여 방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 사용하고 있지 않는 침실(서재 포함)과 거실(대청마루), 식당도 포함합니다.
- 거실과 식당이 서로 턱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벽 또는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2개로 봅니다.

4 개

④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증축·개축 면적이 주택 총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시기에 ○표 합니다.

- ① 1995년
- ② 1994년
- ③ 1993년
- ④ 1992년
- ⑤ 1991년
- ⑥ 1990년
- ⑦ 1989년~1980년
- ⑧ 1979년~1970년
- ⑨ 1969년~1960년
- ⑩ 1959년~1950년
- ⑪ 1949년 이전

⑤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 있습니까?

- 독립된 출입구에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됩니다.

5-1. 부엌 수 : 1 개

5-2. 화장실 수 : 1 개

5-3. 독립된 출입구 수 : 1 개



샘돌이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택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지역번호: 02
장진실	201-0001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계청장



19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등재장은 사선()



비밀의 보호

이 조사표에 조사원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준수되도록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반	101번지 25호
서울	강남	역삼동	10동 3반	아파트 동 호

조사구 번호	저치 번호	가구 번호	가구당조사표매수	가구원 수
008-1	19	23	총 2매중 2매	명

*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이 조사는 11월 1일 0시 현재,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 0시 이후에 출생한 아이나 11월 1일 0시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되어야 할 사람	조사되어서는 안 될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사,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사람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 예비군훈련 또는 방위근무 중인 사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교도소)의 미결수 구직·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떠난지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은 가족 숙식을 같이 하는 가정부와 하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전투경찰, 의무경찰 포함)에 입대한 가족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외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주말에 잠시 들르러 오는 가족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그 가족 학교나 직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특수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숙식을 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가구로 조사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① 성명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 가구주부터 기입하며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합니다.	김 성 실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란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당 번호에 ○표 합니다.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동거인
③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④ 나이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26 살 (개 띠)	살 (띠)	살 (띠)	살 (띠)
그리고 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언제입니까?		① 양력 ② 음력 1970년 8월 30일	① 양력 ② 음력 년 월 일			
⑤ 종교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있다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① 불교 ⑤ 원불교 ② 개신교 ⑥ 천도교 (기독교) ⑦ 대종교 ③ 천주교 ⑧ 대순진리회 ④ 유교 ⑨ 그밖의 종교	① 불교 ⑤ 원불교 ② 개신교 ⑥ 천도교 (기독교) ⑦ 대종교 ③ 천주교 ⑧ 대순진리회 ④ 유교 ⑨ 그밖의 종교	① 불교 ⑤ 원불교 ② 개신교 ⑥ 천도교 (기독교) ⑦ 대종교 ③ 천주교 ⑧ 대순진리회 ④ 유교 ⑨ 그밖의 종교	① 불교 ⑤ 원불교 ② 개신교 ⑥ 천도교 (기독교) ⑦ 대종교 ③ 천주교 ⑧ 대순진리회 ④ 유교 ⑨ 그밖의 종교	① 불교 ⑤ 원불교 ② 개신교 ⑥ 천도교 (기독교) ⑦ 대종교 ③ 천주교 ⑧ 대순진리회 ④ 유교 ⑨ 그밖의 종교
⑥ 출생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행정구역명, 북한일 경우에는 당시의 행정구역명,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전남 (특별·광역시·도) 4주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도 (국)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도 (국)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도 (국) 시·군·구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도 (국) 시·군·구

통 계 청

↓ (뒷면으로 계속)

		1	2	3	4	5
6살 (세는 나이) 부터	⑦ 5년전 거주지	1990년 11월 1일(5년전)에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도 (국) 시·군·구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도 (국) 시·군·구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도 (국) 시·군·구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특별·광역시·도 (국) 시·군·구
	⑧ 교육정도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교육으로 간주합니다. • 점정고시 합격은 정규교육으로 인정합니다.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13살 (세는 나이) 부터	⑨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평소 직장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직장·학교 이름이나 인근의 널리 알려진 건물 이름 또는 특징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① 안함 → ⑫ 번부터 기입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서울 특별·광역시·도 관악 시·군·구	① 안함 → ⑫ 번부터 기입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① 안함 → ⑫ 번부터 기입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① 안함 → ⑫ 번부터 기입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⑩ 이용 교통수단	평소 택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할 때까지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수단 2개에만 ○표 합니다. • 「9 도보로만」은 걸어서만 통근·통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시내버스 ⑥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타(트럭등)	① 시내버스 ⑥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타(트럭등)	① 시내버스 ⑥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타(트럭등)	① 시내버스 ⑥ 승용차 ② 좌석버스 ⑦ 택시 ③ 기타버스 ⑧ 자전거 ④ 전철·지하철 ⑨ 도보로만 ⑤ 기차 ⑩ 기타(트럭등)
	⑪ 통근·통학 소요시간	평소 택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①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③ 30분~45분 미만 ④ 45분~60분 미만 ⑤ 60분~90분 미만 ⑥ 90분~120분 미만 ⑦ 120분 이상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기입 예

	<기입 예 1>	<기입 예 2>	<기입 예 3>	<기입 예 4>	<기입 예 5>
⑬ 산업	직장·사업체 이름 서광 산업사 주된 사업 내용 자동차용 브레이크생산	직장·사업체 이름 인주건설(주) 주된 사업 내용 아파트 건축	직장·사업체 이름 우리논에서 주된 사업 내용 벼 농사	직장·사업체 이름 상아 전산학원 주된 사업 내용 개인용컴퓨터교육	직장·사업체 이름 라라슈퍼마켓 주된 사업 내용 일용잡화류 소매
⑭ 직업	부서 및 직책 생산부 종업원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생산 제품 검사	부서 및 직책 설계부 대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건축 설계	부서 및 직책 자영농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벼베기 및 탈곡	부서 및 직책 원장 겸 강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경영 및 컴퓨터 강의	부서 및 직책 가족 일을 도움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잡화 판매 및 손바름
⑮ 종의 사지 상위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① 임금·봉급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무급 가족 종사자

16 살 (세는 나이) 부터 기입합니다.

12 경제활동상태

13 산업

14 직업

15 종사상의지위

16 혼인상태

지난 1개월('95.10.1~10.31)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일이란
상점의 일, 농사, 가내부업 등을 돕거나, 시간제 일,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모든 일)
- 가사(집안일)란
밥짓기, 세탁, 육아 등을 말하며 이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한 경우는 「2」, 오직 집안일만 한 경우는 「7」에 해당됩니다.
- 통학은
정규학교는 물론 입시학원, 이·미용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원 등에 무보수로 다니는 것도 포함됩니다.
- 「6~9」에 해당되면 13부터 15까지 사선「\」을 긋고 16 혼인상태부터 기입합니다.

일을 한 직장이나 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 장소를 기입합니다.
-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일하는 곳에서의 부서 및 직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하고 있)습니까?

-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였습니까?

-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해당 번호에 ○표 합니다.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상태에 ○표 합니다.

- 1 주로 일하였음
- 2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3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4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일을 하지 않은 사람]
- 5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 6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 7 가사만을 돌보았음
- 8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 9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 내용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1 임금·봉급 근로자
-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4 무급 가족 종사자

- 1 미 혼
- 2 배우자 있음
- 3 사 별
- 4 이 혼

- 1 주로 일하였음
- 2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3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4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일을 하지 않은 사람]
- 5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 6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 7 가사만을 돌보았음
- 8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 9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 내용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1 임금·봉급 근로자
-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4 무급 가족 종사자

- 1 미 혼
- 2 배우자 있음
- 3 사 별
- 4 이 혼

- 1 주로 일하였음
- 2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3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4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일을 하지 않은 사람]
- 5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 6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 7 가사만을 돌보았음
- 8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 9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 내용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1 임금·봉급 근로자
-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4 무급 가족 종사자

- 1 미 혼
- 2 배우자 있음
- 3 사 별
- 4 이 혼

- 1 주로 일하였음
- 2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3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4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일을 하지 않은 사람]
- 5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 6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 7 가사만을 돌보았음
- 8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 9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 내용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1 임금·봉급 근로자
-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4 무급 가족 종사자

- 1 미 혼
- 2 배우자 있음
- 3 사 별
- 4 이 혼

- 1 주로 일하였음
- 2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3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4 다른 활동(종교·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 [일을 하지 않은 사람]
- 5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 6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 7 가사만을 돌보았음
- 8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 9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 내용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1 임금·봉급 근로자
-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4 무급 가족 종사자

- 1 미 혼
- 2 배우자 있음
- 3 사 별
- 4 이 혼

↓ (뒷면으로 계속)



가구에 관한 사항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둘째장은 기입하지 않음.

① 거처의 종류

택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공장·점포·여관 등)
- ⑥ 오피스텔
- ⑦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⑧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 ⑨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② 가구 구분

택은 이 집을 대표하는 가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가구입니까?

- 주인가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집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가 대표가구입니다.
- 집단가구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6인 이상 살고 있는 가구와 고아원·양로원 등 특수 사회시설이 해당됩니다.

- ① 주인(대표)가구
- ② 주인(대표)가구가 아님
- ① 일반가구
- ② 집단가구

* ②집단가구에 해당되면 가구에 관한 사항 ③~⑦번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③ 점유형태

④ 임차료

이 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 사글세인 경우에는 계약 개월수와 한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① 주거전용	① 자기집	전세·보증금							
	② 전세(월세 없음)	억	천만	백만	십만				
② 영업겸용	③ 보증금 있는 월세	월세(사글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천만	백만	십만	만
	⑤ 사글세(개월)								
	⑥ 무 상								

⑤ 사용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침실(서재 포함),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 등을 포함하여 모두 몇 개입니까?

- 벽 또는 문으로 각각 차단된 경우만 별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서로 벽에 있는 경우에는 1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벽 또는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2개로 봅니다.

_____ 개

⑥ 주거시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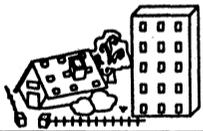
택은 다음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6-1. 부엌	① 입 식	① 단독 사용	
	② 재래식		② 공동 사용
	③ 없 음		
6-2. 화 장 실	① 수세식	① 단독 사용	
	② 재래식		② 공동 사용
	③ 공중화장실		
6-3. 목욕시설	① 온수시설	① 단독 사용	
	② 비온수시설		② 공동 사용
	③ 없 음		

⑦ 거주기간

이 집에 살고 있는 기간(가장 오래 살고 있는 가구원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2년 미만
- ③ 2년~3년 미만
- ④ 3년~5년 미만
- ⑤ 5년~10년 미만
- ⑥ 10년~15년 미만
- ⑦ 15년~20년 미만
- ⑧ 20년~25년 미만
- ⑨ 25년 이상



주택에 관한 사항

위의 가구에 관한 사항 ①번 항목에서 ①~⑤에 해당되면서 ②번 항목의 ① 주인(대표)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만 기입합니다.(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구가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둘째장은 기입하지 않음.

① 연건평

이 주택의 연건평은 얼마입니까?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 부분만 기입합니다.

_____ 평 또는 _____ m²

② 대지면적

이 주택의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독주택만 기입합니다.)

- 담장 안의 모든 면적을 포함하되,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_____ 평 또는 _____ m²

③ 총 방 수

이 주택에는 침실(서재 포함),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 등을 포함하여 방이 모두 몇 개입니까?

- 사용하고 있지 않는 침실(서재 포함)과 거실(대청마루), 식당도 포함합니다.
- 거실과 식당이 서로 벽에 있는 경우에는 1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벽 또는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2개로 봅니다.

_____ 개

④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증축·개축 면적이 주택 총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시기에 ○표 합니다.

- ① 1995년
- ② 1994년
- ③ 1993년
- ④ 1992년
- ⑤ 1991년
- ⑥ 1990년
- ⑦ 1989년~1980년
- ⑧ 1979년~1970년
- ⑨ 1969년~1960년
- ⑩ 1959년~1950년
- ⑪ 1949년 이전

⑤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 있습니까?

- 독립된 출입구에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됩니다.

- 5-1. 부엌 수 : _____ 개
- 5-2. 화 장 실 수 : _____ 개
- 5-3. 독립된 출입구 수 : _____ 개



샘들이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택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지역번호: 02
장진실	201 - 0001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계청장



·흑색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마크란내에 옆으로 굽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절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OMR 조사표 작성 요령

OMR조사표 기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서 각란의 기입내용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인시 101번지 25호 아파트	조사구번호	0811	조사구종류	03
거처번호	019	가구번호	023	가구원수	06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02	가구당조사표 매수	00	가구당 조사표 일련번호	01

·「주소」「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가구당 조사표 매수」「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는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 매장마다 작성한다.
 「예」조사표가 3매 사용된 경우

—첫째장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0백 0십 3일	가구당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0백 0십 1일
-------------	----------	-----------------	----------

—둘째장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0백 0십 3일	가구당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0백 0십 2일
-------------	----------	-----------------	----------

—셋째장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0백 0십 3일	가구당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0백 0십 3일
-------------	----------	-----------------	----------

·「가구원수」는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에도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부터는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성명」은 가구원 일련번호순으로 가구주부터 작성한다. 이때 가구원 일련번호 중 중간번호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예」

1.성명	김통계	장진실	김인구	김○○
------	-----	-----	-----	-----

·「가구주와의 관계」「성별」은 가구원마다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해당란에 마크한다.

·「나이」는 「세는 나이」「띠」「양·음력구분」「생년월일」란의 십단위의 「0」을 반드시 마크한다.

「예」세는 나이 8살

4.나이	세는 나이	백	0	1	2	3	4
		십	0	1	2	3	4
		일	0	1	2	3	4

·「종교」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1.성명	김통계	장진실	김인구	김○○	이간남
2.가구주와의 관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3.성별	1.남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여자 <input type="checkbox"/>	1.남자 <input type="checkbox"/> 2.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남자 <input type="checkbox"/> 2.여자 <input type="checkbox"/>	1.남자 <input type="checkbox"/> 2.여자 <input type="checkbox"/>	1.남자 <input type="checkbox"/> 2.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4.나이	세는 나이	백 0 1 2 3 4 십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백 0 1 2 3 4 십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백 0 1 2 3 4 십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백 0 1 2 3 4 십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띠	귀 소 범 토끼 용 별 말 양 천마 닭	귀 소 범 토끼 용 별 말 양 천마 닭	귀 소 범 토끼 용 별 말 양 천마 닭	귀 소 범 토끼 용 별 말 양 천마 닭	귀 소 범 토끼 용 별 말 양 천마 닭
양·음력구분	1.양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음력 <input type="checkbox"/>	1.양력 <input type="checkbox"/> 2.음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양력 <input type="checkbox"/> 2.음력 <input type="checkbox"/>	1.양력 <input type="checkbox"/> 2.음력 <input type="checkbox"/>	1.양력 <input type="checkbox"/> 2.음력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교	1.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없음 <input type="checkbox"/> ①불교 ⑤천불교 ⑨그밖의종교 ②개신교 ⑥천도교 ③천주교 ⑦대종교 ④유교 ⑧대승천리회	1. 있음 <input type="checkbox"/> 2.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불교 ⑤천불교 ⑨그밖의종교 ②개신교 ⑥천도교 ③천주교 ⑦대종교 ④유교 ⑧대승천리회	1. 있음 <input type="checkbox"/> 2. 없음 <input type="checkbox"/> ①불교 ⑤천불교 ⑨그밖의종교 ②개신교 ⑥천도교 ③천주교 ⑦대종교 ④유교 ⑧대승천리회	1. 있음 <input type="checkbox"/> 2. 없음 <input type="checkbox"/> ①불교 ⑤천불교 ⑨그밖의종교 ②개신교 ⑥천도교 ③천주교 ⑦대종교 ④유교 ⑧대승천리회	1. 있음 <input type="checkbox"/> 2. 없음 <input type="checkbox"/> ①불교 ⑤천불교 ⑨그밖의종교 ②개신교 ⑥천도교 ③천주교 ⑦대종교 ④유교 ⑧대승천리회

		1	2	3	4	5
6. 출생지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시군구	고양시	청주시	남동구		함경북도 나선시
7. 5년전 거주지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시군구	서구	광산구			청원군
8. 교육정도	①일반학교	<input type="checkbox"/>				
	②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9.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영등포구	중구			
10. 이용교통수단	①시내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화력버스	<input type="checkbox"/>				
11. 통근·통학소요시간	①1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15-3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출생지」가 「㉠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에 기입되어 있으면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시·도명에 해당되는 난에 마크하고 시군구란에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시·군·구 명칭을 그대로 기입한다(「5년전 거주지」는 ㉠ 일때에 해당됨).
* 하단의 이기내검요원 기입란은 공백으로 둬.

「교육정도」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에서 통근·통학 장소가 일반조사표에 「㉠ 다른 시·군·구」로 기입된 경우 해당되는 「시도」란에 마크하고, 시군구란에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시·군·구 명칭을 그대로 기입한다.
* 하단의 이기내검요원 기입란은 공백으로 둬.

「이용교통수단」과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이 기 내 검 요 원 기 입 란									
6. 출생지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7. 5년전 거주지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9. 통근·통학 장소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19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I

- 흑색 2B 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마크란내에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수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시	읍	리	101	번지	25	호	0	백	0	1	2	3
	서울	강남	역삼	10	동			0	십	0	1	2	3
	도	구	동					8	일	0	1	2	3
거 처 번 호	0	백	0	1	2	3	4	5	6	7	8	9	0
	9	십	0	1	2	3	4	5	6	7	8	9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가 구 당 조사 표 총 매 수	0	백	0	1	2	3	4	5	6	7	8	9	0
	2	십	0	1	2	3	4	5	6	7	8	9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조사구번호	0	백	0	1	2	3	4	5	6	7	8	9	0
	1	십	0	1	2	3	4	5	6	7	8	9	0
	8	일	0	1	2	3	4	5	6	7	8	9	0
조사구종류	0	백	0	1	2	3	4	5	6	7	8	9	0
	1	십	0	1	2	3	4	5	6	7	8	9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가구원수	0	백	0	1	2	3	4	5	6	7	8	9	0
	0	십	0	1	2	3	4	5	6	7	8	9	0
	6	일	0	1	2	3	4	5	6	7	8	9	0

• 「주소」「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가구당 조사표 매수」「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는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 매장마다 작성한다.
 “예” 조사표가 3매 사용된 경우

-첫째장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0	백	0	1	2	3	4	5	6	7	8	9	0
	3	십	0	1	2	3	4	5	6	7	8	9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둘째장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0	백	0	1	2	3	4	5	6	7	8	9	0
	3	십	0	1	2	3	4	5	6	7	8	9	0
	2	일	0	1	2	3	4	5	6	7	8	9	0

-셋째장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0	백	0	1	2	3	4	5	6	7	8	9	0
	3	십	0	1	2	3	4	5	6	7	8	9	0
	3	일	0	1	2	3	4	5	6	7	8	9	0

* 「가구당 조사표 매수」와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는 표본조사표 I 과 표본 조사표 II의 매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1.성 명	김통계	장진실	김인구	김○○	이간남
12.경제활동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료·연소장치결빙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료·연소장치결빙 등)	<input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료·연소장치결빙 등)	<input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료·연소장치결빙 등)	<input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품목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료·연소장치결빙 등)
13.산업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내용	서울전자공업(주) 카세트 녹음기 제조	강남생명보험(주) 생명보험		
14.직업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종류	총무부 인사과장 직위 부주관리	영업1주임 고객을 상대로 보험 판매 및 가입권유		
15.종사자의 지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16.혼인 상태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 「가구원수」는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 부터는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성명」은 표본조사표 I에 작성되어 있는대로 가구원 일련 번호순으로 이기한다.

• 「경제 활동 상태」는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산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직장·사업체 이름」과 「주된 사업내용」을 란에 그대로 이기한다.
 * 하단의 「통계청 기입란」은 통계청에서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직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부서 및 직책」과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란에 그대로 이기한다.

• 「종사자의 지위」, 「혼인상태」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통계청 기입란	13. 산업	1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0
		일	0	1	2	3	4	5	6	7	8	9	0
		백	0	1	2	3	4	5	6	7	8	9	0
		십	0	1	2	3	4	5	6	7	8	9	0
14. 직업	14. 직업	1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0
		일	0	1	2	3	4	5	6	7	8	9	0
		백	0	1	2	3	4	5	6	7	8	9	0
		십	0	1	2	3	4	5	6	7	8	9	0

가구에 관한 사항

1. 거처의 종류

①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⑥ 오피스텔
 ② 아파트 ⑦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③ 연립주택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④ 다세대주택 ⑨ 기타 (비닐하우스, 음악, 판잣집, 임시막사 등)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공장·점포·여관 등)

2. 가구 구분

① 주인(대표)가구 ① 일반가구
 ② 주인(대표)가구가 아님 ② 집단가구

3. 점유 형태

④ 임차료

① 주거전용 ① 자기집
 ② 영업업장용 ② 전세 (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⑤ 무상
 ⑥ 무상

전세	0	억	1	2	3	4	5	6	7	8	9	
	4	천만	0	1	2	3	4	5	6	7	8	9
보증금	0	백만	0	1	2	3	4	5	6	7	8	9
	0	십만	0	1	2	3	4	5	6	7	8	9
월세		천만	1	2	3	4	5	6	7	8	9	
		백만	0	1	2	3	4	5	6	7	8	9
(사글세)		십만	0	1	2	3	4	5	6	7	8	9
		만	0	1	2	3	4	5	6	7	8	9

5. 사용방수

04 개

십	1
일	0 1 2 3 4 5 6 7 8 9

6. 주거시설 형태

6-1. 부엌

① 입식 ① 단독 사용
 ② 조리식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6-2. 화장실

① 수세식 ① 단독 사용
 ② 조리식 ② 공동 사용
 ③ 공중화장실

6-3. 목욕시설

① 온수시설 ① 단독 사용
 ② 비온수시설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7.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⑧ 20년 - 25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⑨ 25년 이상
 ⑤ 5년 - 10년 미만

『가구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사항』은 한 가구에서 조사표가 2매 이상 사용된 경우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부터는 작성하지 않고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4. 「임차료」와 5. 「사용방수」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란에 먼저 기입하고 해당되는 난에 마크한다.

* '0'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택에 관한 사항

1. 연건평

026 평

백	1	2	3	4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2. 대지면적(단독주택만 기입)

045 평

백	1	2	3	4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3. 총방수

04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4. 건축년도

① 1985년 ⑦ 1989년 - 1990년
 ② 1984년 ⑧ 1979년 - 1970년
 ③ 1983년 ⑨ 1969년 - 1960년
 ④ 1982년 ⑩ 1959년 - 1950년
 ⑤ 1981년 ⑪ 1949년 이전
 ⑥ 1980년

5. 편익시설수

5-1. 부엌 수

01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5-2. 화장실 수

01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5-3. 독립된 출입구 수

01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의 주인(대표)가 (1. 「거처의 종류」)에서 ①~⑤에 해당되면서 2. 「가구구분」에서 ①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1. 「연건평」, 2. 「대지면적」, 3. 「총방수」, 5. 「편익시설수」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란에 먼저 기입하고 해당되는 난에 마크한다.

* '0'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9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I

- 흑색 2B 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마크란 내에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시 서울 도 서울	시 강남 구 강남	읍 역삼 동 역삼	리 10 동 3	번지 25 호 (아파트) 호	조사구번호 081	0 백 0 십 0 일 0	1 백 0 십 0 일 0	2 백 0 십 0 일 0	3 백 0 십 0 일 0	4 백 0 십 0 일 0	5 백 0 십 0 일 0	6 백 0 십 0 일 0	7 백 0 십 0 일 0	8 백 0 십 0 일 0	9 백 0 십 0 일 0
거 처 번 호	0 백 0 십 1 일 9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가 구 당 조사표 총 매 수	0 백 0 십 0 일 2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0 백 0 십 0 일 0			

1. 성 명		1 김 통계		2 장 전실		3 김 인구		4 김 00		5 이 간 난	
2. 가구주와의 관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구주 <input type="checkbox"/> ②가구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가구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3. 성 별		1. 남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여자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남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여자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나이		세는 나이 백 1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세는 나이 백 1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세는 나이 백 1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세는 나이 백 1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세는 나이 백 1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띠		쥐 소 범 토끼 용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뱀 말 양 전비 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돼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쥐 소 범 토끼 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뱀 말 양 전비 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돼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쥐 소 범 토끼 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뱀 말 양 전비 닭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돼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쥐 소 범 토끼 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뱀 말 양 전비 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돼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쥐 소 범 토끼 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뱀 말 양 전비 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돼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양·음력 1. 양력 2. 음력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양·음력 1. 양력 2. 음력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양·음력 1. 양력 2. 음력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양·음력 1. 양력 2. 음력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양·음력 1. 양력 2. 음력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5. 종교		1. 있음 2. 없음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2. 없음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2. 없음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2. 없음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2. 없음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1	2	3	4	5
6. 출생지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조사된 내용 그대로 이기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7. 5년전 거주지		시	시	시	시	시
조사된 내용 그대로 이기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8. 교육정도						
9.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조사된 내용 그대로 이기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10. 이용 교통수단						
11. 통근·통학 소요시간						

		이 기 내 검 요 원 기 입 란										기 입 하지 않음									
6. 출생지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7. 5년전 거주지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9. 통근·통학 장소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19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II

- 후색 2B 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할 때에는 와 같이 마크란내에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시 읍 리 101번지 25호		조사구번호	0	백	0	1	2	3				
	서울 강남구 역삼면 10동 (아파트) 3반 1동			0	십	0	1	2	3	4	5	6	7
거처번호	0	백	0	1	2	3	가구번호	0	백	0	1	2	3
	1	십	0	1	2	3		4	5	6	7	8	9
	9	일	0	1	2	3		4	5	6	7	8	9
가구당조사표 총매수	0	백	0	1	2	3	가구원수	0	백	0	1	2	3
	0	십	0	1	2	3		4	5	6	7	8	9
	2	일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1.성명	김동계	장진실	김인구	김OO	이간난
12.경제활동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input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input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input type="checkbox"/> ①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⑤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⑦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13.산업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내용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내용			
14.직업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종류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종류			
15.종사상의 지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무급 가족 종사자
16.혼인 상태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input type="checkbox"/> ①미혼 <input type="checkbox"/> ②배우자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사별 <input type="checkbox"/> ④이혼

통계청 기입란	13. 산	①	백	0	1	2	3	4	5	6	7	8	9
		①	십	0	1	2	3	4	5	6	7	8	9
		①	일	0	1	2	3	4	5	6	7	8	9
		②	백	0	1	2	3	4	5	6	7	8	9
		②	십	0	1	2	3	4	5	6	7	8	9
14. 직	업	③	백	0	1	2	3	4	5	6	7	8	9
		③	십	0	1	2	3	4	5	6	7	8	9
		③	일	0	1	2	3	4	5	6	7	8	9
		④	백	0	1	2	3	4	5	6	7	8	9
		④	십	0	1	2	3	4	5	6	7	8	9
		⑤	백	0	1	2	3	4	5	6	7	8	9
		⑤	십	0	1	2	3	4	5	6	7	8	9
		⑤	일	0	1	2	3	4	5	6	7	8	9
		⑤	백	0	1	2	3	4	5	6	7	8	9
		⑤	십	0	1	2	3	4	5	6	7	8	9

기입하지 않음.

통계청 기입란

가구에 관한 사항

1. 거처의 종류

- ①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⑥ 오피스텔
- ② 아파트 ⑦ 호텔·여관등 숙박업소의 객실
- ③ 연립주택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④ 다세대주택 ⑨ 기타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공장·점포·여관 등)

2. 가구 구분

- ① 주인(대표)가구 ① 일반가구
- ② 주인(대표)가구가 아님 ② 집단가구

3. 점유 형태 4. 임차료

- ① 주거전용 ① 자기집
- ② 영업겸용 ② 전세 (월세 없음)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⑤ 사글세
- ⑥ 무 상

전 세	억	1	2	3	4	5	6	7	8	9	
	천만	0	1	2	3	4	5	6	7	8	9
	백만	0	1	2	3	4	5	6	7	8	9
	십만	0	1	2	3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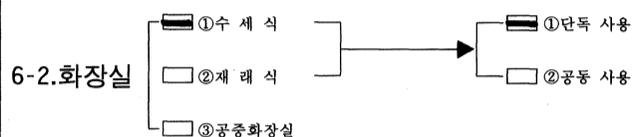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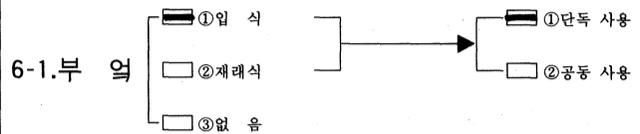
월 세 (사글세)	천만	1	2	3	4	5	6	7	8	9	
	백만	0	1	2	3	4	5	6	7	8	9
	십만	0	1	2	3	4	5	6	7	8	9
	만	0	1	2	3	4	5	6	7	8	9

5. 사용방수

04 개

십	1
일	0 1 2 3 4 5 6 7 8 9

6. 주거시설 형태



7. 거주기간

- ① 1년 미만 ⑥ 10년~15년 미만
- ② 1년~2년 미만 ⑦ 15년~20년 미만
- ③ 2년~3년 미만 ⑧ 20년~25년 미만
- ④ 3년~5년 미만 ⑨ 25년 이상
- ⑤ 5년~10년 미만

주택에 관한 사항

1. 연 건 평

026 평

백	1	2	3	4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2. 대 지 면 적 (단독주택만 기입)

045 평

백	1	2	3	4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3. 총 방 수

04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4. 건축년도

- ① 1995년 ⑦ 1989년~1980년
- ② 1994년 ⑧ 1979년~1970년
- ③ 1993년 ⑨ 1969년~1960년
- ④ 1992년 ⑩ 1959년~1950년
- ⑤ 1991년 ⑪ 1949년 이전
- ⑥ 1990년

5. 편의시설수

5-1. 부엌 수

01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5-2. 화장실 수

01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5-3. 독립된 출입구 수

01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19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I

등재장은 기입하지 않음.

- 흑색 2B 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할 때에는 와 같이 마크란내에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할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시 읍 리 101번지 25호		조사구번호		0 백 0 1 2 3	
서울 강남구 역삼면 10동 3반 (동) 아파트 호						0 1 2 3 4 5 6 7 8 9	
거 처 번 호		0 백 0 1 2 3		조사구종류		0 1 2 3 4 5 6 7 8 9	
1 9 일		0 1 2 3 4 5 6 7 8 9		1 일		0 1 2 3 4 5 6 7 8 9	
가 구 당 0 백		0 1 2 3		가 구 번 호		0 1 2 3 4 5 6 7 8 9	
조 사 표 0 십		0 1 2 3 4 5 6 7 8 9		2 십		0 1 2 3 4 5 6 7 8 9	
총 매 수 2 일		0 1 2 3 4 5 6 7 8 9		3 일		0 1 2 3 4 5 6 7 8 9	
가 구 당 0 백		0 1 2 3		가 구 원 수		0 1 2 3 4 5 6 7 8 9	
조 사 표 0 십		0 1 2 3 4 5 6 7 8 9		0 백		0 1 2 3 4 5 6 7 8 9	
총 매 수 2 일		0 1 2 3 4 5 6 7 8 9		0 백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1. 성 명		김 성 실									
2. 가구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가주주 <input type="checkbox"/> ②가주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주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주주 <input type="checkbox"/> ②가주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주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주주 <input type="checkbox"/> ②가주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주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주주 <input type="checkbox"/> ②가주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주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①가주주 <input type="checkbox"/> ②가주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자녀 <input type="checkbox"/> ④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가주주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⑥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⑦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⑧중손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⑨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⑩형제자매·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⑪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⑫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⑬기타 동거인	
3. 성 별		1. 남자 2. 여자		1. 남자 2. 여자		1. 남자 2. 여자		1. 남자 2. 여자		1. 남자 2. 여자	
4. 나이		세는 나이		세는 나이		세는 나이		세는 나이		세는 나이	
		백 1 0 1 2 3 4		백 1 0 1 2 3 4		백 1 0 1 2 3 4		백 1 0 1 2 3 4		백 1 0 1 2 3 4	
		십 5 6 7 8 9		십 5 6 7 8 9		십 5 6 7 8 9		십 5 6 7 8 9		십 5 6 7 8 9	
		일 0 1 2 3 4		일 0 1 2 3 4		일 0 1 2 3 4		일 0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띠		쥐 소 범 토끼 용		쥐 소 범 토끼 용		쥐 소 범 토끼 용		쥐 소 범 토끼 용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천마 닭		뱀 말 양 천마 닭		뱀 말 양 천마 닭		뱀 말 양 천마 닭		뱀 말 양 천마 닭	
		개 돼지		개 돼지		개 돼지		개 돼지		개 돼지	
생년월일		양·음력		양·음력		양·음력		양·음력		양·음력	
		1. 양력 2. 음력		1. 양력 2. 음력		1. 양력 2. 음력		1. 양력 2. 음력		1. 양력 2. 음력	
		백 19 18		백 19 18		백 19 18		백 19 18		백 19 18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월 12월		11월 12월		11월 12월		11월 12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종교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①불교 <input type="checkbox"/> ⑤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⑨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 ②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⑥천도교 <input type="checkbox"/> ③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⑦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④유교 <input type="checkbox"/> ⑧대순진리회	

		1	2	3	4	5
6. 출생지	시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시군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나주시 </div>				
7. 5년전 거주지	시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외국
	시군구					
8. 교육정도		<input type="checkbox"/> ①안받았음 <input type="checkbox"/> ②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③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④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초급·전문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⑥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⑦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①안받았음 <input type="checkbox"/> ②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③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④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초급·전문대 <input type="checkbox"/> ⑥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⑦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①안받았음 <input type="checkbox"/> ②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③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④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초급·전문대 <input type="checkbox"/> ⑥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⑦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①안받았음 <input type="checkbox"/> ②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③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④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초급·전문대 <input type="checkbox"/> ⑥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⑦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①안받았음 <input type="checkbox"/> ②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③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④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초급·전문대 <input type="checkbox"/> ⑥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⑦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①졸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제학 <input type="checkbox"/> ③휴학 <input type="checkbox"/> ④중퇴	<input type="checkbox"/> ①졸업 <input type="checkbox"/> ②제학 <input type="checkbox"/> ③휴학 <input type="checkbox"/> ④중퇴	<input type="checkbox"/> ①졸업 <input type="checkbox"/> ②제학 <input type="checkbox"/> ③휴학 <input type="checkbox"/> ④중퇴	<input type="checkbox"/> ①졸업 <input type="checkbox"/> ②제학 <input type="checkbox"/> ③휴학 <input type="checkbox"/> ④중퇴	<input type="checkbox"/> ①졸업 <input type="checkbox"/> ②제학 <input type="checkbox"/> ③휴학 <input type="checkbox"/> ④중퇴
9.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시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시군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관악구 </div>				
10. 이용교통수단		<input type="checkbox"/> ①시내버스 <input type="checkbox"/> ⑥승용차 <input type="checkbox"/> ②좌석버스 <input type="checkbox"/> ⑦택시 <input type="checkbox"/> ③기타버스 <input type="checkbox"/> ⑧자전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전철·지하철 <input type="checkbox"/> ⑨도보로만 <input type="checkbox"/> ⑤기차 <input type="checkbox"/> ⑩기타(트럭등)	<input type="checkbox"/> ①시내버스 <input type="checkbox"/> ⑥승용차 <input type="checkbox"/> ②좌석버스 <input type="checkbox"/> ⑦택시 <input type="checkbox"/> ③기타버스 <input type="checkbox"/> ⑧자전거 <input type="checkbox"/> ④전철·지하철 <input type="checkbox"/> ⑨도보로만 <input type="checkbox"/> ⑤기차 <input type="checkbox"/> ⑩기타(트럭등)	<input type="checkbox"/> ①시내버스 <input type="checkbox"/> ⑥승용차 <input type="checkbox"/> ②좌석버스 <input type="checkbox"/> ⑦택시 <input type="checkbox"/> ③기타버스 <input type="checkbox"/> ⑧자전거 <input type="checkbox"/> ④전철·지하철 <input type="checkbox"/> ⑨도보로만 <input type="checkbox"/> ⑤기차 <input type="checkbox"/> ⑩기타(트럭등)	<input type="checkbox"/> ①시내버스 <input type="checkbox"/> ⑥승용차 <input type="checkbox"/> ②좌석버스 <input type="checkbox"/> ⑦택시 <input type="checkbox"/> ③기타버스 <input type="checkbox"/> ⑧자전거 <input type="checkbox"/> ④전철·지하철 <input type="checkbox"/> ⑨도보로만 <input type="checkbox"/> ⑤기차 <input type="checkbox"/> ⑩기타(트럭등)	<input type="checkbox"/> ①시내버스 <input type="checkbox"/> ⑥승용차 <input type="checkbox"/> ②좌석버스 <input type="checkbox"/> ⑦택시 <input type="checkbox"/> ③기타버스 <input type="checkbox"/> ⑧자전거 <input type="checkbox"/> ④전철·지하철 <input type="checkbox"/> ⑨도보로만 <input type="checkbox"/> ⑤기차 <input type="checkbox"/> ⑩기타(트럭등)
		<input type="checkbox"/> ⑤기차 <input type="checkbox"/> ⑩기타(트럭등)				
11. 통근·통학소요시간		<input type="checkbox"/> ①1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15~30분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30~4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45~6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60~9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90~12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120분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1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15~3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30~4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45~6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60~9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90~12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120분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1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15~3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30~4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45~6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60~9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90~12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120분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1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15~3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30~4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45~6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60~9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90~12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120분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1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15~3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30~45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45~6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60~9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90~12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120분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120분 이상				

		(이 기 내 검 요 원 기 입 란)										기입하지 않음																			
6. 출생지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7. 5년전 거주지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9. 통근·통학 장소 (시군구)	①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②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③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④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⑤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19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II

동계장은 기입하지 않음 ←

- 흑색 2B 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마크란내에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시 읍 리 101번지 25호 서울 강남구 역삼면 10동 3반 (동) 아파트				조사구번호	0백 0십 8일	0 1 2 3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거처번호	0백 1십 9일	0 1 2 3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구번호	0백 2십 3일	0 1 2 3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구원수	0백 0십 0일	0 1 2 3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구당 조사표 총매수	0백 0십 2일	0 1 2 3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구당조사표 매수	0백 0십 0일	0 1 2 3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구당조사표 일련번호	0백 0십 2일	0 1 2 3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1.성명	1	2	3	4	5
12.경제활동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input type="checkbox"/> 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 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input type="checkbox"/> ① 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input type="checkbox"/> 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 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input type="checkbox"/> ① 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input type="checkbox"/> 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 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input type="checkbox"/> ① 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input type="checkbox"/> 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 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input type="checkbox"/> ① 주로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②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③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p>[일을 하지 않은 사람]</p> <input type="checkbox"/> ⑤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⑥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⑦ 가사만을 돌보았음 <input type="checkbox"/> ⑧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연로·연소, 장기질병 등)
13.산업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내용				
14.직업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종류				
15.종사상의 지위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④ 무급 가족 종사자
16.혼인 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사별 <input type="checkbox"/> ④ 이혼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사별 <input type="checkbox"/> ④ 이혼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사별 <input type="checkbox"/> ④ 이혼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사별 <input type="checkbox"/> ④ 이혼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사별 <input type="checkbox"/> ④ 이혼

통계청 기입란	13. 산	1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14. 직	1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2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2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3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3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4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4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5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5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업	1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업	1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2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2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3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3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4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4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5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5	백 0 1 2 3 4 5 6 7 8 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가구에 관한 사항 → 둘째장은 기입하지 않음.

1. 거처의 종류

①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⑥ 오피스텔

② 아파트 ⑦ 호텔·여관등 숙박업소의 객실

③ 연립주택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④ 다세대주택 ⑨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공장·점포·여관 등)

2. 가구 구분

① 주인(대표)가구 ① 일반가구

② 주인(대표)가구가 아님 ② 집단가구

3. 점유 형태 **4. 임차료**

① 주거전용 ① 자기집

② 영업겸용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무 상

전 세 · 보 증 금	억	1	2	3	4	5	6	7	8	9	
	천 만	0	1	2	3	4	5	6	7	8	9
	백 만	0	1	2	3	4	5	6	7	8	9
	십 만	0	1	2	3	4	5	6	7	8	9

월 세 (사글세)	천 만	1	2	3	4	5	6	7	8	9	
	백 만	0	1	2	3	4	5	6	7	8	9
	십 만	0	1	2	3	4	5	6	7	8	9
	만	0	1	2	3	4	5	6	7	8	9

5. 사용방수

개

십	1
일	0 1 2 3 4 5 6 7 8 9

6. 주거시설 형태

6-1. 부엌

① 입 식 ① 단독 사용

② 재래식 ② 공동 사용

③ 없 음

6-2. 화장실

① 수 세 식 ① 단독 사용

② 재 래 식 ② 공동 사용

③ 공중화장실

6-3. 목욕시설

① 온수시설 ① 단독 사용

② 비온수시설 ② 공동 사용

③ 없 음

7.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⑩ 10년~15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⑪ 15년~20년 미만

③ 2년~3년 미만 ⑫ 20년~25년 미만

④ 3년~5년 미만 ⑬ 25년 이상

⑤ 5년~10년 미만

주택에 관한 사항 → 둘째장은 기입하지 않음.

1. 연 건 평 (평)

평

백	1	2	3	4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2. 대 지 면 적 (단독주택만 기입) (평)

평

백	1	2	3	4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3. 총 방 수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4. 건축년도

① 1995년 ⑦ 1989년~1980년

② 1994년 ⑧ 1979년~1970년

③ 1993년 ⑨ 1969년~1960년

④ 1992년 ⑩ 1959년~1950년

⑤ 1991년 ⑪ 1949년 이전

⑥ 1990년

5. 편의시설수

5-1. 부엌 수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5-2. 화장실 수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5-3. 독립된 출입구 수

개

십	1	2	3	4						
일	0	1	2	3	4	5	6	7	8	9

14-28

1995 인구주택 총조사

지 도 지 침 서



통 계 청

<지도공무원(지도원)에게 드리는 말씀>

본 지도지침서에는 『1995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조사원의 훈련과 조사원이 수행하는 조사업무를 지도·관리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국가의 기본정책 입안에 필요한 각종자료는 물론 바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방대한 인력이 동원되는 통계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조사의 성패는 조사현장에서 지도업무를 담당할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이 맡은 바 임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 여러분은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고 이 지도지침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본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5. 10.

통 계 청 장

차 례

I.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의 임무	
1. 중 앙	3
2. 지 방	3
II. 단계별 지도·감독사항	
1. 조사원 훈련	5
2. 조사원 관리	7
3. 준비조사	9
4. 실지조사(본조사)	12
5. 조사표류의 수집·검토 및 제출	13
III. 조사항목별 주요이용도	
1. 가구원에 관한 사항	18
2. 가구에 관한 사항	20
3. 주택에 관한 사항	20
IV. 조사현황 파악 및 보고	21
V. 조사사례	22
VI. 참고사항	
1. 산업분류(소분류)	40
2. 직업분류(소분류)	45

I.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의 임무

1. 종 앙

- 훈련실시 및 조사기간중 해당지역에 상주하면서 조사의 진행사항을 점검
- 관내 조사구를 순회하며 조사원의 업무진척 사항을 파악
- 해당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 조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점의 해결 및 동 결과 보고
- 시·도의 관계관과 협의하여 관내 취약지역을 집중 지도 및 지원

2. 지 방

가.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

- 자체 인력동원 계획에 의거 지정된 지역을 순회지도하면서 해당기관의 관심도 파악
- 홍보추진사항 점검 및 국민의 조사협조에 필요한 읍면동의 활동상태 점검
- 조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점의 해결 및 동 결과 보고
- 관내 취약지역 집중 지도

나. 읍·면·동 담당공무원

항상 조사구내를 순회하면서 아래 사항을 중점지도 및 해결

- 조사원의 교육불참, 대리참석, 훈련도중 이탈방지
- 가구명부에 의거 적정 조사표류를 배부
-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점 해결
- 담당지역 조사원의 조사진척 상황 점검
- 조사완료 및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시·군·구에 보고
- 취약지역(누락, 중복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집중 지도
- 지도원의 활동사항 지원 및 문제점 해결
- 대주민 홍보활동
- 조사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미완성 조사표의 보완조사
- 완료된 조사표의 검토 및 집계

다. 지도 원

조사기간중 읍·면·동에 상시 상주하여 업무지시를 받는다.

○ 준비조사

- 부재가구수 파악
- 조사구 경계확인 및 지도
- 조사구 요도작성 미비점 보완
- 누락가구 색출

○ 본조사

- 회수조사표의 정리 및 부실내용 확인
- 누락거처 및 누락가구 색출
- 전출 및 전입가구의 조사여부 확인
- 조사진도가 부진한 조사원 지원 및 독려
- 비협조가구에 대한 설득
- 조사원 유고시 조사대행
- 조사원이 작성한 OMR조사표 확인보완 조치 및 읍·면·동에 인계

Ⅱ. 단계별 지도·감독사항

1. 조사원 훈련(10.12~26일중 1일, 표본 2일)

가. 훈련전 준비사항

조사원의 훈련을 담당해야 하는 시·군·구,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훈련용 자재의 준비사항을 재점검하고 훈련시 실습용으로 각종표류 1부씩을 모든 조사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훈련장소와 준비물 점검

- 각급 훈련시 훈련장 정면에 현판, 정문에 입간판 설치
- 책상, 의자, 분필, 흑판, 흑판지우개, 확성기, VTR 등

○ 훈련 30분전까지 입실완료 및 출석점검

○ 훈련교재 및 사무용품 배부

- 조사원 서약서
- 임용장
- 조사요원증 및 조사요원 마크
- 전수 및 표본조사지침서
- 기타 실습용 조사표류 각 1부

조사구역도, 가구명부, 가구일련번호표(스티카), 전수 및 표본조사표(일반,OMR), 전수 및 표본조사표 기입요령, 외국인 조사표, 빈집조사표, 조사표 표지

○ 훈련기관의 기관장 훈시 준비

훈련식순에는 국민의례, 기관장훈시, 임용장수여, 조사원서약서에 의한 선서등이 포함되도록 준비한다.

나. 훈 련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조사구별로 조사원을 점검하여 훈련불참자, 대리참석자 등을 파악한 후 반드시 조사원 본인이 훈련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훈련불참자는 당일 훈련이 불가능한 자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 구분 파악하여 당일에 한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준비조사 시작전 특정일을 정하여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원 등록명부의 예비조사원 중에서 적임자를 투입하고, 즉시 시·군·구에 보고함과 동시에 교육불참자와 함께 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 본 교육 시작에 앞서 각 조사원에게 배부한 실습용 조사표류에 대해서 그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모든 조사표류의 사용시 분실 또는 훼손됨이 없도록 하고, 특히 OMR조사표 취급(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해토록 주지시킨다.

(2) 훈련실시

각급 교관은 조사에 관한 훈련자료를 철저히 숙독하여 조사원 훈련방법을 연구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만일 교육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면 단독으로 해결하지 말고 차상급기관 또는 중앙과 협의를 한 후 해결하도록 하며, 다음 사항이 필히 교육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원의 준수사항을 빠짐없이 알려주도록 한다.
- 조사지침의 차례를 설명하여 조사지침서의 전반적인 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세부사항을 교육한다.
- 총조사의 개요, 취지 및 중요성 등을 모든 조사원이 숙지하여 응답거부 발생시 설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조사지침서 참조)
- 조사일정을 엄수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은 모든 조사원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조사항목의 설명은 지역실정에 합당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조사지침서 설명상 주의사항

○ 조사의 취지

- 총조사는 인구수나 주택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나 관련된 제반 특성 및 주택의 구조와 설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인력이 동원되는 전국 규모의 조사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조사결과 자료의 구체적인 용도를 본 지침서의 『Ⅲ. 조사항목별 주요이용도』란을 토대로 설명한다.

- 조사결과가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에도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 조사 일정

- 본 조사기간이 11월 1일부터 9일간으로 설정되었는 바 일일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기간내에 완료할 것을 당부한다.
- 조사기간중 조사상의 문제점이 있을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의 전화번호 또는 호출기번호와 담당자의 이름을 알려 주도록 한다.(지도공무원 및 지도원)

○ 조사의 대상

-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과 조사에서 빠지기 쉬운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면서 자세히 설명하여 준다.
- 조사대상에 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원 모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 가구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함으로써 동거가구가 동거인으로 조사되어 결과적으로 가구수가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정의는 조사지침서의 『조사대상』란을 참고한다.

○ 현장실습 교육실시

- 교육실시후 반드시 현장실습을 병행해야 한다.
- 현장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장에서 2명 1조로 하여 교대로 질문조사 실시

2. 조사원 관리

가. 조사원의 수행업무

○ 준비조사

- 조사구 경계확인
- 조사구 요도에 거처번호와 골목길 및 출입구 표시
- 가구명부 작성
- 전출 예상가구 파악
- 부재가구수 파악
- 가구일련번호표(스티카) 부착

○ 본조사

- 조사표 내용의 확인 및 부실기재사항 보완 질문
- 부재가구에 대한 재확인
- 누락거처 및 가구색출
- OMR조사표 이기

나. 조사원 관리업무 내용

- 교육받은 조사원이 실제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기간중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
- 일정별 수행업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여부
- 반드시 가구를 방문하여 책임있는 응답자를 만나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 여부
- 부재가구 또는 적합한 응답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조사표를 배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수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표 회수시 부실기재 내용을 찾아 면접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부
- 응답거부가구 발생시 지도원에게 제때에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애경사, 와병등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조사원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 조사시간을 잘못 선택하여 응답가구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는지 여부
- 가구방문시 응답가구와 불미스런 일이 없는지 여부
- 현장조사시 발생된 문제점을 조사원이 숨기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 취약지역의 누락가능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조사는 적절히 하는지 여부
(다방, 식당, 주점, 공장숙직실, 교회, 사찰 등에 거주하는 가구 색출)
-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단체,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위한 언행이나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 조사를 하므로써 알게된 가구 및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은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
- 기존의 기록에 의하여 탁상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책임있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
- 응답을 거부하는 가구를 지도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조사요원마크 및 조사요원증을 제대로 패용하고 조사에 임하는지 여부
- 응답자에 불쾌감을 주는 복장이나 언행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

3. 준비조사(전수 10.29~10.31, 표본 10.30~10.31)

가. **준비조사전** 지도공무원(지도원)의 수행업무

읍·면·동에서는 준비조사가 시작되는 첫날 09:00에 조사원을 모두 소집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원 점검

조사구별로 조사원을 점검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조사원이 있는 경우나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사구에는 예비조사원 또는 지도원을 보충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2)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의 배부

읍·면·동 지도공무원은 조사원별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의 배부일람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준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와 사무용품을 배부하고 조사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조치한다.

조사원에게 배부할 조사표류와 사무용품은 다음과 같다.

○ 조사구 요도(보통 및 섬 조사구당 2매)

- 조사원이 담당할 지역의 경계를 확실히 알수 있도록 조사구경계, 주요지형 지물, 거쳐표시가 완료된 요도 1부를 배부한다.
- 조사원은 조사구요도를 2매 수령하여 완성한 후 1부는 읍면동에 제출하고 1부는 조사에 사용한다.(읍면동에서는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구요도를 1부 보관하여 실사지도에 활용)
-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와 관광호텔 조사구(5번) 요도는 보통조사구 또는 섬조사구 요도에 위치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도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배부하지 않는다.

○ 가구명부

- 조사구별로 3부 작성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 가구일련번호(스티커)

- 모든 가구마다 부착할 수 있도록 가구수를 기준으로 배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와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 사무용품

- 조사원 1인당 연필, 지우개, 흑색볼펜, 받침대, 가방 각 1개씩을 배부한다.
- 많은 소모가 예상되는 「일반조사표」와 「OMR조사표」등은 준비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표 매수란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3) 준비조사업무 설명

준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와 사무용품을 배부하고 난 후 다시한번 조사표류의 작성방법과 준비조사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준다.

- 관내조사구의 요도, 가구명부 및 기타 준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구경계, 지형지물 등 특정사항들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조밀지역에서 인접지역조사구와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 반드시 기본도를 기준으로 조사원과 현지에 대동 답사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 취약지구를 일일이 현지답사하여 누락 및 중복등이 없는지를 확인지도한다.
- 준비조사 기간중 가구명부 작성상태, 가구일련번호표 부착여부, 조사구요도의 작성상태를 점검지도한다.
- 준비조사 기간내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반드시 확인 주지시키고 완료된 조사원에게 조사표등 본조사 관련 서식 일체를 배부(OMR조사표 포함) 한다.
- 조사구 설정시 누락된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이 발견되면 당해 시·군·구의 맨 마지막 조사구번호 다음에 이어지는 번호를 부여하고 조사하도록 조치한다.

(4) 조사원과의 업무연락

읍면동에서는 조사원별 조사진도와 문제점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시에는 직접 혹은 유선 보고토록 조사원에게 지시하고 이러한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 전화번호와 담당자 성명을 알려주어야 한다.

- 조사구 요도상의 조사구 경계가 현지확인 결과 알수 없거나 불분명할 때
- 조사구 설정시 누락된 기숙사 또는 특수사회시설이 발견되었을 때

- 비협조 가구가 발생하였을 때
- 조사대상 파악여부가 불분명할 때
- 조사원 자신의 신상문제로 인하여 조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준비조사 기간중** 지도공무원(지도원)의 수행업무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지도원은 준비 조사기간중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관내를 순회하면서 조사원의 조사활동 상태를 확인한다.
- 준비조사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 조사구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지 확인한다
- 가구누락이 예상되는 취약지구는 실지방문하여 확인한다.
- 조사원의 일일업무점검을 실시하여 기간내 준비조사 작업이 완료토록 독려한다.
- 준비조사 완료상태(조사구요도, 가구명부작성, 가구일련번호표 부착상태 등)를 파악한다.
- 부진조사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 조사원의 유선보고에 대해 응답해 준다.
- 조사원 동태를 매일 파악한다.
- 조사원 유고시 읍면동에 연락하여 예비조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토록 하고 그 결과를 구시군에 보고

다. **준비조사가 완료된 후** 의 지도공무원(지도원)의 할일

- 준비조사가 끝나면 조사구별로 요도작성 상태, 가구명부 작성상태를 반드시 점검한 후 해당 조사원에게 돌려준다.
- 준비조사가 완료된 조사구에 대해서는 가구명부상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조사원별 조사표 소요량을 산출하여 배부일람표에 기재하고 조사표를 11월 1일 조사원 출근 시에 일괄 배부토록 조치한다.
- 준비조사 결과 적정가구를 현저히 초과 혹은 미달되는 조사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보관된 기본도를 지참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구경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찾아 즉시 시·군·구 경유 시·도 상주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4. 실지조사(11.1~11.9)

가. 실지조사전 담당공무원(지도원)의 수행업무

읍·면·동에서는 본 조사가 시작되는 첫날 09:00에 조사원을 소집하여 조사표를 배부하고 본조사 기간중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원 점검

조사구별로 조사원을 점검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는지를 재점검한다.

(2) 실지조사 업무설명

총조사 전 업무는 실지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읍·면·동장이 직접 조사원에게 실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 실지조사 기간중 담당공무원(지도원)의 수행업무

(1) 조사구별 조사상황의 일일 점검

담당공무원은 조사구별로 조사상황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조사원의 연락처, 전화번호, 호출번호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진조사구의 집중적인 지도

일일 점검결과 부진 조사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한다.

(3) 조사원 유고시의 조치

조사원이 유고되었을 경우에는 각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예비조사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비협조 가구 및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조치

비협조 가구발생을 조사원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즉시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토록 하며 맞벌이·단독가구등으로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가구는 연락전에 기입된 약속날짜에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면접이 불가능하거나 응답자가 조사내용의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조사표와 조사표 기입요령을 넣은 비밀보호용 봉투를 활용하여 기입을 의뢰한다.

이*경우 조사표내검검토시 발생된 착오·누락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수정 보완한다.

(5) 취약지구에 대한 방문지도

조사누락이 예상되는 취약지구(유흥가, 공장숙직실, 기숙사, 빌딩, 사찰, 여관, 호텔, 특수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혹은 지도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 또는 가구원(식구)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내에서 기거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조사대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6) 장기부재가구에 대한 조사

준비조사 및 본조사기간(10. 29~11. 9)동안 친지방문, 여행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가구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인근사람을 찾아 조사해야 하며 잘 모르는 항목은 공란으로 둔다.(다만, 가구원수, 이름, 성별, 개략적인 연령(〈예 : 30세초반〉)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7) 조사기간중 전입·전출한 가구에 대한 조치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조사기준일 이후에 전출이 예상되는 사람을 알고있는 경우 먼저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고 조사가 완료된 거처라도 조사기간중 타지에서 전입해온 가구의 유무와 조사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하도록 한다.

(8) 조사원 동태 파악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또는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구 요도의 거처번호순으로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건강 혹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있거나 대리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매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조사원이 통적부, 반적부 등을 보고 탁상에서 작성하는 사례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조사원이 조사업무에 전념치 않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5. 조사표류의 수집·검토 및 제출(11.9~12.15)

가. 조사원의 조사표류 검토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지침서 「조사표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완료된 조사표 내용을 반드시 검토케 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류 보완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조사원의 조사표 검토가 끝난 조사표류에 대하여 내검요원에게 조사구 요도, 가구명부 및 조사표상의 거처, 가구 또는 인구수 등 관련 항목간의 일치 여부와 각종 조사표류 작성내용(OMR조사표 이기상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 오기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사표 뒷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확인 수정하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내검지도원이 확인토록 한다.

○ 조사구요도

- 인접된 조사구 요도와 대조하여 조사구 경계의 정확성 여부와 누락, 중복 가구의 유무 등을 검토
- 조사구 요도에 표시된 지형지물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

○ 가구 명부

- 조사구 요도의 거처번호 및 조사표의 가구번호와 일치하는지 검토
- 가구명부에 기재된 가구주 및 거처번호 등의 기재 사항이 조사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
- 가구명부와 조사표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기준으로 가구명부를 수정

○ 조사표

- 종류별 조사표류가 조사원들로부터 제대로 제출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중점 내검사항
 - 조사표 내용의 항목별 상호 관련항목 체크(예 : 연령<16세이상>→혼인상태등)
 - 조사표 내용의 2항목이상 관련 체크(표본조사구 연령별→직업<16세이상>의 타당성 여부)
 - OMR조사표 훼손상태 점검
 - 조사표 내용의 이기 정확성 점검

다. 조사표류 접수

- 조사표류 보완이 완료된 조사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원으로부터 조사표류 관련 일체를 조사구별로 접수한다.
- 접수표류
 - 조사구요도
 - 가구명부
 - 일반조사표(전수, 표본)
 - OMR조사표(전수, 표본)
 - 조사요원증(해당 읍·면·동에서 필히 수집 완료하여 폐기)

라. 내검요원의 조사표류 검토 및 보완(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지침서 참조)

- 조사완료된 조사표류를 조사구별로 내검요원에게 배부하여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지침서」에 따라 조사표 내용검토 및 출생지, 5년전거주지, 통근통학지에 대한 행정구역부호를 기입한다.
- 조사표 내용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착오사항이나 누락사항은 현지방문 또는 전화확인 등을 통해 수정보완한다.
- 조사표 검토중 10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현황표」를 작성하고 해당 일반조사표를 복사하여 별도 제출한다.

마. 집계표 및 접수대장 작성

○ 집계표 작성(양식 첨부)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조사원이 작성, 검토가 완료된 가구명부를 토대로 집계표를 작성한다.
- 타자료와 비교 검토

작성된 집계표 자료는 조사구별 또는 행정리(동)별로 기존 각종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상호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본 총조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한다.

○ 100세이상 고령자 명부 작성(양식 첨부)

- 조사표 내용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세는 나이 100세이상이거나 또는 1895년 이전에 출생한 고령자의 현황표를 작성한다.(확인과정에서 100세이하 일때는 제외)

○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양식 첨부)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류에 대해서는 운송도중 훼손 또는 분실이 없도록 조사표 접수대장을 5(6)부를 작성하고 1부는 읍·면·동에 보관하고, 4(5)부는 시·군·구에 제출한다.

바.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조사표류 제출

내검요원의 조사표류 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류는 다음 요령에 따라 정리한 후 제출한다.

① 가구명부

- 3부 제출 : 통계청 제출용

통계사무소 제출용

읍·면·동 보관용

- 가구명부는 읍·면·동 사무소별로 조사구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② 조사구요도 및 기본도

- 2부 제출 : 통계청 제출용

시·군·구 보관용

- 조사구요도는 읍면동 사무소별로 조사구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읍·면·동에서 활용한 기본도(1부)는 시군구에서 보관하도록 함께 제출한다.

③ 빈집조사표

- 읍·면·동에서는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순으로 정리하고, 빈집조사표 맨 위에 「빈집조사표 간지」를 작성하여 철한다.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의 빈집조사표를 모아 일반조사표 표지에 붉은 색으로 상단에 「빈집조사표」라고 쓰고, 빈집조사표철을 만든다.

④ 외국인조사표

- 읍·면·동에서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순으로 정리하고, 조사표 맨 위에 「외국인 조사표 간지」를 작성하여 철한다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의 외국인조사표를 모아 일반조사표 표지에 붉은 색으로 상단에 「외국인조사표」라고 쓰고, 외국인조사표철을 만든다.

⑤ 일반조사표

－ 읍·면·동에서는 조사구별 순으로 정리

빈집과 외국인이 있을 경우 빈집조사표, 외국인조사표, 일반조사표 순으로 편철한다.

⑥ OMR조사표

－ 「OMR빈집조사표」 「OMR외국인조사표」

• 읍·면·동 전체의 「OMR빈집조사표」를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순서로 「OMR보호용비닐」에 100매 단위로 넣는다.

• 읍·면·동 전체의 「OMR외국인조사표」를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순서로 「OMR보호용비닐」에 100매 단위로 넣는다.

• 「OMR외국인 조사표케이스」에 「OMR빈집조사표」, 「OMR외국인조사표」 순서로 넣는다.

－ 「OMR일반조사표」

• 각 조사구별로 「조사구분류용카드」가 작성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 각 조사구별로 「조사구분류용카드」, 「OMR일반조사표」 순서로 정리한다.

(표본조사구는 표본조사표Ⅰ·표본조사표Ⅱ, 표본조사표Ⅰ·표본조사표Ⅱ순으로 정리)

• 각 조사구단위로 「OMR보호용비닐」에 넣는다

－ 읍·면·동 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은 접수한 OMR조사표를 OMR조사표케이스에 2~3개의 조사구씩 넣고, OMR조사표박스에 5개의 OMR조사표케이스씩 넣어서 시·군·구에 제출한다.

※ 주의

－ 읍·면·동용 요계표와 100세이상 고령자명부 및 분리복사된 고령자가 있는 일반조사표사본은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 12월 6일까지 통계청에 제출

－ 일반조사표철(전수 및 표본)과 가구명부철 1부는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 제출

Ⅲ. 조사항목별 주요 이용도

1. 가구원에 관한 사항

성 명

- 가구원의 중복 및 누락 확인 항목
- 조사표 착오내용 질의시 사용
- 조사표 내용 검토후 전산입력시 제외되는 항목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 유형(핵가족, 노인가구, 1인가구, 편부모가구) 등 구분하는 기본 항목
- 가족 연구외에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각종 복지정책에 이용

성 별

- 인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
- 성별 인구구조 분석, 모자복지 대책, 고용정책, 생명표 작성 등에 다양하게 이용

나 이(생년월일)

- 인구구조 분석, 장래인구 추계 등에 필요한 기본 항목
- 출생률, 사망률, 생명표 등의 작성 및 사회보장, 고용, 노인 복지 등 각종 정책에 이용
- 이외 병력자원 수급계획, 신규노동력 수급대책 등 계획수립에 이용

출생지, 5년전 거주지

- 인구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
- 출생지 : 장기간에 걸친 인구이동의 양과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5년전 거주지 : 단기적인 지역간 인구이동의 양과 특성을 파악하여 농어촌 등 낙후지역개발, 도시시설 확충, 이동자의 고용대책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활용

종 교

- 각 종교별·지역별로 종교인구를 파악하기 위함

교육정도

- 산업·직업별로 학력별 인구분포, 학력별 취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산업정책, 노동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
- 여성 교육에 관한 자료는 가정복지,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노동문제 등 여러 여성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
- 지역별·교육정도별 인구자료는 지역사회의 각종 행정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

- 통근·통학 인구수의 파악으로 주·야간 인구 변동을 분석
- 이용교통수단, 통근학 소요시간을 파악함으로써 교통대책, 도시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
-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시중심부와 변두리 지역간의 통근·통학 인구에 따른 버스노선 계획수립, 지하철 건설, 도로망 구축 등에도 중요하게 활용

혼인상태

- 성별·연령과 연결한 각 연령별 혼인상태는 가구의 분석과 가구 형성의 예측 등에 활용
- 출산력의 분석, 장래인구추계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
- 여성의 혼인상태를 연령, 취업상태 등으로 연결시킨 자료는 복지정책, 노동정책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경제활동상태, 직업·산업 등

- 국민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노동력 수급계획, 고용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가구에 관한 사항

-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사용방수 등 우리나라 사람의 주거의 질을 파악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량 계획, 재개발 계획, 주택건축 기준 마련 등에 활용
-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 불안정 상태를 거주기간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주거안정대책 등 계획 수립에 활용
- 점유형태 및 임차료 등을 파악하여 전세금 안정대책 및 임대차 보호법 제정 등 계획수립에 활용

3. 주택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유형별 주택수를 파악하여 주택수급계획, 신도시 개발지역선정, 주택유형별 주택건설계획 등 각종 주택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 주택의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등 우리나라 주택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룰 수 있는 주택모형 개발, 재개발 대상 주택지역 선정 등 계획 수립에 활용
- 건축시기를 파악하여 택지 재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
- 편익시설(부엌, 화장실, 출입구)수를 파악하여 거주단위 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여 주택 수급 계획 및 전세금 안정대책 등 주택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IV. 조사현황 파악 및 보고

1. 읍·면·동

조사원을 하오 5:00에 소집하여 전날까지의 조사구별 진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하오 6:00까지 시·군·구에 보고

2. 시·군·구

각 읍·면·동별로 진도를 보고받아 이를 집계한 후 하오 7:00까지 시·도에 보고

3. 시·도

각 시·군·구에서 보고한 상황을 집계한 후 익일 오전 9:00까지 중앙에 보고

V. 조사 사례

조사 장소

㉠1. 태어난지 며칠 지났지만 11월 1일 현재 병원에 있는 신생아의 조사는 어디에서?

☞ 모친(산모)을 조사한 장소(거주지)에서 조사하여야 함. 만약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김○○」와 같이 기재한다.

㉠2.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는 학생이 주말(토요일·일요일)이면 집에 돌아오는 경우에 조사는 어디에서?

☞ 주로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평시에 집에 돌아와서 숙박하는 일수와 비교하여 기숙사에서 숙박하는 일수가 많으므로 기숙사에서 조사하여야 함(본가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 또 집을 떠나 학교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자취하고 있는 곳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3. 취업때문에 외지에서 단신으로 생활하고 주말(토요일·일요일)이면 집에 돌아오는 가족은 어디에서 조사?

☞ 주로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조사하여야 하므로, 취업때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곳(외지)에서 조사하여야 함(본가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4.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숙박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조사는 어디에서?

☞ 여관에 투숙한 목적이 사업을 위한 출장이거나 여행, 관광을 목적으로 잠시 투숙하고 있다면 가족이 있는 본가에서 조사하여야 하지만 취업, 취학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3개월 이상) 투숙한 경우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숙박시설)에서 조사한다. 단, 취업, 취학을 목적으로 왔지만 장기간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투숙하고 있더라도 현 숙박지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㉔5. 버스 종점에 있는 버스회사 기숙사에서 잠시 잠을 자는 경우에 조사는 어떻게?(버스기사, 정비기사등)

☞ 버스 운전때문에 일시적으로(2~3일에 한번 정도) 잠을 자는 경우에는 각자 사는 집에서 조사되어야 하므로 기숙사에서 조사하면 안된다. 단, 회사 기숙사에서 계속 먹고 자는 사람은 기숙사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㉔6.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열차,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승무원으로 탑승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자고 집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는 승무원은 어디에서 조사?

☞ 상주지(생활 본거지) 각 가정(가구)에서 조사한다.

조 사 대 상

㉔1. 「김 인구」씨의 가족은 부인과 타지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군에 입대해 있는 아들과 아직 호적에 올려지지 않은 손녀가 있다. 이 경우에 조사대상 가구원은?

☞ 3명(가구주, 배우자, 손녀)

※ 취학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이나 군에 입대한 가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아직 호적이거나 주민등록신고는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94. 11. 1이전 출생한 아이는 조사되어야 한다.

㉔2. 「이 통계」씨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부인은 남편의 간호를 위해 병원에서 숙식을 하고 있으며 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 둘이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데 이때의 조사 대상 가구원은?

☞ 모두 조사대상이다. 4명(가구주, 배우자, 아들, 딸)

※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내(기숙사 또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관리인들이 있으면 조사하여야 한다(단, 병원내 입원환자는 각 가정에서 조사).

㉔3. 가구주 「박 사장」씨는 부인과 아들 하나를 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주이다. 그 정비소에는 종업원이 3명 있는데 종업원의 편의를 위하여 숙식을 같이 하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원은?

☞ 6명(가구주, 배우자, 아들, 종업원 3명 ← 종업원도 같이 숙식을 하고 있으므로 가구원으로 포함 조사한다.)

* 이때 종업원들만 별도로 숙식을 하거나 사장집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식사를 날라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장집과 별도 가구로 조사한다.

㉠4.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귀화)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가구로 조사하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인 남편은 외국인 조사표, 한국인 처는 일반조사표(한국인용)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주택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처가 혼인으로 인하여 완전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남편과 같이 외국인 조사표에 조사한다.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가구에 한국인이 동거인(가정부등)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동거인을 구분하여 별도의 한국인 가구로 조사하고 주택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5.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육군대위(직업군인)가 강원도에 부임하여 영외에서 혼자 방을 얻어 살고 있다면 이사람은 어디에서 조사해야 하는가?

☞ 부산의 본가에서는 가구주(육군대위)가 강원도 ○○에 부임하여 살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인을 가구주로 하여 조사하며, 강원도 ○○에서는 이사람을 거주(자취)하고 있는 거처(일반조사구)에서 조사하면 안된다[군부대(특별조사구)에서 조사되기 때문임].

㉠6. 수녀원에서 상주하고 있던 수녀가 수녀원이 운영하고 있는 탁아소에 2~3개월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어디에서 조사하여야 하는가?

☞ 수녀원에서 조사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대사찰에서 암자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스님도 대사찰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7. 기도원에서 장기간 요양하면서 기도중인 요양자는 어디에서 조사하여야 하는가?

☞ 자기집(본가)에서 조사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㉔8. 여관 등 숙박업소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가?

- ☞ 주인가구가 여관과 분리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조사 하고, 숙박업소의 객실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에는 이중 대표되는 한가구를 주가구로 하고 나머지 가구를 동거가구로 조사한다. 단, 주인가구가 여관과 같은 구조물(건물)내 주택의 요건을 갖춘 부분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인가구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 조사하고, 객실내에 거주하는 가구는 상기와 같은 요령으로 조사한다.

㉔9. 오피스텔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개개의 호실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거처로 조사한다.(거처의 종류는 오피스텔이 됨)

㉔10. 아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데 부모를 미국에 초청하여 같이 살다가 부모가 한국에 살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국적회복과 관계없이 한국인으로 간주해서 일반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㉔11.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조사구 특성번호 5)에서 외국인과 동거하고 있는 한국인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 외국인 조사구에서 외국인과 동거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인 조사표로 조사하되, 가구의 종류는 주인(대표)가구로 외국인은 동거가구로 조사한다.

㉔12. 1층은 당구장, 2층은 다방, 3층은 한의원, 4층에는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처에 주인가구가 살고 있고, 다방에서 2인의 종업원이 살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사하는가?

- ☞ 주인가구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다방종업원은 주택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한다.

준 비 조 사

㉔1.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관광호텔 조사구도 가구명부를 작성하여야 하

는가?

- ☞ 조사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중복방지를 위하여 가구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단, 가구명부의 여러사항 중 해당사항만 기입한다.

㉔2. 가구명부상의 주소란에서 행정동 동명을 기입하는가?

- ☞ 가구명부 상단의 행정구역명 기입란에는 행정동명을 기입하지만, 각 가구별로 기입하는 주소란에는 법정동 또는 법정리명과 통·반·번지까지(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명, 동·호수) 기입해야 하며, 총조사가 끝난후 일반조사표의 질의조회시 필요한 사항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㉔3. 농가, 어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 가구명부상 농가는 농업총조사의 모집단으로, 어가는 어업총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되므로 조사지침서상의 농가·어가의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표시 한다. 단, 농업과 어업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농가와 어가란에 모두 ○표시를 한다.

㉔4. 농업노동자(남의 논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 경우에 농가에 해당되는가?

- ☞ 남의 논밭에서 일하는 농업노동자는 농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농가에 ○표 한다.

㉔5. 빈집과 폐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 이 사항은 빈집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구분 기준을 검토하여 그 구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폐가도 빈집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므로 준비조사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빈집 :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미분양 또는 입주 대기중인 집
- 매매, 이사 등으로 비어 있으면서 이사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집
- 현재는 비어 있지만 방, 부엌, 출입구(현관, 대문), 화장실, 지붕 등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의 집으로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집
- 폐가 : 현재 비어 있으면서,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집(빈집 조사표 사용하여 조사시 「빈집 사유」항목에서 폐가에 ○표)

가구원에 관한 사항

전수항목

㉠1. 성명(이름)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가?

- ☞ 성명을 조사하는 이유는 조사시 동일인을 두번 이상 중복 조사하거나 조사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조사되어서 차후에 그 내용을 보충질문할 경우에 누구에 해당되는지의 식별 기준이 된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명은 이용되지 않으며 조사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킬때에도 제외된다. 따라서 이름(성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응시에는 이러한 사유를 설명하고 응답을 유도하도록 한다.

㉠2. 친 자녀가 아닌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 ☞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입양한 자녀, 계부, 계모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로 표시한다. 단, 다른 곳에 부모가 있고 수양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 관계가 아니므로 「기타 친인척 또는 기타 동거인」으로 조사한다.

㉠3.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집단시설내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조사방법은?

(예 : 요양 정신병원, 혜광 정신요양원, 대구 정신요양원)

- ☞ 공부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가 가능한 부분(성명,성별, 연령, 출생년월일 등)은 조사하고 확인 불가능한 사항은 사유를 기재하고 미상으로 처리한다.

㉠4. 맹아학교는 정규학교에 포함되는가?

- ☞ 맹아학교는 교육부 인정 학교이므로 정규학교로 조사토록 한다.

㉠5. 별거하고 있을 경우에 혼인상태는 어떤 상태로 조사해야 하는가?

- ☞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재 결합할 경우가 희박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조사하고 재결합할 경우에는 「배우자있음」으로 조사한다.

표본항목

《출생지·5년전 거주지》

圖1. 태어난곳이 전라남도 광주시로 조사된 경우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가?

☞ 광주직할시의 경우는 과거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이었지만 1986년에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에 광주광역시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특별·광역시·도명란에 광주광역시를 기입하고 구·시·군명란에 구명을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부산, 대구, 인천,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 기입한다)

圖2. 부인과 아들(6살), 딸(3살)이 있는 「홍길동」씨는 부산시 중구 광복동에서 계속 살아오다 90년 12월에 같은 동내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다. 이 가구원들의 5년전 거주지는 어디인가?(아들의 생년월일은 '90년 11월 2일로 조사됨)

☞ <5년전 거주지>
홍길동 ⇒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집
부인 ⇒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집
장남 ⇒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장녀 ⇒ 조사하지 않음(∵5살 미만)

圖3. 계속 살아온 집을 헐고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경우 5년전 거주지는 어디인가?

☞ 계속 같은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②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조사한다. 단, 신축한 집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어느정도 떨어져서 주소(번지, 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집으로 간주하여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통근·통학》

圖1. 방위소집 근무 중인 자는 통근·통학상태를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② 통근함」으로 조사하고 근무중인 곳의 주소(시·도, 시·군·구명)도 조사하여야 한다.

㉔2. 특정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배우, 음악가, 연예인 등인 경우 통근장소는 어디로 조사하는가?

☞ 전속된 경우는 전속된 직장(프로덕션)의 주소를, 전속이 아닌 경우는 최근에 가장 많이 출연한 곳을 통근장소로 조사한다. 단, 전속되지 아니한 악사로서 여러군데의 밤무대에 출연하는 경우는 매일 저녁 처음 가는 근무지를 통근장소로 한다.

㉔3. 본사, 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원이나 통신원 등으로 일하는 사람의 통근장소는 어디로 조사하는가?

☞ 주재하여 일하고 있는 장소를 통근장소로 조사한다.

㉔4.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식당의 일당제 종업원이나 파출부 등으로 여기저기 일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통근장소를 어디로 조사하는가?

☞ 최근 1개월간에 주로 일하러 다닌 지역을 통근장소로 기입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노무자(막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최근 1개월간 주로 일한 공사현장의 주소를 통근장소로 조사한다.

㉔5.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서 좌석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 이용교통수단은 도보와 버스로 조사해야 하는가?

☞ 이 경우에 도보는 버스를 타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좌석버스」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㉔6. 서울에서 구간연장으로 안양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시내버스로 보아야 하는가? 시외버스로 보아야 하는가?

☞ 구간연장으로 서울에서 시외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서울에서 조사하든 안양, 과천, 고양, 의정부시에서 조사하든 「시내버스」로 조사한다. 단, 반대로 시외에서 서울시내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로 조사하여야 한다.

㉟7. 농촌지역의 군내를 운행하는 군내버스와 시부지역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기타 버스 어느 것으로 조사하여야 하는가?

☞ 농촌지역의 군내버스는 「시내버스」로 조사하고 마을버스는「기타버스」로 조사한다.

㉟8. 트럭, 오토바이, 스쿠터(Scooter)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는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정상적 교통수단 이외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기타」로 조사한다.

㉟9. 학교에는 도보로 등교하고, 하교후에 학원을 시내버스로 다닐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통근·통학사항을 통근하거나 등교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항목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주된 활동이고, 학원에 다니는 것은 보조적인 활동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교할때 이용하는 교통수단(도보)을 이용교통수단으로 조사한다.

㉟10. 출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일정하지 않고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일주일간을 기준으로 4~5일은 승용차를 이용하고, 1~2일은 좌석버스를 이용할 경우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볼 때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 교통수단을 이용교통수단으로 조사하고, 후자의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보조적인 교통수단에 불과하고, 주 교통수단이 승용차이므로 승용차로 조사하여야 한다.

단,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지하철로 갈아타고 출근하는 경우와 같이 갈아타면서 출근하는 경우에는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단 2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수단 2개만을 조사한다.

※ 도보는 오로지 걸어서만 통근·통학할때에만 해당된다.

《경제활동상태》

㉟1. 스님이나 절(사찰)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수입있는 일을 하였을 경우(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1」 주로 일하였음」으로 조사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9」 기타」로 조사한다.

㉒2. 본 조사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할때 응답자가 「가사만을 돌보고 있음(집안 일을 돌보고 있음)」고 했을 경우 어떻게 조사하는가?

☞ 집안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를 다시 한번 더 질문하여 “수입있는 일”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즉, 집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 또는 자영업체에서 일만 한 경우에는 「1」 주로 일하였음」으로 조사하여야 하나 밥 짓고 빨래를 한 경우는 「2」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 하였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㉒3.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에 대해서 ㉒12경제활동상태와 ㉒15종사상의 지위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가?

☞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주에 대해서는 ㉒12번과 ㉒15번 항목을 각각「1」 주로 일하였음」과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조사하고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 16세 이상인 가족들에 대해서는 각각「1」 주로 일하였음」과 「4」 무급가족 종사자」로 조사한다.

㉒4. 자영농인 경우에 ㉒13산업 항목의 직장·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내용과 ㉒14직업 항목의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직장·사업체 이름	: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의 종류
	(예: 나의 논, 비닐하우스, 나의 밭 등)
주된 사업내용	: 하고 있는 농사의 종류
	(예: 야채 속성재배, 벼농사, 채소재배 등)
부서 및 직책	: 자영농, 가족으로 농사일을 돕고 있음.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나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
	온상에서 야채를 속성재배하고 있음,
	밭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음 등

㉒5. 비디오 가게, 노래방, 제과점 등을 남편과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㉒12경제활동상태와 ㉒15종사상의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나?

종사상의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나?

- ☞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각각 「1 주로 일하였음」과「자영자 또는 사업주」로 조사하고 영업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가족(가구원)에 대해서도 ⑫번 항목은 「1 주로 일하였음」으로 조사하나 ⑭번 항목 「부서 및 직책」에는 “가족종사자”로 기입하고 ⑮번 항목도 「4 무급가족 종사자」로 조사한다.

㉠6. 빵을 제조하여 소매와 도매를 같이 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내용을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가?

- ☞ 빵을 제조하여 타 제과점에 도매하는 부분의 매출액이 소매부분보다 더 큰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빵 제조업」으로 기입하고 소매부분의 매출액이 클 경우에는 「빵 소매업」으로 기입한다.
단, 대부분의 제과점과 같이接客시설을 갖추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므로 「음식업」으로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7. 남의 가정에 같이 살며 가정부로 일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 또는 파출부로 일하는 경우에 ⑮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으로 조사해야 하는가?

- ☞ 「1 임금·봉급 근로자」로 조사한다. 월급제이든 일당제이든 관계없이 모두 임금·봉급 근로자에 해당된다.

㉠8.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하는 행상이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없이 길거리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떠돌아 다니면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원이 없이 일을 수행하는 단순노무 자영자는 ⑮종사상의 지위를 무엇으로 조사해야 하는가?

- ☞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조사한다.

㉠9.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⑮종사상의 지위를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 고용원이 없이 2인 이상이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조사하고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3 고용원을 둔 사업주」로 조사한다.

㉑10. 가재도구 수예제품(전화 수화기, 밥통, 냉장고 등의 손잡이 싸개 등) 제조업체로 부터 재료를 받아다가 가정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분량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경우는 종사상의 지위를 무엇으로 조사해야 하는가?

☞ 비록 사업체에 나가서 근무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체에서 재료를 제공받아서 일을 하고 일한 분량에 따라서 그 댓가를 받으므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 임금·봉급 근로자」로 조사한다.

단, 원료자체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가내 수공업으로 보아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분류한다.

㉑11. 외판원인 경우에는 종사상의 지위를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회사에서 봉급(임금)을 일부라도 받는 경우는 「1」 임금·봉급 근로자」로 조사하고 봉급을 전혀 받지 않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서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또는 「3」 고용원을 둔 사업주」로 조사한다.

가구에 관한 사항

전수항목

㉑1.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거처의 종류는 「9」 기타」로 조사하고, 『가구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하지만,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는다.

㉑2. 독신자 아파트(사원, 공무원 아파트 등)는 거처의 종류를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아파트」로 조사한다.

㉑3. 중국대사관 옆(중국대사관 소유) 창고내에 36가구가 살 경우에 거처의 종류는?

☞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9」 기타」로 조사한다.

㉑4. 사찰은 거처의 종류를 무엇으로 조사하는가?

☞ 대사찰은 「8」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로 조사하나 암자 등 작은 절은 「9」 기타」로 조사한다.

㉔5. 공장 건물위에 지워진 주택 요건을 갖춘 조립식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에 거처의 종류는?

☞ ① 영구성 ②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추었으면 「5」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조사하고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면 「9」 기타」로 조사한다.

㉔6. 목재소(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장소에 주택이 없고 목재소(제재소)내에 관자로 지은 사무실 겸용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영구성이 없으므로 거처의 종류는 주택이외의 거처인 「9」 기타」로 조사하고 『가구에 관한 사항』까지만 조사하고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는다.

㉔7. 조사대상 주택에 5가구가 살고 있는데 5가구 모두 세들어 살고 있는 가구이고, 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그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5가구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 온 가구를 대표가구로 조사하고 나머지 가구는 ②번항목에서 「2」 주인(대표)가구가 아님」으로 조사한다.

이때, 대표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에 관한 사항』(다른 가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까지 조사하여야 하고 다른 가구들은 『가구에 관한 사항』까지만 조사를 하도록 한다(주택에 관한 사항란은 사선「\」을 그음). 그러나 세들어 살고 있는 5가구가 모두 살아 온 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관한 사항을 제일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하여 동일한 요령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㉔8. 대학입시 공부를 위해 독서실에서 20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먹고 자고 집단생활을 할 경우에 가구구분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집단적으로 계속 생활할 경우에는 집단가구로 보아 조사한다.

㉟9. 독립병원 장기입원환자(예 : 광산의 진폐증 입원환자)의 경우 가구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 병원내의 별도 병동에서 국가기관의 지원아래 입원된 환자이기 때문에 요양소로 보아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㉟10. 장애인 연금을 받아 집단시설내의 아파트에서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가구단위별로 생계유지)하는 경우에 가구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 「1 일반가구」로 조사한다.

㉟11. 공장 울타리에 기숙사와 비슷하게 울타리 1층을 둘러싸서 27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슬래브 건물의 거처의 종류와 가구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 「단독주택」으로 보아 1가구는 「1 대표(대표)가구」로 보고, 나머지 가구는 「2 주인(대표)가구가 아님」으로 처리하여 조사한다.

㉟12. 일반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사주, 관상 등을 가끔 볼때 주거전용과 영업겸용중 어느 쪽으로 조사해야 하는가?

☞ 건물의 건축목적(용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조사한다. 그러므로 「주거전용」으로 조사한다.

㉟13. 단독주택에서 주인가구와 동거가구(세든가구)가 살고 있는데, 동거가구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면 주인가구는 「영업겸용」으로 조사해야 하는가?

☞ 아니다. 주인가구는 「주거전용」으로, 동거가구는 「영업겸용」으로 조사한다.

㉟14. 철거민이 비닐하우스 1동에서 몇가구가 각각 생활하며 살고 있는 경우 가구 및 점유 형태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철거민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경우 1동을 하나의 거처로 보고 그 중 대표가구를 「1 주인(대표)가구」, 나머지는 「2 주인(대표)가구가 아님」으로 조사하고 가구의 점유 형태는 대표가구는 「자기집」으로 나머지 가구는 「무상」으로 조사한다.

단, 비닐하우스가 공동소유 또는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1 자기집」으로 조사한다.

㉟15. 진해 해군부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시에 선수금으로 200만원을 받아 그 이자를 가지고 매월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 점유형태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입주시에 낸 입주금이 관리비 충당비용으로 사용되고, 따라서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조사한다.

㉟16. 음식점 또는 점포(옷가게 등)에서 손님 또는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방의 형태이지만 벽으로 막혀있지 않은 경우(실제로 거주하고 있음) 방수에 포함 조사하는가?

☞ 방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0cm(6척) 이상이며, 넓이가 1평(3.3㎡) 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벽으로 막혀 있지 않으므로 거주여부와는 관계없이 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㉟17.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의 화장실 사용구분 조사를 「2 재래식」과 「2 공동사용」으로 조사하였다. 맞게 조사하였는가?

☞ 틀림. 공동사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거처에 딸린 옥내외의 화장실을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어느 개별의 집에 속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용으로 조사하지 말고 반드시 「3 공중화장실」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㉟18. 주택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옥외에 재래식 화장실도 있어서 2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가?

☞ 주로 사용하는 곳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단, 영업겸용의 거처로서 재래식 화장실은 손

님들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욕내의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한다.

㉟19. 화장실 안에 욕조는 없이 샤워시설만 갖추어진 경우에 목욕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화장실·목욕시설 겸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각각 있는 것으로 조사한다. 목욕시설에서 욕조가 없이 샤워시설만 갖추어진 경우도 목욕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형태 구분을 조사하여야 한다.

표본항목

《임차료》

㉟1. 단독주택 전체를 임차하여 단독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재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전세금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단독주택 전체를 임차하여 일부를 월세로 재임대한 경우에는 월세금에 해당하는 이자율만큼 할인한 평가액을 단독주택 전체 임차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조사한다.

예) 단독주택 전체 전세금 : 5,000만원, 재임대월세 : 보증금-0, 월세금-10만원

↓

평가액 : 10만원 × 12개월 ÷ 0.12 = 1,000만원

조사 전세금 = 전체금액 - 공제액 = 5,0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

㉟2. 월세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금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월세금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10,000원이 안되더라도 모두 10,000원으로 조사한다.

㉟3.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 점포에 대한 임차금액을 뺀 거주부분에 대한 임차료 부분만을 임차료로 조사해야 하는가?

☞ 아니다. 점포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별도로 구분 산정해 내기가 어려우므로 「2」 영업겸용」에 표시하고 임차료는 지불되는 총액을 그대로 조사한다.

《거주기간》

㉠ 50년동안 살아온 집 바로 위쪽에 별개의 집을 신축하여 3개월전부터 들어가 살고, 과거에 살던 집은 빈채로 있다. 이러한 경우 「5년전 거주지」와 「거주기간(이 집에 계속하여 살아 온 기간)」은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가?

☞ 번지와 호수등의 주소가 같으면 같은 집으로 간주하여 계속해서 살아 온 것으로 조사하고, 주소가 다르면 다른 집으로 간주하여 신축시기부터 살아 온 것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증축, 개축한 경우에는 계속 살아 온 것으로 조사해야 한다.

다만, 『주택에 관한 사항』의 ④번 항목(건축년도)은 신축한 시기 「1 1995년」으로 조사하며 과거에 살던 집은 빈집조사표에 조사하여야 한다.

㉡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살고 있는 「이 주택」씨 가족은 '86년 6월부터 현재의 집에서 살아 왔다. 그러나 남편은 '90~'91년 2년동안 부산으로 전근가서 자취하였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가구주인 남편을 기준으로 보면 5년 미만이 되지만, 가구원들을 기준으로 보면 5~10년미만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구원들의 거주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오래 살아 온 가구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주택에 관한 사항

㉢ 일반주택(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내에 6인 이상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경우(주인가구 없이)에도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는가?

☞ 6인 이상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경우(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는 집단가구에 해당되어 『가구에 관한 사항』중 ③번 이하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단, 기숙사나 특수사회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는다.

㉔2. 단독주택에 조그마한 영업겸용 점포가 있는 경우 연건평과 대지면적은 어떻게 조사 하는가?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과 영업겸용 주택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조사 하지만, 단독주택내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영업용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연건평과 대지면적은 전체 면적을 그대로 조사한다.

㉔3. 담장안에 있는 텃밭도 대지면적에 포함 조사하는가?

☞ 담장안의 정원은 포함시키지만, 텃밭은 거주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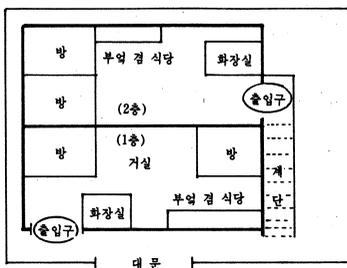
㉔4. 영세민촌등에 몇가구가 공동으로 주택과 멀리 떨어진 별도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경우(몇 가구만 공동으로 사용)에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가구에 관한 사항』중 주거시설 형태 항목의 화장실은 「3 공중화장실」에 표시하고 『주택에 관한 사항』중 편익시설수 항목의 화장실수는 0개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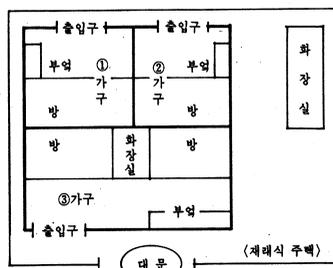
㉔5. 독립된 출입구의 개념은 어떻게 구분 조사하는가?

☞ 독립된 출입구란 외부와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의 출입구를 말하며, 출입문이 임시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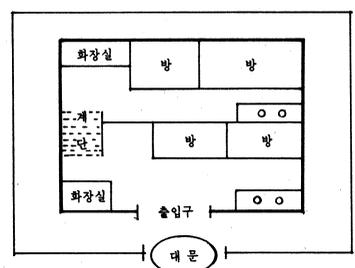
※ 각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현관문을 독립된 출입구로 간주한다.



5-3. 독립된 출입구 수 : 2개



1개



1개

Ⅵ. 참고 사항

1. 산업분류(소분류)

분류번호 및 산업명	분류번호 및 산업명
<p>A. 농업, 수렵업 및 임업</p> <p>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p> <p> 011. 작물생산업</p> <p> 012. 축산업</p> <p> 013. 복합농업</p> <p> 014. 조경, 작물생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p> <p>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p> <p> 020.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p>	<p>131. 철광업</p> <p>132. 비철금속광업</p> <p>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p> <p> 141. 토사석채취업</p> <p> 1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및 채석업</p>
<p>B. 어업</p> <p>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p> <p> 051. 일반어업</p> <p> 052. 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p>	<p>D. 제조업</p> <p>15. 음식료품 제조업</p> <p> 15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p> <p> 152. 낙농품 제조업</p> <p> 153. 곡물가공업, 전분 및 사료제조업</p> <p> 154. 기타 식품 제조업</p> <p> 155. 음료 제조업</p>
<p>C. 광업</p> <p>10. 석탄광업</p> <p> 101. 무연탄광업</p> <p> 102. 갈탄광업</p> <p> 103. 토탄광업</p>	<p>16. 담배제조업</p> <p> 160. 담배제조업</p> <p>17. 섬유제품 제조업</p> <p> 171. 방적, 직조 및 섬유 가공업</p> <p> 17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p> <p> 173. 편조업</p>
<p>11.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p> <p> 111.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p> <p> 112.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관련 서비스업</p> <p>12. 우라늄 및 토륨광업</p> <p> 120. 우라늄 및 토륨광업</p> <p>13. 금속광업</p>	<p>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p> <p> 181. 의복 제조업</p> <p>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p> <p>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p> <p> 191. 가죽, 가방 및 마구류 제조업</p> <p> 192. 신발 제조업</p>

분류번호 및 산업명	분류번호 및 산업명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2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2. 나무, 콜크 및 조물제품제조업	273. 금속 주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281.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가발생기 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 출판업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기구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업 23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33. 핵연료가공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 화학섬유 제조업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71. 제1차 철강산업 272. 제1차 비철금속산업	

분류번호 및 산업명	분류번호 및 산업명
32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3.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 기 제조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31.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정밀 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332.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41. 수도사업 410. 수도사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제조업 343. 자동차 부품 제조업	F. 건설업 45. 건설업 451. 지반조성 공사업 452.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업 453. 건축설비 설치 공사업 454. 건축 마무리 공사업 455.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말린)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 업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 연료 소매 업 501. 자동차 판매업 502. 자동차 수리업 503.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504. 이륜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 505. 차량용 연료 소매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369. 기타 제조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1. 상품 중개업 512.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513. 가정용품 도매업 514.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37. 재생연료 가공 처리업 371. 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2.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분류번호 및 산업명	분류번호 및 산업명
515.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519. 기타도매업	64. 통신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산업(자동차제외)	641. 우편업
521. 종합소매업	642. 전기통신업
52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J. 금융 및 보험업
523. 비식용 신품 일반 소매업	65. 금융업
524. 중고품 일반 소매업	651. 일반금융업
526.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자동차 제외)	659. 기타 금융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66. 보험 및 연금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660. 보험 및 연금업
551. 숙박업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52. 음식점업	671. 금융 관련 서비스업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7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601. 도시간 철도 운송업	70. 부동산업
602. 기타 육상운송업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70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1. 수상운동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611. 해상운송업	711. 운수장비 임대업
612. 내륙수상운송업	712.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62. 항공운송업	7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 용품 임대업
621. 정기 항공 운송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622.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	721. 컴퓨터 설비 자문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처리업

분류번호 및 산업명	분류번호 및 산업명
724. 데이터베이스업	8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
725. 사무, 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1. 의료업
	852. 수의업
	853. 사회복지사업
73. 연구 및 개발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731.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90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911. 산업 및 전문가단체
742.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912. 노동조합
743. 광고업	919. 기타 회원단체
7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1.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산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2. 뉴스제공업
751. 정부행정 및 공공경제 사회정책사무	923.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산업
752. 외무, 국방 및 치안행정	924. 운동, 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
753. 사회보장행정	93. 기타 서비스업
M. 교육서비스업	930. 기타 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P. 가사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95. 가사서비스업
802. 중등교육기관	950. 가사서비스업
803. 고등교육기관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직업분류(소분류)

분류번호 및 직업명	분류번호 및 직업명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33. 초등 및 학령전 교육교사
11. 입법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234. 특수학교교사
111. 입법공무원	23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전문가
112. 고위 정부공무원, 입법공무원 제외	24. 기타전문가
113. 전통적 촌장	241. 사업전문가
114.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직원	242. 법률전문가
12. 법인관리자	243.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
121.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244. 사회과학 및 관련전문가
122. 생산부서 관리자	245. 작가와 창작 및 공연예술가
123. 기타부서 관리자	246. 종교전문가
13. 종합관리자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31. 종합관리자	3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2. 전문가	31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312. 컴퓨터 준전문가
211. 물리학자, 화학자 및 관련전문가	313. 광학 및 전자 장비 조작용
212. 수학자, 통계학자 및 관련전문가	314. 선박 및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공
213. 컴퓨터 전문가	315. 안전 및 품질검사원
214. 건축가, 기술자 및 관련전문가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321. 생명과학기술공 및 관련 준전문가
221. 생명과학전문가	322. 현대 보건 준전문가, 간호제외
222. 보건전문가(간호제외)	323. 간호 및 조산 준전문가
223. 간호 및 조산전문가	324. 전통의료개업의 및 신앙치료사
23. 교육전문가	33. 교육 준전문가
231. 대학 및 고등교육교수	331. 초등교육 준교사
232. 중·고등학교교사	

분류번호 및 직업명	분류번호 및 직업명
332. 학령전교육 준교사	512. 가사 및 음식서비스근로자
333. 특수교육 준교사	513. 개인보호 및 관련 근로자
334. 기타 교육 준전문가	514. 기타 대인 서비스 근로자
34. 기타 준전문가	515. 점성가, 예언자 및 관련근로자
341. 금융 및 판매 준전문가	516. 보안업무 근로자
342.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 중개인	5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343. 관리 준전문가	521. 패션 및 기타모델
344.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522. 상점판매원 및 선전원
345. 수사관	523. 매점 및 시장판매원
346. 사회사업 준전문가	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34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61. 출하목적농업 및 어업관련 근로자
348. 종교 준전문가	611. 출하용 채소 및 작물 재배자
4. 사무직원	612. 출하용 동물생산자 및 관련 근로자
41. 일반사무직원	613. 출하용 작물 및 동물복합생산자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614. 임업 및 관련 근로자
412. 계수사무원	615. 어업 근로자 및 수렵원
413. 재료기록 및 운송사무원	62.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414.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621.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419. 기타사무직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42. 고객봉사 사무직원	71. 추출 및 건축 기능 근로자
421.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사무원	711. 광원, 발파원, 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
422. 고객안내 사무원	712.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 근로자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713. 건물완성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근로자	714. 도장원, 건물구조 청결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511. 여행접대요원 및 관련근로자	

분류번호 및 직업명	분류번호 및 직업명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21. 금속주형원, 용접원, 판금원, 구조금속준비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722. 대장원, 공구 제조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723.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724. 전기, 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814.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원 815. 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816.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원 81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73.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기능 근로자 731.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732. 도공, 유리가공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733.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 재료의 수공예 근로자 734.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82.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21. 금속 및 광물제품 제조용 기계조작원 822. 화학제품용 기계조작원 8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원 824.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825. 인쇄, 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826. 섬유, 모피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827.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원 828. 조립원 829.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41.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근로자 742. 목재처리원, 가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43. 섬유, 의복 및 관련기능근로자 744. 펠트, 가죽 및 신발제조 기능근로자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831. 철도기관사 및 관련 근로자 832. 자동차 운전원 833. 농업 및 기타 이동장치운전원 834. 선박 갑판 승무원 및 관리근로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811.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원 812. 금속가공장치조작원 813. 유리, 도기 및 관련장치조작원	

분류번호 및 직업명	분류번호 및 직업명
<p>91. 행사 및 단순 서비스직 근로자</p> <p>911. 행사 및 관련 근로자</p> <p>912.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가두서비스직 근로자</p> <p>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p> <p>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p> <p>915.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경비원 및 관련 근로자</p> <p>916. 환경미화원 및 관련근로자</p>	<p>921.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p> <p>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p> <p>931.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노무자</p> <p>932. 제조 관련 단순 노무자</p> <p>933. 운수업 관련 단순 노무자 및 화물취급원</p>
<p>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p>	<p>0. 군인</p> <p>01. 군인</p> <p>011. 군인</p>

(별첨양식 2)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1995 인구주택 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

③

시도	시군구	읍면동	매종	매
----	-----	-----	----	---

일련 번호	성 명	성별	주 소	읍 면 동	조 사 구 호 번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가 구 원 번 호	가 구 주 성 명	비 고
			읍면동 리통반 번지 [아파트 동 호 호]	읍면동	읍 ()					
			읍면동 리통반 번지 [아파트 동 호 호]	읍면동	읍 ()					
			읍면동 리통반 번지 [아파트 동 호 호]	읍면동	읍 ()					
			읍면동 리통반 번지 [아파트 동 호 호]	읍면동	읍 ()					
			읍면동 리통반 번지 [아파트 동 호 호]	읍면동	읍 ()					

시 도
시군구
동읍면

장



승 인 번 호
제 00000 호

정부에서는 통계법 제3조에 의거 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통계조사만 “정부승인 통계마크”를 표시토록 하였으니 이 마크가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성실한 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응답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995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지침서

(특별조사구용)



통 계 청

차 례

I. 조사 개요	3
II. 조사 대상	7
1. 외무부	7
2. 국방부	7
3. 법무부	9
4. 경찰청	9
III. 조사표 작성 요령	11
IV.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제출	20
※ 부록 1. 특별조사구 조사표 정리방법	24
2. 행정구역부호 일람표	25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 구조, 분포 및 제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장·단기 계획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며, 학술연구, 민간의 사업 목적,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

2. 조사연혁

- 인구 총조사
 - * 1925년이래 매 5년 주기로 실시
 - * 1995년은 제 15차 조사
- 주택 총조사
 - * 1960년이후 인구 총조사와 함께 매 5년 주기로 실시 (단, 1966년은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 1995년은 제 7차 조사

3. 법적 근거

- 통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01호(인구 총조사) 및 제 10102호(주택 총조사)

4. 조사 기준시점 및 기간

- 조사 기준시점 : 199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기간 : 1995년 11월 1일 ~ 11월 5일(5일간)

5. 조사지역

-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

6.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조사 지역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
- 공무로 외국에 체류중인 외교관, 수행원 및 그 가족. 단, 다음과 같은 인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 해외 취업·유학 중인 자녀
 - * 외국 정부 외교관, 수행원 및 공무로 체류중인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 * 국제기구 소속기관의 외국 직원·수행원 및 그 가족
 - * 국내 주둔 외국 군인·군속 및 그 가족

7. 조사 체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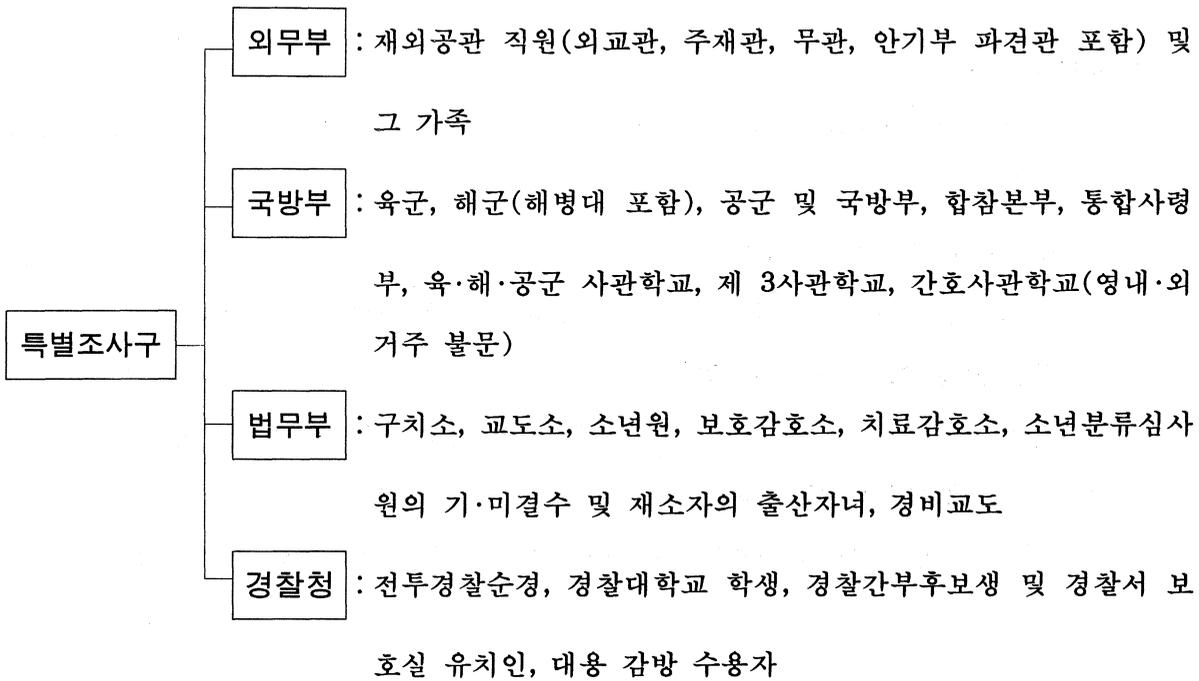
- * 통계청 주관하에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구분하여 조사.

가. 일반조사구

- 조사원이 가구방문을 하면서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특별한 출입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지역에 설정된 조사구.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통하여 채용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특별조사구

- 일반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없거나 출입이 제한된 시설에 설정된 조사구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시설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지정된 조사담당자가 시설내의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OMR조사표에 조사.

단, 재외공관(외무부)은 OMR조사표를 이용하여 자계식으로 조사.

8. 조사 사항

가. 일반조사구

○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전수조사구의 10%)를 사용하여 조사

* 전수조사항목(17개 항목)

• 가구원에 관한 사항(7개) :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종교, 교육정도, 혼인 상태

• 가구에 관한 사항(5개) : 처치의 종류, 가구구분, 점유형태,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 주택에 관한 사항(5개) :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편익시설수

* 표본조사항목(28개 항목 : 전수조사항목 17개 + 표본조사항목 11개)

• 가구원에 관한 사항(9개) : 출생지, 5년전 거주지,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이용교통 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 가구에 관한 사항(2개) : 임차료, 거주기간

나. 특별조사구

- 특별조사구의 특성에 따라 재외공관용 조사표, 군인·전경용 조사표, 교도소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

- * 재외공관 조사항목(8개항목)

- 성명,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종교, 본국주소

- * 군인·전경 조사항목(8개항목)

- 성명, 성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영의 거주 여부, 종교, 본가주소

- * 교도소 조사항목(8개항목)

- 성명, 성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형의 확정 여부, 종교, 본가주소

9. 조사결과의 활용

-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장·단기 계획 수립

- *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 성별 및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여 교육 계획, 노동력 수급 계획, 사회복지 계획, 병력 자원 수급, 인구정책 등의 수립에 활용.

- 각종 연구자료 및 경영정책 자료로 활용

-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기타 국제비교 자료로 활용

II. 조사 대상

1. 외 무 부

가. 기본 방향

- 재외공관별로 조사한다.
- 재외공관용 조사표를 사용한다.

나. 조사 대상

- 재외공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을 조사한다(가족 포함).
- 외국 현지에서 고용한 우리나라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단, 한국에서 채용하여 재외주재 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은 조사한다.
- 파견된 무관도 현지 공관에서 조사한다.
 - * 단, 해외 군사교육을 위해 파견된 군인은 외무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조사한다.

2. 국 방 부

가. 기본 방향

- 중대, 학교, 병원, 합정단위로 조사한다.
- 국방부, 합참본부, 통합사령부 등은 군별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 조사표 작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각 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 집계표는 대대 이상, 즉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등 각 단계별로 취합 작성하며 해군, 공군도 이에 준한다.

나. 조사 대상

모든 정규 군인(영내·외 거주 불문)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조사한다.

- 휴가, 출장(해외출장 포함)중인 군인은 소속부대에서 조사한다.
-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자도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조사한다.

- 해외 군사교육을 위해 파견된 군인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조사한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파견된 무관은 외무부에서 조사한다.
 - * 해외에 평화유지군 등으로 파견된 군인도 조사한다.
 - * 해외 일반대학(원)에 유학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전속 이동 중인 군인은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 * 10월 31일 이전에 출발한 군인은 전입부대에서 조사하고 11월 1일 이후에 이동하는 군인은 전출부대에서 조사한다.
 - * 10월 31일 이전에 전속 발령을 받았지만 11월 1일 이후에 출발하는 군인은 전출부대에서 조사한다.
 - 전역 또는 제대 특명을 받고 11월 1일 이후에 소속되었던 부대를 떠나는 사람은 제대 전 부대에서 조사한다.
 - 11월 1일 현재 타부대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교육대, 하사관 학교 등에 입교한 군인은 파견된 부대 또는 입교부대에서 조사한다.
 - 군에 입영하는 사람으로서 10월 31일 이전에 수용대에 입소한 사람은 수용대에서 조사하고, 11월 1일 이후에 수용대에 입소한 사람은 본가에서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가 안되었을 경우에만 조사한다. 다만, 10월 31일 이전에 입소하였다더라도 신체 검사 불합격으로 10월 31일 이전에 귀가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는다.
 - 논산훈련소, 해군 교육단 등 군부대에 입영하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도 국방부에서 조사한다.
 - 군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자는 현재 수감된 장소에서 조사한다.
 - 11월 1일 현재 일보가 삭제되지 않은 휴가, 미귀자, 무단이탈자, 영장처분자(징계처분자), 의무실 입실자 등은 원 소속부대에서 조사한다. 단,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자는 병원에서 조사한다.
 - 10월 31일 이전에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조사기간내에 귀항하지 못할 함정 승무원은 출발전에 미리 조사한다.
 - 국방부, 합참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등 3군이 함께 근무하는 곳은 군별로 분리 조사한다.
-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자택(일반조사구)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음

- ① 군부대에서 동원 훈련중인 예비군
- ② 군부대에서 훈련 또는 소집중인 방위병
- ③ 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기능요원, 연구요원

3. 법 무 부

가. 기본 방향

-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분류심사원 및 경비교도 단위로 조사한다.
- 재소자는 교도소용 조사표, 경비교도는 군인·전경용 조사표를 사용한다.
- 교도소용 조사표는 기결과 미결을, 군인·전경용 조사표는 영내·영외 거주 여부를 확인 표시한다.

나. 조사 대상

- '95년 11월 1일 0시 현재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자는 기결이든 미결이든 모두 조사해야 한다.
- * 수용중인 외국인도 모두 조사한다(외국인용 조사표 사용).
-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가 어린아이와 대동하고 있을 경우, 이 어린아이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조사한다.
- 호송중인 수형자, 피감호자 또는 원생은 출발한 날이 10월 31일 이전일 때에는 받는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11월 1일 이후에는 보내는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조사한다.
- 10월 31일 이전에 석방 또는 퇴원키로 확정된 사람이라도 11월 1일 현재 수용중인 사람은 교도소, 소년원에서 조사한다.
- 수용 중에 도주한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다.

4. 경 찰 청

가. 기본 방향

- 경찰서 및 중대 단위로 조사한다.
- 전투경찰순경은 배치된 경찰서 단위 또는 중대 단위로 조사한다.

- 경찰서 보호실 유치인 및 대용감방 수용자와 전투경찰순경은 구분하여 교도소용 조사표 또는 군인·전경용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 대상

- 전투경찰순경, 경찰대학생(4년제) 및 경찰간부후보생(1년제) (군인·전경용조사표 사용)
 - *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찰대학생(4년제) 및 경찰간부후보생(1년제) 은 소속 단위부대에서 조사한다. 단, 경찰서, 경찰대학교, 경찰학교 등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치 기관 또는 중대 단위로 조사한다.
 - * 경찰대학생(4년제) 및 경찰간부후보생(1년제)은 학교에서 조사한다. 그러나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교육 등을 받기 위해 입교한 경찰관은 자기집에서 조사한다.
 - * 논산훈련소, 해군 교육단 등 군부대에 입영하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은 국방부에서 조사한다.
 - * 해양경찰의 경우 조사 기준일 전에 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출항 예정인 경비정 승무원으로서, 조사 기간내에 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월 31일 이전이라도 출항전에 조사를 한다.
 - * 해안 및 도서경비대에 근무하는 일반 경찰은 자택에서 조사한다.
 - * 승선 경찰관은 자택에서 조사한다.

○ 경찰서 유치인

'95년 11월 1일 0시 현재 경찰서에 유치중인 자는 모두 조사한다(교도소용 조사표 사용).

- *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공통 사항

- 논산훈련소, 해군교육단 등 군부대에 위탁교육 중인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는 국방부에서 조사한다.
- * 교육(훈련)을 마치고 법무부나 경찰청에 진출되는 날자가 10월 31일 이전일 때는 배치된 법무부, 경찰청에서 조사한다(11월 1일 이후일 때는 국방부에서 조사).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 방법

- 본조사는 단위 기관(단위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등)별로 조사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OMR조사표에 기입하는 타계식 조사방법으로 하며 조사표 1매당 10명씩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앞뒤 각 5명).
* 재외공관용 조사표는 5명씩 조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육·해·공군, 전투경찰순경, 경찰간부후보생, 법무부의 경비교도는 군인·전경용 조사표를 작성하고,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분류심사원 및 경찰서 유치인은 교도소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 재외 공관원은 재외 공관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2. 조사표 기입시 주의사항

- OMR조사표는 반드시 배부된 컴퓨터용 흑색 2B연필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접거나 오손하여서는 안된다.
- 각 항목마다 마크와 내용검사를 철저히 하여 기입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 조사해야 하며, 비치되어 있는 인사기록 카드 등을 보고 작성해서는 안된다.
- 잘못 기재된 조사표를 지우개로 지웠을 때에는 그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워 털어낸 후에 다시 기입한다.

3. 조사표 기입

군인·전경용, 교도소용조사표

가. 조사표 난의 사항

① 조사구명(기관명)

국방부 특별조사구는 지정된 단위 부대명(○○사단 ○○연대 ○○대대 ○○중대), 법무

부는 교도소 또는 소년원의 명칭, 경찰청은 단위기관의 명칭(○○ 경찰서, ○○중대)을 기입한다.

② 조사표 매수

조사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사표의 총매수와 해당 조사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해당 조사표의 일련번호를 마크한다.

③ 조사담당자

실지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직위와 성명을 조사표 각장마다 2B연필로 기입한다.

나. 조사표 안내 사항

①~② 이름 및 성별

1 2 이름 및 성별		1 홍길동	
현재 이 조사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남·여 해당란에 마크한다.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input type="checkbox"/>

○ 기입순서는 계급순, 연령순, 호실순 등 조사편의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2B연필로 기입한다.

○ 해당되는 남·여란에 정확히 마크한다.

③ 나 이

3 나 이 •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세는 나이, 띠, 출생년월일을 조사합니다. • 세는 나이와 띠를 물어 마크합니다. • 출생년도와 실제로 쇠는 생일을 물어 마크하고, 양력·음력 해당란에 마크합니다.	세는 나이	십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띠	취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잔나비 닭 개 돼지		
		출생년월일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십	1 2 3	
		일	0 1 2 3 4 5 6 7 8 9	
	양력·음력구분		1. 양력 <input type="checkbox"/>	2. 음력 <input type="checkbox"/>

○ 먼저 세는 나이를 묻고 마크한다.
○ 다음은 띠를 묻고 마크한다.
○ 세번째는 실제의 출생년월일을 묻고 양력인가 음력인가를 표시한다.
○ 특히 노인중에서는 출생년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띠에 의하여 출생년도를 환산하여 마크하도록 한다.

* '0'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교육정도

<p>4 교육 정도</p> <p>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는지를 물어 해당란에 마크합니다.</p>	<table style="width: 100%;"> <tr> <td>1. 안받았음 <input type="checkbox"/></td> <td>3. 중학교 <input type="checkbox"/></td> <td rowspan="4"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 ⇨</td> <td>1. 졸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r> <tr> <td>2.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td> <td>5. 전문대 <input type="checkbox"/></td> <td>2. 재학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4. 고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d>7. 대학원 <input type="checkbox"/></td> <td>3. 휴학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6. 대학(교) <input type="checkbox"/></td> <td></td> <td>4. 중퇴 <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1. 안받았음 <input type="checkbox"/>	3.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 ⇨	1. 졸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5. 전문대 <input type="checkbox"/>	2. 재학 <input type="checkbox"/>	4. 고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3. 휴학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4. 중퇴 <input type="checkbox"/>	
1. 안받았음 <input type="checkbox"/>	3.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 ⇨	1. 졸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5. 전문대 <input type="checkbox"/>		2. 재학 <input type="checkbox"/>												
4. 고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3. 휴학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4. 중퇴 <input type="checkbox"/>												

○ 응답자가 다닌 최종학교의 학력을 말한다.

○ 주간·야간 관계없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각급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말한다. 단 입시학원과 타자, 경리, 부기 및 운전기술학원 등은 정규 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규 교 육	정규교육으로 보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학교(공민학교 포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 • 고등학교(구제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특수학교 포함) • 초급·전문대학(초급대학, 구제전문학교 포함) • 대학(교)(각군 사관학교, 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 • 검정고시 합격자 중입 검정고시 합격 ⇨ 국졸로 인정 고입 검정고시 합격 ⇨ 중졸로 인정 대입 검정고시 합격 ⇨ 고졸로 인정 • 독학사 학위 취득자 ⇨ 대졸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미용학원 • 타자·경리·부기학원 • 재수생을 위한 입시학원 • 기술(정비)학원 • 직업훈련원 •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학원 • 노인대학, 주부대학 등 • 평생교육원 • 검정고시 시험준비 중인것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독학사 학위취득 시험준비중인 것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 이상을 말한다.

교육 상태

○ 교육상태(졸업, 재학, 휴학, 중퇴)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휴학은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복학할 예정인 경우에 해당된다.

- 대학원인 경우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는 졸업에 해당되며, 학위 취득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논문을 준비중인 경우에는 재학에 해당된다.

⑤ 혼인상태

5	혼인상태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물어 해당란에 마크합니다.	1. 미혼 2. 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사별 4. 이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한다. 모든 사람에게 묻고 해당되는 난에 마크한다.

- 「1. 미혼」: 지금까지 혼인(결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 「2. 배우자 있음」: 혼인(결혼)하여 현재 배우자(처 또는 남편)가 있는 사람
* 재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3. 사별」: 혼인(결혼)하였으나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 해방전 또는 6.25사변때 배우자(처 또는 남편) 중 어느 한쪽이 실종 또는 납치된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별에 포함된다.
- 「4. 이혼」: 혼인후 배우자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포함된다.

⑥ 영외거주여부 (군인·전경용 조사표)

6	영외거주여부	
		1. 영외거주 2. 영내거주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이 난은 육·해·공군, 전투경찰순경,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에 대

- 하여 영외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 「영외거주」라 함은 영내를 벗어나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대에 출·퇴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영내에 잠시 거주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영외거주로 본다.
 - 「영내거주」라 함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영내에서 기거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영내거주로 본다.
① 군부대내 B.O.Q에서 생활하는 독신장교

- ② 부대밖에 방을 얻어 놓고 있으나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장교 또는 하사관
- ③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서 관사에 기거하는 단위기관(또는 부대)의 장

⑥ 형의 확정여부 (교도소용 조사표)

<p>6 형의 확정여부</p> <p>형의 확정여부를 물어 해당란에 마크한다.</p>	<p>1. 기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미결 <input type="checkbox"/></p> <p style="margin-left: 40px;">↓ ↓</p> <p style="margin-left: 40px;">단신자 가족동거자</p> <p style="margin-left: 40px;"><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	---

○ 이 난은 경찰서 보호실,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는 항목이다.

- 기결·미결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난에 마크한다.
- 미결일 경우에는 입소 또는 유치전에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 또는 가족이 없이 혼자서 살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여 해당되는 난에 마크한다.
- 「단신자」란 현재 가족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동거자」란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입소 또는 유치전의 거주지에서 현재도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종교

<p>7 종교</p> <p>· 종교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종교의 종류를 물어 해당란에 마크합니다.</p>	<p>1. 있음 2. 없음</p> <p style="margin-left: 40px;">↓ ↓</p> <p>① 불교 <input type="checkbox"/> ② 개신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천주교 <input type="checkbox"/></p> <p>④ 유교 <input type="checkbox"/> ⑤ 원불교 <input type="checkbox"/> ⑥ 천도교 <input type="checkbox"/></p> <p>⑦ 대종교 <input type="checkbox"/> ⑧ 대순진리회 <input type="checkbox"/> ⑨ 그밖의종교 <input type="checkbox"/></p>
--	---

○ 믿고 있는 종교가 있으면 질문하여 해당되는 종교란에 마크하고, 믿고 있는 종교가 없으면 「없음」에 마크한다.

-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수계, 세례, 영세 또는 입교 등의 의식을 행한 사람과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갖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 종교단체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교 신도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모나 가족의 구성원이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여 당사자도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해서는 안된다.
- * 부모가 종교를 믿고 있다고 자녀도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는 안된다.

참 고

- ① 불 교 : 수계(受戒)받은 사람은 물론 절에 다니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② 개신교(기독교) :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③ 천 주 교 : 영세를 받은 사람은 물론 성당(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④ 유 교 : 향교(鄕校), 서원(書院) 등의 제향(祭香)에 참석하거나 유도회(儒道會)나 유림(儒林)에 가입한 자 또는 일상생활에서 유교적 법도를 철저히 따르고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 ⑤ 원 불 교 : 법신불일원상(法身佛一圓相)의 진리를 믿는 자로서 득도식을 거쳤거나 또는 원불교당에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 ⑥ 천 도 교 :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을 종지(宗旨)로 입교식(入教式)을 행하였거나 또는 천도교당에 다니는 사람이 해당된다.
- ⑦ 대 종 교 : 단군한백검을 믿고 참교(參教)를 받은 사람은 물론 대종교 교당에 다니는 사람도 해당된다.
- ⑧ 대순진리회 : 증산 상제를 믿고 입도의식을 필한 자로서 도규를 준수하여 수도의식을 계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⑨ 그밖의 종교 : 태종교, 천리교, 성덕도, 한얼교, 이슬람교 등 상기 이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해당된다.

⑧ 본가의 주소

<p>8 본가 주소</p> <p>가족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 소재지의 시도를 물어 마크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명을 물어 기입한 후, 행정구역 부호를 찾아 마크합니다.</p> <p>※ 가족이 없는 경우 입소전 상주지를 물어 시군구 및 읍면동란에 기입한 후 행정구역 부호를 찾아 마크합니다.</p>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북	경남	제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전주시 덕진구						
	읍면동	송천동						
	시	백	0	1	2	3	4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	군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	십	0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	일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	읍	0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호	면	6	7	8	9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	일	0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입영 또는 수감 당시의 거주지 주소를 기입한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입영 또는 수감 당시의 행정구역이 현재와 다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기준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시부의 경우에는 행정동,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동명(관할 동사무소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예) 관악구 봉천동 : 법정동
관악구 봉천3동 : 행정동
-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던 자는 입영 또는 수감 당시의 거주지 주소를 기입한다.

○ 본가 주소의 시도는 해당 시도에 마크하고 시군구, 읍면동 명칭을 기입란에 기재한후 부록의 행정구역부호 일람표에서 해당되는 부호를 찾아 마크한다.

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시도란에는 에 마크하고, 시군구란에는 일반시와 구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 덕진구에 해당되는 부호 『012』를 마크하고, 읍면동란에는 송천동에 해당하는 부호 『64』를 마크한다 (부록 행정구역부호 일람표 참조).

※ 읍면동 행정구역번호까지 마크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 마크해야 한다.

재외 공관용 조사표

가. 조사표 난외 기입 사항

① 가구번호

- 재외공관내에서 가구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가구에 속한 종업원은 동거인으로 조사한다. 단, 가구로 형성되지 않은 소속 직원은 대표자 1명을 가구주로 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동거인으로 한다.

② 가구원수

가구별 총인원수를 기입하고 마크한다.

③ 재외공관

주소 재외공관주소를 기입하고 해당기관에 마크한다.

예) 하와이 영사관 ➡ 영사관 주소를 기입하고 에 마크한다.

④ 가구당조사표 매수증 일련번호

가구별로 소요된 총조사표 매수를 기입하고 이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예) 가구원수가 7명인 경우 첫째장에는 2매중 1매, 둘째장에는 2매중 2매로 기입하고 마크한다.

나. 조사표 난내 기입 사항

①~② 이름 및 성별, ⑤ 교육정도, ⑥ 혼인상태, ⑦ 종교, ⑧ 본국의 주소

○ 군인·전경용 조사표 기입요령과 동일하다.

③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묻고 해당 되는 항을 확인하여 마크한다.

<p>3 가구주와의 관계</p> <p>· 가구주란 가구원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① 가구주</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가구주의 배우자</p> <p><input type="checkbox"/> ③ 자녀</p> <p><input type="checkbox"/> ④ 자녀의 배우자</p> <p><input type="checkbox"/> ⑤ 가구주의 부모</p> <p><input type="checkbox"/> ⑥ 배우자의 부모</p> <p><input type="checkbox"/> ⑦ 손자녀·그 배우자</p> <p><input type="checkbox"/>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p> <p><input type="checkbox"/> ⑨ 조부모</p> <p><input type="checkbox"/>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p> <p><input type="checkbox"/>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p> <p><input type="checkbox"/> ⑫ 기타 친인척</p> <p><input type="checkbox"/> ⑬ 기타 동거인</p>
---	---

○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 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구원이 가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구주가 된다.

* 가구주와의 관계에 ○표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예: 자녀, 부모 등)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사람(연장자 또는 대표자)을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⑬ 기타 동거인」에 ○표 한다.

○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는 가구주뿐만 아

나라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와 그 배우자’도 각각 해당된다.

- 「③ 자녀」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 「⑫ 기타 친인척」은 「③~⑪」이외의 친인척이 해당된다.

④ 나 이

<p>4 나 이</p> <p>•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세는 나이, 띠, 출생년월일을 조사합니다.</p> <p>• 세는 나이와 띠를 물어 해당란에 마크합니다.</p> <p>• 출생년도와 실제로 쇠는 생일을 물어 마크하고, 양력음력 해당란에 마크합니다.</p>	세는 나이	36 살	
	세는 나이	백	1
		십	0 1 2 3 4 5 6 7 8 9
	일	일	0 1 2 3 4 5 6 7 8 9
		띠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잔나비 닭 개 돼지
	출생년월일	1960년 10월 30일	
	출생년	백	19 18
		십	0 1 2 3 4 5 6 7 8 9
	년	일	0 1 2 3 4 5 6 7 8 9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십	1 2 3	
	일	0 1 2 3 4 5 6 7 8 9	
양력음력구분	양력 음력		

- 먼저 세는 나이를 묻고 기재한 후 해당되는 숫자란에 정확히 마크한다.
- 띠를 묻고 정확히 마크한다.
- 실제의 출생년월일을 질문하여 기재한 후 해당되는 숫자란에 마크한다.
*생년월일의 양·음력 구분 마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특히 노인중에서는 출생년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띠에 의하여 출생년도를 환산하여 기재한 후 마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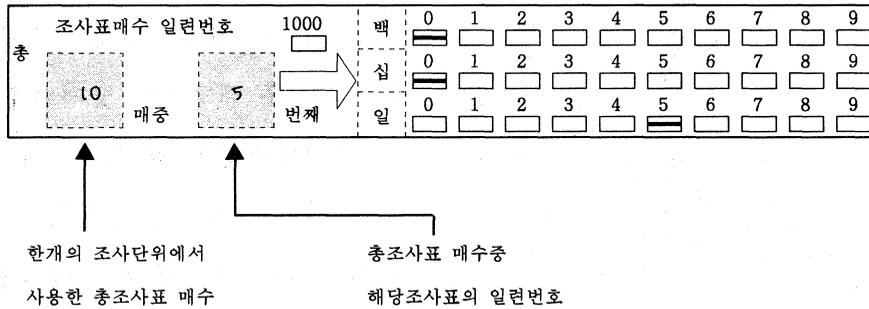
IV.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제출

1. 조사표 내용 검토

가. 난외사항

- 매조사표마다 조사구명(기관명), 조사표 매수표시와 조사자의 직위,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된 조사표가 없도록 한다.
- 조사단위별로 OMR조사표 매수 일련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 조사표 매수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총조사표 매수 중 해당조사표의 일련 번호가 마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난내사항

① 성 명

- 일보상 누락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성 별

- 남·여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마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나 이

- 기재 사항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 마크는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교육정도

- 마크는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⑤ 혼인상태

- 마크는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⑥ 영외거주여부 (군인·전경용 조사표)

○ 개념 정의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난에 마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⑥ 형의 확정 여부 (교도소용 조사표)

○ 기결, 미결 중 어느 하나의 난에 마크되었는지 확인하고 미결에 마크되었을 경우 “단신자”, “가족동거자”중 반드시 어느 하나에 마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⑦ 종교

○ 「있음」에 해당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종교에 마크되었는지 확인한다.

○ 「없음」에 표시되었을 경우 종교항에 마크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⑧ 본가의 주소(재외공관용 조사표는 본국의 주소)

○ 시부의 경우 행정동까지, 군부의 경우 읍 또는 면까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행정구역 코드는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구가 있는 일반시인 경우 구를 기준으로 한 코드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에 시부호가 기입되어 있으면 구부호로 바꿔준다.

※ 재외공관용 조사표는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이 있음(영외거주여부 또는 형의 확정여부 없음)

○ 중복 마크 없이 정확히 마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2. 집계표 작성

가. 외무부

○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 작성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주재국별로 작성하여 조사표 맨위에 놓는다.

○ 집계표 작성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를 참조하여 외무부에서 재외공관 단위별로 인구수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국방부

○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 작성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중대에서 중대단위로 작성하고 중대별 조사표 맨위에 놓는다

(부대명은 ○○사단 ○○연대 ○○중대 등으로 쓴다).

○ 집계표 작성

집계표는 중대단위에서 작성한 조사표와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를 참조하여 부대별(즉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등)로 각 단계마다 작성 취합하며, 차하급 부대 집계표 1부를 첨부 제출한다.

다. 법 무 부

○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 작성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기관단위(구치소, 교도소, 소년원)로 작성한다.

○ 집계표 작성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에 의해 차상급 기관에서 집계표를 작성한다.

라. 경 찰 청

○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 작성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경찰서단위, 중대단위, 학교단위로 작성한다. 특별 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조사구단위(경찰서, 중대, 학교) 조사표 맨위에 놓는다.

○ 집계표 작성

조사구(경찰서, 중대, 학교)단위로 작성한 특별조사구 분류용카드를 보고 차상급기관 즉, 지방경찰청, 대대 등 각 단계마다 작성 취합하며 차하급부대 또는 기관의 집계표 1부를 첨부 제출한다.

3. 조사표 제출

가. 각 조사구의 조사담당관은 1995년 11월 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내용 기입에 누락, 오기 등이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표를 OMR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넣은 후 11월 15일까지 각 소속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OMR조사표는 조사표 일련번호순에 의해 정리한 후 그 위에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를 놓고 OMR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넣는다.

다. 해당 각부의 장관은 각 조사단위 책임자가 작성 제출한 조사표와 집계표에 의거 종합 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표와 함께 11월 2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MR조사표 작성 및 수정방법

(1) OMR 조사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2B연필로 기재 또는 마크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2) 마크할 때에는 □에 『』와 같이 굵고 진하게 좌측선과 우측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양호한 마크〉



〈불량한 마크〉



가늘거나
희미하게
짧은 경우



직선이외의
표시



좌측선과 우측선에서
2mm이상 벗어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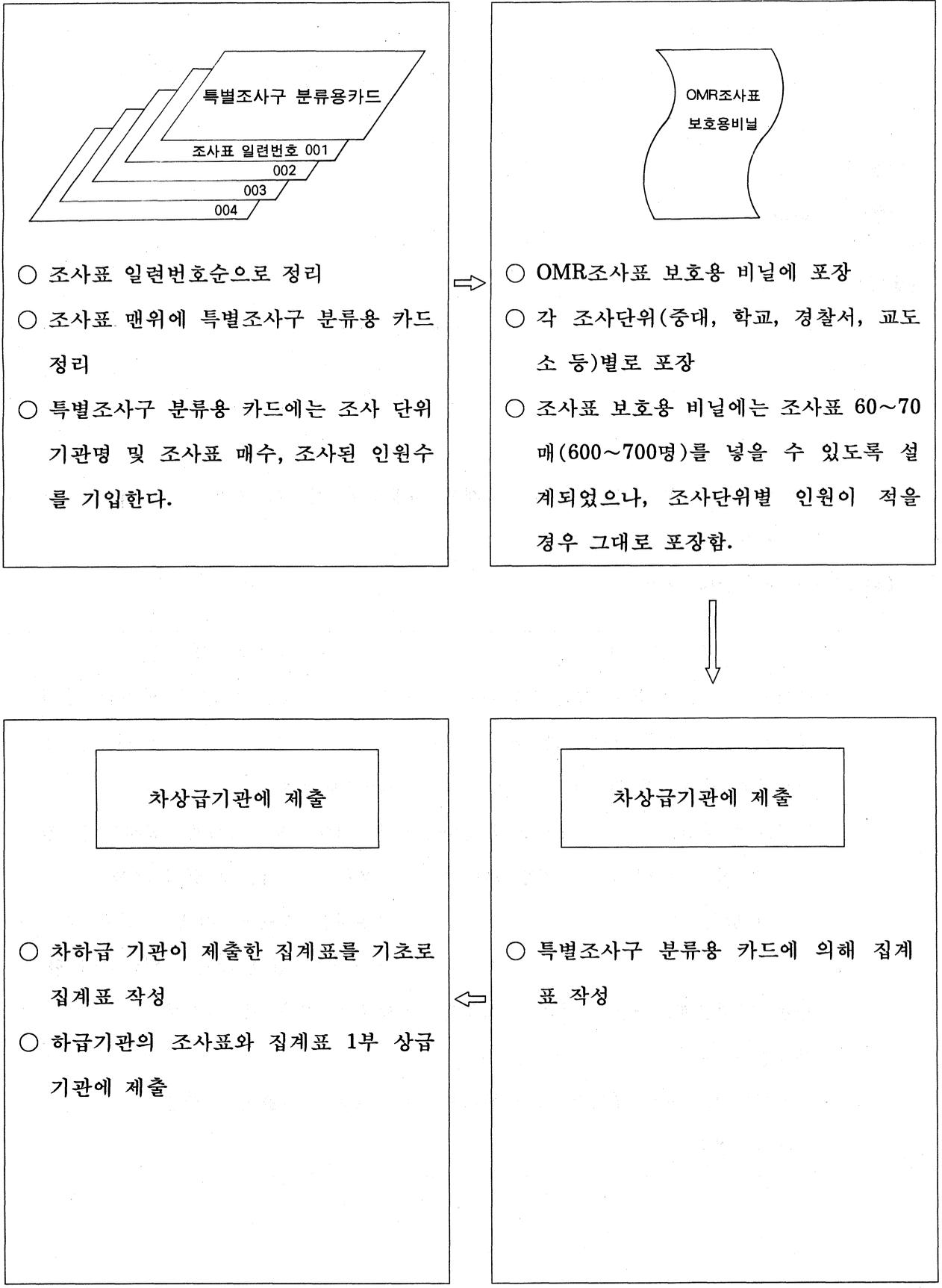
잉크·볼펜 등으로
표시한 경우

(3) 수정할 때에는 배부한 컴퓨터용 지우개를 사용하여 깨끗이 지우고, 지우개 흔적이나 가루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표 훼손상태 점검

점 검 사 항	처 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에 오물이 묻어 있는가를 확인 예) 기름,인주,밥풀,커피,빗물 등 • 조사표의 구겨짐과 찢어짐 • 조사표에 불필요하게 낙서되어 있거나 문자 및 숫자가 마크란을 침범하여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볼펜, 적색볼펜, 만년필 등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 지철기(스테플러), 테이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구겨지고 찢어져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조사표에 재작성 • 마크란에 불필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움 • 지우개를 사용할 때에는 연필 흔적이나 가루가 남지 않도록 털어내야 함 • 새로운 조사표에 재작성 • 새로운 조사표에 재작성

〈부록 1〉 특별조사구 조사표 정리방법



- 조사표 일련번호순으로 정리
- 조사표 맨위에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 정리
-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에는 조사 단위 기관명 및 조사표 매수, 조사된 인원수를 기입한다.

- OMR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포장
- 각 조사단위(중대, 학교, 경찰서, 교도소 등)별로 포장
- 조사표 보호용 비닐에는 조사표 60~70매(600~700명)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조사단위별 인원이 적을 경우 그대로 포장함.

차상급기관에 제출

- 차하급 기관이 제출한 집계표를 기초로 집계표 작성
- 하급기관의 조사표와 집계표 1부 상급기관에 제출

차상급기관에 제출

-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에 의해 집계표 작성

〈부록 2〉 행정구역 부호 일람표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11	서울특별시	57	원효로 2동	66	자양3동	51	성북1동
010	종로구	58	효창동	060	동대문구	52	성북2동
		59	용문동			53	동소문동
51	청운동	60	한강로1동	51	신설동	54	삼선1동
52	효자동	61	한강로2동			55	삼선2동
53	사직동	62	한강로3동	52	용두1동	56	동선1동
54	삼청동	63	이촌1동	53	용두2동	57	동선2동
55	부암동	64	이촌2동	54	계기1동	58	돈암1동
56	평창동	65	이태원1동	55	계기2동	59	돈암2동
57	무악동	66	이태원2동	56	전농1동	60	안암동
58	교남동	67	한남1동	57	전농2동	61	보문동
59	새종로동	68	한남2동	58	전농3동	62	정릉1동
60	가회동	69	서빙고동	59	전농4동	63	정릉2동
61	종로1·2가동	70	보광동	60	답십리1동	64	정릉3동
62	종로3·4가동	040	성동구	61	답십리2동	65	정릉4동
63	종로5·6가동			62	답십리3동	66	길음1동
64	이화동	51	왕십리1동	63	답십리4동	67	길음2동
65	혜화동	52	왕십리2동	64	답십리5동	68	길음3동
66	명륜3가동	53	도선동	65	장안1동	69	중암1동
67	창신1동	54	마장동	66	장안2동	70	중암2동
68	창신2동	55	사근동	67	장안3동	71	월곡1동
69	창신3동	56	행당1동	68	장안4동	72	월곡2동
70	승인1동	57	행당2동	69	청량리1동	73	월곡3동
71	승인2동	58	응봉동	70	청량리2동	74	월곡4동
020	중 구	59	금호1가동	71	회기동	75	상월곡동
		60	금호2가동	72	회경1동	76	장위1동
51	태평로1가동	61	금호3가동	73	회경2동	77	장위2동
52	소공동	62	금호4가동	74	이문1동	78	장위3동
53	남대문로5가동	63	옥수1동	75	이문2동	79	석관1동
54	회현동	64	옥수2동	76	이문3동	80	석관2동
55	명 동	65	성수1가1동	070	중랑구	090	강북구
56	충무로4·5가동	66	성수1가2동				
57	필 동	67	성수2가1동	52	면목2동	52	미아2동
58	장충동	68	성수2가2동	53	면목3동	53	미아3동
59	광희동	69	송정동	54	면목4동	54	미아4동
60	을지로3·4·5가동	70	용답동	55	면목5동	55	미아5동
61	신당1동	050	광진구	56	면목6동	56	미아6동
62	신당2동			57	면목7동	57	미아7동
63	신당3동	51	노유1동	58	면목8동	58	미아8동
64	신당4동	52	노유2동	59	상봉1동	59	미아9동
65	신당5동	53	화양동	60	상봉2동	60	번 1 동
66	신당6동	54	군자동	61	중화1동	61	번 2 동
67	황학동	55	중곡1동	62	중화2동	62	번 3 동
68	중림동	56	중곡2동	63	중화3동	63	수유1동
030	용산구	57	중곡3동	64	묵 1 동	64	수유2동
		58	중곡4동	65	묵 2 동	65	수유3동
51	후암동	59	능동	66	망우1동	66	수유4동
52	용산2가동	60	구의1동	67	망우2동	67	수유5동
53	남영동	61	구의2동	68	망우3동	68	수유6동
54	청파1동	62	구의3동	080	성북구	100	도봉구
55	청파2동	63	광장동				
56	원효로1동	64	자양1동	64	자양2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52	쌍문2동	65	신사1동	74	상암동	56	구로5동
53	쌍문3동	66	신사2동	150	양천구	57	구로6동
54	쌍문4동	67	증산동			58	구로본동
55	방학1동	68	수색동	51	목 1 동 목 2 동 목 3 동 목 4 동 목 5 동 목 6 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신정6동 신정7동	59	가리봉1동
56	방학2동	69	진관내동	60		가리봉2동	
57	방학3동	70	진관외동	61		고척1동	
58	방학4동	130	서대문구	62		고척2동	
59	창창 1 동			51		충정로동	63
60	창창 2 동	52	천연동	54		개봉2동	
61	창창 3 동	53	현저동	55		개봉3동	
62	창창 4 동	54	북아현1동	56		개봉본동	
63	창창 5 동	55	북아현2동	57		오류1동	
64	도봉1동	56	북아현3동	58		오류2동	
65	도봉2동	57	대신동	59		수궁동	
110	노원구	58	창천동	60		180 금천구	
51	월계1동	59	연희1동	61			가산동
52	월계2동	60	연희2동	62			독산1동
53	월계3동	61	연희3동	63	독산2동		
54	월계4동	62	홍제1동	64	독산3동		
55	공릉1동	63	홍제2동	65	독산4동		
56	공릉2동	64	홍제3동	66	독산본동		
57	하계1동	65	홍제4동	67	시흥1동		
58	하계2동	66	홍은1동	68	시흥2동		
59	중계1동	67	홍은2동	69	시흥3동		
60	중계2동	68	홍은3동	70	시흥4동		
61	중계3동	69	남가좌1동	51	시흥5동		
62	중계4동	70	남가좌2동	52	시흥본동		
63	중계5동	71	북가좌1동	53	190 영등포구		
64	상계1동	72	북가좌2동	54		화곡본동	
65	상계2동	140	마포구	55		화곡1동	
66	상계3동			51		아현1동	56
67	상계4동	52	아현2동	57		화곡3동	
68	상계5동	53	아현3동	58		화곡4동	
69	상계6동	54	공덕1동	59		화곡5동	
70	상계7동	55	공덕2동	60		화곡6동	
71	상계8동	56	신공덕동	61		화곡7동	
72	상계9동	57	도화1동	62		화곡8동	
73	상계10동	58	도화2동	63		가양1동	
120	은평구	59	용강동	64		가양2동	
51	녹번동	60	용흥동	65		가양3동	
52	불광1동	61	염리동	66		발산1동	
53	불광2동	62	노고산동	67	발산2동		
54	불광3동	63	신수동	68	공항동		
55	갈현1동	64	창전동	69	방화1동		
56	갈현2동	65	상수동	70	방화2동		
57	구산동	66	서교동	71	방화3동		
58	대조동	67	동교동	72	과해동		
59	응암1동	68	합정동	170	구로구		
60	응암2동	69	망월1동	51	신도림동		
61	응암3동	70	망월2동	52	구로1동		
62	응암4동	71	연남동	53	구로2동		
63	역촌1동	72	성산1동	54	구로3동		
64	역촌2동	73	성산2동	55	구로4동		
						70	대림1동
						71	대림2동
						72	대림3동
						200	동작구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51	노량진1동	55	잠원동	62	송파2동	51	동대신1동
52	노량진2동	56	반포본동	63	석촌동	52	동대신2동
53	상도1동	57	반포1동	64	삼전동	53	동대신3동
54	상도2동	58	반포2동	65	가락본동	54	서대신1동
55	상도3동	59	반포3동	66	가락1동	55	서대신2동
56	상도4동	60	반포4동	67	가락2동	56	서대신3동
57	상도5동	61	방배본동	68	문정1동	57	서대신4동
58	본동	62	방배1동	69	문정2동	58	부용동
59	후석1동	63	방배2동	70	잠실본동	59	부민동
60	후석2동	64	방배3동	71	잠실1동	60	토성동
61	후석3동	65	방배4동	72	잠실2동	61	아미1동
62	동작동	66	양재1동	73	잠실3동	62	아미2동
63	사당1동	67	양재2동	74	잠실4동	63	초장동
64	사당2동	68	내곡동	75	잠실5동	64	충무동
65	사당3동			76	잠실6동	65	남부민1동
66	사당4동	230	강남구	77	잠실7동	66	남부민2동
67	사당5동					67	남부민3동
68	대방동	51	신사동	250	강동구	68	암남동
69	신대방1동	52	논현1동	51	하일동	030	동 구
70	신대방2동	53	논현2동	52	상일동	51	초량1동
210	관악구	54	압구정1동	53	명일1동	52	초량2동
		55	압구정2동	54	명일2동	53	초량3동
51	봉천본동	56	청담1동	55	고덕1동	54	초량4동
52	봉천1동	57	청담2동	56	고덕2동	55	초량6동
53	봉천2동	58	삼성1동	57	암사1동	56	수정1동
54	봉천3동	59	삼성2동	58	암사2동	57	수정2동
55	봉천4동	60	대치1동	59	암사3동	58	수정3동
56	봉천5동	61	대치2동	60	암사4동	59	수정4동
57	봉천6동	62	대치3동	61	천호1동	60	수정5동
58	봉천7동	63	대치4동	62	천호2동	61	좌천1동
59	봉천8동	64	대역삼1동	63	천호3동	62	좌천2동
60	봉천9동	65	역삼2동	64	천호4동	63	좌천3동
61	봉천10동	66	도곡1동	65	성내1동	64	좌천4동
62	봉천11동	67	도곡2동	66	성내2동	65	범일1동
63	남현동	68	개포1동	67	성내3동	66	범일2동
64	신림본동	69	개포2동	68	길 1 동	67	범일4동
65	신림1동	70	개포3동	69	길 2 동	68	범일5동
66	신림2동	71	개포4동	70	둔촌1동	69	범일6동
67	신림3동	72	일원본동	71	둔촌2동		
68	신림4동	73	일원1동	21	부산광역시	040	영도구
69	신림5동	74	일원2동	010	중 구	51	대교동
70	신림6동	75	수서동	51	중앙동	52	대평동
71	신림7동	76	세곡동	52	동광동	53	남향동
72	신림8동	240	송파구	53	대청동	54	영선1동
73	신림9동	51	풍납1동	54	보수1동	55	영선2동
74	신림10동	52	풍납2동	55	보수2동	56	신선1동
75	신림11동	53	거여1동	56	부평동	57	신선2동
76	신림12동	54	거여2동	57	광복동	58	신선3동
77	신림13동	55	마천1동	58	남포동	59	봉래1동
220	서초구	56	마천2동	59	영영주1동	60	봉래2동
51	서초1동	57	방이1동	60	영영주2동	61	봉래3동
52	서초2동	58	방이2동			62	봉래4동
53	서초3동	59	오륜동	020	서 구	63	청학1동
54	서초4동	60	오금동			64	청학2동
		61	송파1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65	동삼1동	53	대연3동	55	당리동	59	연산5동
66	동삼2동	54	대연4동	56	하단1동	60	연산6동
67	동삼3동	55	대연5동	57	하단2동	61	연산7동
050	부산진구	56	대연6동	58	신평1동	62	연산8동
51	부전1동	57	용호1동	59	신평2동	63	연산9동
52	부전2동	58	용호2동	60	장림1동	140	수영구
53	범전동	59	용호3동	61	장림2동	51	남천1동
54	범연지동	60	용호4동	62	다대1동	52	남천2동
55	초읍동	61	용당동	63	다대2동	53	수영동
56	양정1동	62	감만1동	64	구평동	54	망미1동
57	양정2동	63	감만2동	65	감천1동	55	망미2동
58	양정3동	64	우암1동	66	감천2동	56	광안1동
59	양정4동	65	우암2동	110	금정구	57	광안2동
60	전포1동	66	문현1동	51	서 1 동	58	광안3동
61	전포2동	67	문현2동	52	서 2 동	59	광안4동
62	전포3동	68	문현3동	53	서 3 동	60	민락동
63	전포4동	69	문현4동	54	서 4 동	150	사상구
64	부암1동	70	문현5동	55	금사동	51	삼락동
65	부암2동	080	부 구	56	오륜동	52	모라1동
66	부암3동	51	구포1동	57	부곡1동	53	모라2동
67	당감1동	52	구포2동	58	부곡2동	54	모라3동
68	당감2동	53	구포3동	59	부곡3동	55	덕포1동
69	당감3동	54	금곡동	60	부곡4동	56	덕포2동
70	당감4동	55	화명동	61	장전1동	57	패법동
71	가야1동	56	덕천1동	62	장전2동	58	감천1동
72	가야2동	57	덕천2동	63	장전3동	59	감천2동
73	가야3동	58	덕천3동	64	선 동	60	주례1동
74	개금1동	59	만덕1동	65	두 구동	61	주례2동
75	개금2동	60	만덕2동	66	노포동	62	주례3동
76	개금3동	61	만덕3동	67	청용동	63	학장동
77	범천1동	090	해운대구	68	남산동	64	엄궁동
78	범천2동	51	우 1 동	69	구서1동	160	기장군
79	범천4동	52	우 2 동	70	구서2동	11	기장읍
060	동래구	53	중 1 동	71	금성동	12	장안읍
51	수민동	54	중 2 동	120	강서구	31	일광면
52	수복산동	55	중 좌 동	51	대저1동	32	정관면
53	명륜1동	56	송정동	52	대저2동	33	철마면
54	명륜2동	57	송반여1동	53	강동동	22	대구광역시
55	온천1동	58	반여2동	54	명지동	010	중 구
56	온천2동	59	반여3동	55	가락동	51	동인1·2가동
57	온천3동	60	반석대동	56	녹산동	52	동인3가동
58	사직1동	61	반송1동	57	천가동	53	동인4가동
59	사직2동	62	반송2동	130	연제구	54	삼덕1·2가동
60	사직3동	63	반송3동	51	거제1동	55	삼덕3가동
61	안락1동	64	재송1동	52	거제2동	56	봉산동
62	안락2동	65	재송2동	53	거제3동	57	동성동
63	명장1동	100	사하구	54	거제4동	58	서성동
64	명장2동	51	괴정1동	55	연산1동	59	남성동
070	남 구	52	괴정2동	56	연산2동		
51	대연1동	53	괴정3동	57	연산3동		
52	대연2동	54	괴정4동	58	연산4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60	북성동	66	평리5동	060	수성구	23	인천광역시
61	달성동	67	평리6동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황금1동 황금2동	010	중 구
62	대신1동	68	상리동			51	중앙동
63	대신2동	69	중리동			52	연안동
64	남산1동	70	원대1·2가동			53	신포동
65	남산2동	71	원대3가동			54	신선동
66	남산3동	040	남 구			55	신선동
67	남산4동					56	도원동
68	대봉1동	51	이천1동			57	울목동
69	대봉2동	52	이천2동			58	내경동
020	동 구	53	봉덕1동			59	인현동
		54	봉덕2동			60	북성동
51	신암1동	55	봉덕3동	61	송월동		
52	신암2동	56	대명1동	62	송영동		
53	신암3동	57	대명2동	63	용유동		
54	신암4동	58	대명3동	020	동 구		
55	신암5동	59	대명4동				
56	신천1동	60	대명5동				
57	신천2동	61	대명6동				
58	신천3동	62	대명7동				
59	신천4동	63	대명8동				
60	효목1동	64	대명9동				
61	효목2동	65	대명10동				
62	평광동	66	대명11동				
63	블로·봉무동	050	북 구			070	달서구
64	도동					51	성상1동
65	지저동	52	성당2동	52	성당2동		
66	입석동	53	고성동	53	두류1동		
67	검사동	54	칠성1가동	54	두류2동		
68	방촌동	55	칠성2가1동	55	두류3동		
69	둔산·부동	56	칠성2가2동	56	성서1동		
70	신평동	57	침산1동	57	성서2동		
71	공산1동	58	침산2동	58	성서3동		
72	공산2동	59	침산3동	59	성서4동		
73	안심1동	60	노원1·2가동	60	본리동		
74	안심2동	61	노원3가1동	61	월배1동		
75	안심3동	62	노원3가2동	62	월배2동		
76	안심4동	63	산격1동	63	월배3동		
030	서 구	64	산격2동	64	월배4동		
		65	산격3동	65	월배5동		
51	내당1동	66	산격4동	66	월배6동		
52	내당2동	67	복현1동	67	송현1동		
53	내당3동	68	복현2동	68	송현2동		
54	내당4동	69	대현1동	69	송현3동		
55	비산1동	70	대현2동	080	달성군		
56	비산2동	71	대현3동				
57	비산3동	72	검단동				
58	비산4동	73	무태동				
59	비산5동	74	조야동				
60	비산6동	75	노곡동				
61	비산7동	76	칠곡1동				
62	평리1동	77	칠곡2동				
63	평리2동	78	칠곡3동				
64	평리3동		관음동				
65	평리4동		태전동				
11	회원읍			31	가창면		
31	가창면			32	다사면		
32	다사면			33	하빈면		
33	하빈면			34	옥포면		
34	옥포면			35	논공면		
35	논공면			36	현풍면		
36	현풍면			37	유가면		
37	유가면			38	구지면		
38	구지면			51	송의1동		
				52	송의2동		
				53	송의3동		
				54	송의4동		
				55	용현1동		
				56	용현2동		
				57	용현3동		
				58	용현4동		
				59	용현5동		
				60	학익1동		
				61	학익2동		
				62	도화1동		
				63	도화2동		
				64	도화3동		
				65	주안1동		
				66	주안2동		
				67	주안3동		
				68	주안4동		
				69	주안5동		
				70	주안6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71	주안7동	68	부개3동	32	송림면	55	서1동
72	주안8동	69	일신동	33	백령면	56	서2동
73	문학동	70	십정1동	34	대청면	57	월산1동
		71	십정2동	35	덕적면	58	월월산2동
040	연수구			36	자월면	59	월월산3동
		070	계양구	37	영흥면	60	월월산4동
51	옥련동			24	광주광역시	61	월월산5동
52	선학동	51	효성1동			62	백운1동
53	연수1동	52	효성2동	010	동 구	63	백운2동
54	연수2동	53	계산1동			64	주월1동
55	연수3동	54	계산2동	51	대금동	65	주월2동
56	칭학동	55	계산3동	52	충수동	66	효덕동
57	동춘1동	56	작전1동	53	대의동	67	송암동
58	동춘2동	57	작전2동	54	동명1동	68	송봉선1동
		58	작전3동	55	동명2동	69	송봉선2동
		59	서운동	56	계림1동	70	대촌동
050	남동구	60	계양1동	57	계림2동		
		61	계양2동	58	계림3동	040	북 구
51	구월1동			59	계산수1동	51	중흥1동
52	구월2동	080	서 구	60	산수2동	52	중흥2동
53	구월3동			61	산수3동	53	중흥3동
54	구월4동	51	검암동	62	지산1동	54	중유동
55	간석1동	52	경서동	63	지산2동	55	누문동
56	간석2동	53	연희동	64	남금동	56	북동
57	간석3동	54	가정1동	65	충금동	57	부임동
58	간석4동	55	가정2동	66	삼성동	58	신안동
59	만수1동	56	가정3동	67	서석동	59	용봉동
60	만수2동	57	신현동	68	학1동	60	동운1동
61	만수3동	58	석남1동	69	학2동	61	동운2동
62	만수4동	59	석남2동	70	학3동	62	동운3동
63	만수5동	60	석남3동	71	학운동	63	우산동
64	만수6동	61	원창동	72	지원동	64	풍향1동
65	상수동	62	가좌1동			65	풍향2동
66	서창동	63	가좌2동	020	서 구	66	문화동
67	도림동	64	가좌3동	51	양1동	67	문흥동
68	남촌동	65	가좌4동	52	양2동	68	두암1동
69	논현동	66	검단동	53	양3동	69	두암2동
70	고잔동			54	농성1동	70	두암3동
		090	강화군	55	농성2동	71	서산동
51	부평1동	11	강화읍	56	광천동	72	오치동
52	부평2동	31	선원면	57	유덕동	73	충효동
53	부평3동	32	불은면	58	상무1동	74	청옥동
54	부평4동	33	길상면	59	상무2동	75	장운동
55	부평5동	34	화도면	60	화정1동	76	본촌동
56	부평6동	35	양도면	61	화정2동	77	우치동
57	산곡1동	36	내가면	62	화정3동	78	삼소동
58	산곡2동	37	하점면	63	화정4동		
59	산곡3동	38	양사면	64	화서창동	050	광산구
60	산곡4동	39	송해면			51	송정1동
61	청천1동	40	교동면	030	남 구	52	송정2동
62	청천2동	41	삼산면	51	양림동	53	송정3동
63	갈산1동	42	서도면	52	방림1동	54	도산동
64	갈산2동			53	방림2동	55	신흥동
65	삼산동	100	옹진군	54	방사구동	56	용운동
66	부개1동					57	용운촌동
67	부개2동	31	북도면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58	우산동	65	용두1동	010	수원시	58	수진1동
59	월곡1동	66	용두2동			59	수진2동
60	월곡2동	67	오류동	011	장안구	60	단대동
61	비아출장소	68	태평1동			61	산성동
62	하남출장소	69	태평2동	51	신안동	62	양지동
63	임곡출장소	70	유천1동	52	화서1동	63	북정동
64	동곡출장소	71	유천2동	53	화서2동	64	신촌동
65	평동출장소	72	문화1동	54	과장동	65	고등동
66	삼도출장소	73	문화2동	55	울천동	66	시흥동
67	본량출장소	74	산성동	56	정자1동		
		75	산서동	57	정자2동	022	중원구
25	대전광역시			58	영화동		
		030	서구	59	송죽동		
010	동구			60	조원동	51	성남동
				61	연무동	52	중남동
51	원동	51	복수동			53	금광1동
52	인동	52	도마1동	012	권선구	54	금광2동
53	효동	53	도마2동			55	은행1동
54	신흥동	54	정림동	51	매교동	56	은행2동
55	판암1동	55	변동	52	세류1동	57	상대원1동
56	판암2동	56	용문동	53	세류2동	58	상대원2동
57	용운동	57	탄방동	54	세류3동	59	상대원3동
58	대동1동	58	삼천동	55	평동	60	여수동
59	대동2동	59	둔산동	56	서둔동		
60	자양동	60	괴정동	57	구운동	023	분당구
61	신안동	61	가장동	58	매산동		
62	소제동	62	갈마동	59	고등동	51	분당동
63	가양1동	63	월평1동	60	권선동	52	서당동
64	가양2동	64	월평2동	61	곡선동	53	수내동
65	용전동	65	가수원동	62	입북동	54	초림동
66	성남1동	66	기성동			55	내정동
67	성남2동			013	팔달구	56	정자동
68	홍도동	040	유성구			57	서현동
69	삼성1동			51	팔달동	58	이매동
70	삼성2동	51	진잠1동	52	남향동	59	매송동
71	정동	52	진잠2동	53	지동	60	야탑동
72	중동	53	은천1동	54	우만1동	61	중탑동
73	추동	54	은천2동	55	우만2동	62	하탑동
74	세천동	55	신성동	56	인계동	63	판교동
75	산내동	56	탄동	57	매탄1동	64	금곡동
		57	천민동	58	매탄2동	65	운중동
		58	구죽동	59	매탄3동		
020	중구	050	대덕구	60	매탄4동	030	의정부시
				61	원천동		
51	은행동	51	오정동	62	이의동	51	의정부1동
52	선화1동	52	대화동			52	의정부2동
53	선화2동	53	회덕1동	020	성남시	53	의정부3동
54	선화3동	54	회덕2동			54	의정부4동
55	목동	55	중리동	021	수정구	55	호원동
56	중촌동	56	중리동			56	장암동
57	대흥1동	57	신탄진동	51	신흥1동	57	신곡1동
58	대흥2동	58	석봉동	52	신흥2동	58	신곡2동
59	대흥3동	59	덕암동	53	신흥3동	59	송산동
60	문문창1동	60	덕암동	54	태평1동	60	자금동
61	문문창2동			55	태평2동	61	가능1동
62	석교동	31	경기도	56	태평3동	62	가능2동
63	대사동			57	태평4동	63	가능3동
64	대부동					64	녹양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040	안양시	65	중상 3 동	37	현덕면	52	식사동
		66	상 1 동	38	안중면	53	신신동
041	만안구	67	상 1 동	51	중양동	54	홍도동
51	안양1동	052	소사구	52	서부동	55	성사1동
52	안양2동			53	도원동	56	성사2동
53	안양3동	51	심곡본1동	54	지산동	57	효자동
54	안양4동	52	심곡본2동	55	송북동	58	신도동
55	안양5동	53	소사본1동	56	신장1동	59	창릉동
56	안양6동	54	소사본2동	57	신장2동	60	일산1동
57	안양7동	55	소사본3동	58	신평동	61	일산2동
58	안양8동	56	범박동	59	원평동	62	일산3동
59	안양9동	57	괴안동	60	통북동	63	풍산동
60	석수1동	58	역곡3동	61	비전1동	64	풍백석동
61	석수2동	59	송내1동	62	비전2동	65	마두1동
62	석수3동	60	송내2동	63	비전3동	66	마두2동
63	박달1동			64	세교동	67	주엽1동
64	박달2동	053	오정구	080	동두천시	68	주엽2동
042	동안구	51	성곡동	51	생연1동	69	장항동
		52	원중1동	52	생연2동	70	고양동
51	비산1동	53	원중2동	53	생연3동	71	관산동
52	비산2동	54	고강본동	54	생연4동	72	고봉동
53	비산3동	55	고정동	55	보산동	73	능곡동
54	부흥동	56	오정동	56	내행동	74	능곡동
55	달안동	57	신흥동	57	동안동	75	주정동
56	관양1동	060	광명시	58	소요동	76	행화동
57	관양2동			59	광암동	77	화전동
58	부림동	51	광명1동	60	광상패동	78	대덕동
59	평촌동	52	광명2동	090	안산시	79	대송동
60	평안동	53	광명3동	51	일사동	80	송산동
61	귀인동	54	광명4동	52	본오1동	110	과천시
62	호계1동	55	광명5동	53	본오2동	51	중앙동
63	호계2동	56	광명6동	54	부곡동	52	갈현동
64	호계3동	57	광명7동	55	월피동	53	별양동
65	범계동	58	철산1동	56	와동	54	부림동
66	신촌동	59	철산2동	57	고잔1동	55	과천동
67	갈산동	60	철산3동	58	고잔2동	56	문원동
050	부천시	61	철산4동	59	성포동	120	구리시
		62	하안1동	60	원곡본동	51	갈매동
051	원미구	63	하안2동	61	원곡1동	52	구동동
		64	하안3동	62	원곡2동	53	인창동
51	심곡1동	65	하안4동	63	초지동	54	교문1동
52	심곡2동	66	소하1동	64	공단동	55	교문2동
53	심곡3동	67	소하2동	65	선부1동	56	수택동
54	원미1동	68	학온동	66	선부2동	57	수평동
55	원미2동	070	평택시	67	선부3동	130	남양주시
56	소사동			68	반월동		
57	소역곡1동	11	팽성읍	69	대부동	11	와부읍
58	역곡2동	31	진위면	70	안산동	12	진접읍
59	춘의동	32	서탄면	71		13	화도읍
60	도당동	33	고덕면	100	고양시	31	별내면
61	약대동	34	오성면	51	주교동	32	퇴계원면
62	중동	35	청북면			33	진건면
63	중1동	36	포승면				
64	중2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34	수동면	51	천현동	14	법원읍	35	북면	
35	조안면	52	신장1동	31	월흥면	390	양평군	
36	오남면	53	신장2동	32	탄현면			
51	호평동	54	덕풍1동	33	교하면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체면 용문면 개군면	
52	평내동	55	덕풍2동	34	조리면			
53	금곡동	56	덕풍3동	35	광탄면			
54	양곡동	57	풍산동	36	파평면			
55	지금동	58	감북동	37	적성면			
56	도농동	59	춘궁동	38	군내면			
140	오산시	60	초이동	350	광주군			
51	중앙동	310	양주군	11	광주읍			
52	대원동	11	회천읍	31	오포면			
53	남촌동	31	주내면	32	초월면			
54	신장동	32	은현면	33	실촌면			
55	세마동	33	남면	34	도척면			
56	초평동	34	광적면	35	퇴촌면			
150	시흥시	35	백석면	36	남중면	400	이천군	
		36	장흥면	37	중부면			
51	대야동	320	여주군	360	연천군	11 12 13 31 32 33 34 35 36 37 38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울면	
52	신천동	11	여주읍	11	연천읍			
53	신현동	31	점동면	12	전곡읍			
54	은행동	32	가남면	31	군남면			
55	매화동	33	능서면	32	청산면			
56	북감동	34	홍천면	33	백화면			
57	군자동	35	금사면	34	미산면			
58	정왕동	36	산북면	35	왕징면			
59	과림동	37	대신면	36	신서면			
60	과연성동	38	북내면	37	중면			
160	군포시	39	강천면	38	장남면			410
		51	군포1동	330	화성군	370	포천군	
52	군포2동	11	태안읍	11	포천읍	11 12 31 32 33 34 35 36 37 38 39	용인읍 기흥읍 포곡면 모현면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외사면 내사면	
53	당정동	31	매송면	31	군내면			
54	산본1동	32	봉담면	32	내촌면			
55	산본2동	33	비봉면	33	가산면			
56	금정동	34	남양면	34	소홀면			
57	재궁동	35	마도면	35	신북면			
58	오금동	36	송산면	36	창수면			
59	수리동	37	서신면	37	영중면			
60	중내동	38	팔탄면	38	일동면			
61	광정동	39	장안면	39	이동면			
62	대야동	40	우정면	40	영북면			
170	의왕시	41	향남면	41	관인면	420	안성군	
		42	양감면	42	화현면			
51	고천동	43	정남면	380	가평군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안성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공도면 원곡면 일죽면	
52	부곡동	44	동탄면					
53	오전동	340	파주군	11	가평읍			
54	내손1동	11	금촌읍	31	설악면			
55	내손2동	12	문산읍	32	외서면			
56	청계동	13	파주읍	33	상면			
180	하남시	13			34			하면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40	죽산면	32	호저면	040	동해시	31	근덕면
41	삼죽면	33	지정면			32	근하면
42	고삼면	34	부론면	51	천곡동	33	노곡면
430	김포군	35	귀래면	52	송정동	34	미로면
11	김포읍	36	홍업면	53	북삼동	35	가곡면
31	고촌면	37	판부면	54	부곡동	36	신기면
32	양촌면	38	신림면	55	동호동	51	남양동
33	통진면	51	중평동	56	향로동	52	당저동
34	대곡면	52	원개동	57	발한동	53	교라동
35	대일면	53	명개동	58	사문동	54	정라동
36	하성면	54	명륜1동	59	목호동	55	사직동
32	강원도	55	명륜2동	60	북평동	56	사도동
010	춘천시	56	단구동	61	이원동	310	홍천군
11	신북읍	57	일산동	62	어달동	11	홍천읍
31	동면	58	학성1동	63	망상동	31	화춘면
32	동산면	59	학성2동	64	삼홍동	32	두촌면
33	신동면	60	단계동	65	삼화동	33	내촌면
34	동내면	61	우산동	050	태백시	34	서석면
35	남면	62	태장1동	51	황지1동	35	서면
36	남산면	63	태장2동	52	황지2동	36	남면
37	서면	64	태봉산1동	53	황지3동	37	서면
38	사북면	65	태봉산2동	54	상장동	38	북방면
39	북산면	66	행구동	55	장성동	39	내면
51	중양동	67	무실동	56	화광동	320	횡성군
52	교동	68	관설동	57	계산동	11	횡성읍
53	조운동	69	반곡동	58	철암1동	31	우천면
54	약사동	030	강릉시	59	철암2동	32	안흥면
55	죽림동	11	주문진읍	60	연화동	33	둔내면
56	소낙동	31	성산면	61	동점동	34	감천면
57	근화동	32	왕산면	62	문곡동	35	창일면
58	소양동	33	구정면	63	소도동	36	공근면
59	호반동	34	강동면	64	화전1동	37	공서면
60	후평1동	35	옥계면	65	화전2동	38	강림면
61	후평2동	36	사천면	66	사조동	330	영월군
62	후평3동	37	연곡면	060	속초시	11	영월읍
63	효자1동	51	홍제동	51	영랑동	12	상동
64	효자2동	52	중양동	52	명동	31	중동
65	효자3동	53	임당동	53	중양동	32	하동
66	석사동	54	옥천동	54	금호동	33	북면
67	퇴계동	55	교1동	55	청학동	34	북서면
68	은의동	56	교2동	56	교동	35	서천면
69	삼천동	57	포남1동	57	노학동	36	주주면
70	철송동	58	포남2동	58	조양동	37	주주면
71	사우동	59	초당동	59	청호동	340	평창군
72	우두동	60	송정동	60	대포동	11	평창읍
73	사농동	61	내곡동	61	도문동	32	미면
74	신동	62	장현동	62	도실동	33	방림면
020	원주시	63	노암동	63	장사동	34	대화면
11	문막읍	64	월호평동	070	삼척시	33	대평면
31	소초면	65	입암동	11	도계읍	34	봉평면
		66	두산동	12	원덕읍		
		67	유천동				
		68	죽헌동				
		69	운정동				
		70	저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35	용평면	33	토성면	32	상모면	35	남이면
36	진부면			33	이류면	36	문의면
37	도암면	410	양양군	34	신니면	37	현도면
				35	노은면	38	부용면
350	정선군	11	양양읍	36	양성면	39	강내면
		31	서양면	37	가금면	40	강외면
11	정선읍	32	손양면	38	금가면	41	옥산면
12	고한읍	33	현북면	39	동량면	42	오창면
13	사북읍	34	현남면	40	산척면	43	북이면
14	신동읍	35	강현면	41	엄정면	44	북일면
31	동면			42	소태면		
32	남면	33	충청북도	51	성내동	320	보은군
33	북면			52	충인동		
34	북평면	010	청주시	53	교현1동	11	보은읍
35	임계면			54	교현2동	31	내속리면
		011	상당구	55	용산동	32	외속리면
360	철원군			56	지현동	33	마로면
		51	영·북2·북3가동	57	문화동	34	탄부면
11	철원읍	52	문화·북1·남2가동	58	호암동	35	삼승면
12	김화읍	53	서운·남1가동	59	단월동	36	수한면
13	갈말읍	54	서문동	60	달천동	37	회남면
14	동송읍	55	남주동	61	봉방동	38	회북면
31	서면	56	석교동	62	칠금동	39	내북면
32	근남면	57	수동	63	연수동	40	산외면
33	근북면	58	우암동	64	목행동		
		59	내덕1동	65	안림동	330	옥천군
370	화천군	60	내덕2동				
		61	울랑·사천동	030	제천시	11	옥천읍
11	화천읍	62	탑·대성동			31	동이면
31	간동면	63	영운동	11	봉양읍	32	안남면
32	하남면	64	금천동	31	금성면	33	안내면
33	상서면	65	용담·명암·산성동	32	청풍면	34	청성면
34	사내면	66	용암·용정·방서동	33	수산면	35	청산면
		67	오근장동	34	덕산면	36	이원면
380	양구군			35	한수면	37	군서면
		012	홍덕구	36	백운면	38	군북면
11	양구읍			37	송학면		
31	남면	51	사직1동	51	교동	340	영동군
32	동면	52	사직2동	52	중앙동		
33	방산면	53	사창동	53	남천동	11	영동읍
34	해안면	54	모충동	54	명서동	31	용산면
		55	운천·신봉동	55	의림동	32	황간면
390	인제군	56	산·미·분·장동	56	용두동	33	추풍령면
		57	수곡동	57	동현동	34	매곡면
11	인제읍	58	성화·개신·죽림동	58	두학동	35	상촌면
31	남면	59	복대1동	59	청전동	36	양강면
32	북면	60	복대2동	60	화산1동	37	용화면
33	기린면	61	가경동	61	화산2동	38	학산면
34	서화면	62	봉명1동	62	영천1동	39	양산면
35	상남면	63	봉명2·송정동	63	영천2동	40	심천면
		64	강서1동				
400	고성군	65	강서2동	310	청원군	350	진천군
11	간성읍	020	충주시	31	낭성면	11	진천읍
12	거진읍			32	미원면	31	덕산면
31	현내면	11	주덕읍	33	가덕면	32	초평면
32	죽왕면	31	살미면	34	남일면	33	문백면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34	백곡면	35	성남면	53	대신동	320	연기군
35	이월면	36	수신면	54	대흥동		
36	만승면	37	병천면	55	왕대동	11	조치원읍
		38	동면	56	현포동	31	동서면
360	괴산군	39	직산면			32	남면
		40	입장동	040	아산시	33	남면
11	괴산읍	51	대룡동			34	남면
31	감물면	52	문성동	11	염치읍	35	전면
32	장연면	53	남산동	31	송악면	36	전동면
33	연풍면	54	원성1동	32	배방면	37	소정면
34	철성면	55	원성2동	33	탕정면		
35	문광면	56	성정1동	34	음봉면	330	논산군
36	청천면	57	성정2동	35	둔포면		
37	청안면	58	봉명동	36	영인면	11	논산읍
38	사리면	59	쌍용동	37	인주면	12	강경읍
39	소수면	60	쌍용동	38	선장면	13	연무읍
40	불정면	61	신용동	39	도고면	31	성동면
		62	신안동	40	신창면	32	광석면
370	음성군	63	부성동	51	은양1동	33	노성면
				52	은양2동	34	상월면
11	음성읍	020	공주시	53	권곡동	35	부적면
12	왕이면			54	신정동	36	연곡면
31	소원면	11	유구읍	55	용화동	37	별양면
32	남면	31	이인면	56	은주동	38	양촌면
33	맹동면	32	탄천면			39	가야곡면
34	대소면	33	계룡면	050	서산시	40	은진면
35	삼성면	34	반포면			41	채운면
36	생극면	35	장기면	11	대산읍		
37	감곡면	36	의당면	31	인지면	340	부여군
		37	정안면	32	부석면		
380	단양군	38	우성면	33	팔봉면	11	부여읍
		39	사곡면	34	지곡면	31	규암면
11	단양읍	40	신풍면	35	성연면	32	은산면
12	매포읍	51	중학동	36	음암면	33	외산면
31	단성면	52	중봉동	37	운산면	34	내산면
32	대강면	53	산성동	38	해미면	35	구룡면
33	가곡면	54	웅진동	39	고북면	36	홍산면
34	영춘면	55	금학동	51	부춘동	37	옥산면
35	어상면	56	옥룡동	52	동문동	38	남면
36	적성면	57	신관동	53	활성동	39	충화면
		58	금흥동	54	수석동	40	양화면
390	증평출장소			55	석남동	41	임천면
		030	보령시	56	오산동	42	장암면
11	증천지소					43	세도면
12	장평지소	11	웅천읍	310	금산군	44	석성면
13	도안지소	31	주포면			45	초촌면
		32	주교면	11	금산읍		
34	충청남도	33	오천면	31	금성면	350	서천군
		34	천북면	32	제원면		
010	천안시	35	청소면	33	제부리면	11	장항읍
		36	청라면	34	군북면	12	서천읍
11	성환읍	37	남포면	35	남일면	31	마서면
12	성거읍	38	주산면	36	남이면	32	화양면
31	풍세면	39	미산면	37	진산면	33	기산면
32	풍덕면	40	성주면	38	북수면	34	한산면
33	풍목면	51	원동	39	추부	35	마산면
34	북면	52	대관동			36	시초면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37	문산면	36	이월면	58	금암1동	11	함열읍
38	판교면			59	금암2동	31	오산면
39	중천면	400	당진군	60	팔복동	32	황등면
40	비인면			61	우아동	33	함라면
41	서면	11	당진읍	62	호성동	34	용포면
		12	합덕읍	63	전미동	35	성당면
360	청양군	31	고대면	64	송천동	36	용안면
		32	석문면	65	조촌동	37	낭산면
11	청양읍	33	대호지면	66	동산동	38	망성면
31	운곡면	34	정미면			39	여산면
32	대치면	35	면천면	013	효자출장소	40	금마면
33	대정면	36	순성면	51	서신동	41	왕궁면
34	목면	37	우강면	52	삼천1동	42	춘포면
35	청남면	38	신평면	53	삼천2동	43	삼기면
36	장평면	39	송악면	54	효자1동	44	용동면
37	남양면	40	송산면	55	효자2동	51	창인동
38	화성면			56	효자3동	52	중앙동
39	비봉면	410	계룡출장소			53	평화동
						54	갈산동
370	홍성군	11	두마지소	020	군산시	55	주현동
		12	남선지소			56	인화동
11	홍성읍			11	옥구읍	57	동산동
12	광천읍	35	전라북도	31	옥산면	58	마중1가동
31	홍북면			32	회현면	59	남중2가동
32	금마면	010	전주시	33	임피면	60	모현동
33	홍동면			34	서수면	61	송학동
34	장곡면	011	완산구	35	대야면	62	목천동
35	은하면			36	개정면	63	계문동
36	결성면	51	중앙동	37	성산면	64	계신동
37	서부면	52	경원동	38	나포면	65	북일동
38	갈산면	53	풍남동	39	옥도면	66	북신동
39	구항면	54	전동	40	옥서면	67	신홍동
		55	다가동	51	해망동	68	팔봉동
		56	고사동	52	신흥동	69	삼성동
380	예산군	57	교동	53	신흥동		
		58	태평1가동	54	월명동	040	정읍시
11	예산읍	59	태평2가동	55	오룡동		
12	삽교읍	60	중노송1가동	56	신흥동	11	신태인읍
31	대술면	61	중노송2가동	57	삼학동	31	북면
32	신양면	62	남노송동	58	명산동	32	입암면
33	광시면	63	동완산동	59	중앙로1가동	33	소성면
34	대흥면	64	서완산동	60	중앙로2가동	34	고부면
35	응봉면	65	동서학동	61	중앙로3가동	35	영원면
36	덕산면	66	서서학동	62	미원동	36	덕천면
37	봉산면	67	중화산동	63	중동	37	이평면
38	고덕면	68	평화동	64	홍남동	38	정우면
39	신암면	69	남고동	65	조촌동	39	태인면
40	오가면			66	경암동	40	감곡면
				67	구암동	41	옹동면
390	태안군	012	덕진구	68	개정동	42	칠보면
				69	수송동	43	산내면
11	태안읍	51	서노송동	70	나운1동	44	산외면
12	안면읍	52	진북1동	71	나운2동	51	수성동
31	고남면	53	진북2동	72	소룡동	52	장명동
32	남면	54	인후1가동	73	미성동	53	상동
33	근흥면	55	인후2가동			54	시기1동
34	소원면	56	인후3가동	030	익산시	55	시기2동
35	원북면	57	덕진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56	시기3동	55	서흥동	32	운암면	36	전라남도		
57	연지동	56	교동	33	신평면	010	목포시		
58	농소동	57	월촌동	34	성수면				
59	상평동	310	완주군	35	오수면	51	용당1동		
60	과교동			36	신덕면			37	삼계면
61	내장동			38	관촌면			39	강진면
62	정일동	39	김진면	40	덕치면				
050	남원시	31	삼례읍	41	지사면			52	용당2동
		32	봉음동	360	순창군			53	산정1동
33	용진면	11	순창읍					54	산정2동
34	상관면	31	인계면	32	동계면			55	산정3동
35	이서면	32	동계면	33	적성면			56	산성1동
36	소양면	33	적성면	34	유등면			57	대성2동
37	구이면	34	유등면	35	풍산면	58	대양동		
38	고산면	35	유등면	36	금과면	59	북교동		
39	비봉면	36	금과면	37	팔덕면	60	북교동		
38	운주면	37	팔덕면	38	북흥면	61	호남동		
39	화산면	38	북흥면	39	쌍치면	62	죽무동		
40	동상면	39	쌍치면	40	구림면	63	죽무동		
41	경천면	40	쌍치면	370	고창군	64	죽무동		
320	진안군	11	진안읍			11	고창읍	65	영해동
		31	용담면	31	고산면	66	유달동		
32	안천면	32	안천면	32	아산면	67	유달동		
33	동향면	33	동향면	33	무장면	68	만호동		
34	상전면	34	상전면	34	무공읍	69	서산동		
35	백운면	35	백운면	35	상하면	70	온금동		
36	성수면	36	성수면	36	해리면	71	죽교1동		
37	마령면	37	마령면	37	성송면	72	죽교2동		
38	마귀면	38	마귀면	38	대산면	73	죽교3동		
39	부정면	39	부정면	39	심원면	74	달성동		
40	주천면	40	주천면	40	홍덕면	75	대반동		
330	무주군	11	무주읍	41	성내면	76	충연동		
		31	무풍면	42	신림면	77	삼향동		
32	설천면	32	설천면	43	부안면	78	상용동		
33	적상면	33	적상면	380	부안군	020	여수시		
34	안성면	34	안성면					51	종화동
35	부남면	35	부남면	52	수정동				
340	장수군	340	장수군	53	공화동				
				11	장수읍			54	관문동
31	산서면	11	부안읍	55	고소동				
32	산암면	31	주산면	56	동산동				
33	번암면	32	동진면	57	중양동				
34	장계면	33	행안면	58	교동				
35	천천면	34	계화면	59	군중동				
36	계남면	35	계화면	60	군무동				
350	임실군	350	임실군	61	충연동				
				31	장수읍	62	광무동		
11	임실읍	32	행안면	63	서교동				
31	청용면	33	계화면	64	봉강동				
310	완주군	310	완주군	34	보안면	65	봉산동		
				11	장수읍	66	남산동		
12	봉음동	35	변산면	67	국동				
31	용진면	36	진서면	68	신월동				
32	상관면	37	백산면	69	신경호동				
33	이서면	38	상서면	70	여서동				
34	소양면	39	하서면	71	문수동				
35	구이면	40	하포면						
36	고산면	41	줄포면						
37	비봉면	42	위도면						
38	운주면								
39	화산면								
40	동상면								
41	경천면								
320	진안군	320	진안군						
11	진안읍								
31	용담면								
32	안천면								
33	동향면								
34	상전면								
35	백운면								
36	성수면								
37	마령면								
38	마귀면								
39	부정면								
40	주천면								
330	무주군	330	무주군						
11	무주읍								
31	무풍면								
32	설천면								
33	적상면								
34	안성면								
35	부남면								
340	장수군	340	장수군						
11	장수읍								
31	산서면								
32	산암면								
33	번암면								
34	장계면								
35	천천면								
36	계남면								
350	임실군	350	임실군						
11	임실읍								
31	청용면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72	오림동	56	송현동	36	고달면	38	득량면
73	미평동	57	남산동	37	옥과면	39	회천면
74	둔덕동	58	영산동	38	입면	40	용치면
75	오천동	59	부덕동	39	결면		
76	만흥동	60	이창동	40	오산면	370	화순군
77	덕충동	61	가야동				
030	순천시	050	여천시	330	구례군	11	화순읍
11	승주읍	51	쌍봉동	11	구례읍	31	한천면
31	주암면	52	시전동	31	문척면	32	춘양면
32	송광면	53	여천동	32	간전면	33	청풍면
33	외서면	54	주삼동	33	토지면	34	이양면
34	낙안면	55	삼일동	34	마산면	35	능주면
35	별량면	56	묘도동	35	광의면	36	도곡면
36	상사면	57	상암동	36	용방면	37	도암면
37	해룡면			37	산동면	38	이서면
38	서면	060	광양시	340	여천군	39	북면
39	황전면	11	광양읍	11	들산읍	40	동면
40	월등면	31	강면	31	소과면	41	남면
51	용수동	32	룡면	32	소울촌면	42	동면
52	영옥동	33	옥곡면	33	화양면	380	장흥군
53	행금동	34	진상면	34	화정면	11	장흥읍
54	매곡동	35	진월면	35	화정면	12	관읍
55	삼산동	36	다압면	36	화정면	13	덕읍
56	조곡동	51	다압면	51	화정면	31	대용면
57	덕연동	52	성황동	52	화정면	32	안양면
58	풍덕동	53	중마동	53	고흥군	33	장동면
59	남제동	54	광영동	54	고흥읍	34	장평면
60	저전동	55	태인동	55	도양읍	35	유치면
61	장천동	56	금호동	56	풍양면	36	부산면
62	중양동	57	금당동	57	도덕면	37	회진면
63	대평동						
64	덕흥동	310	담양군	33	금산면	390	강진군
65	인안동	11	담양읍	34	도화면	11	강진읍
66	왕조동	31	봉산면	35	포두면	31	군동면
		32	고서면	36	봉래면	32	면면
040	나주시	33	고서면	37	동일면	33	칠량면
11	남평읍	34	창평면	38	점암면	34	대구면
31	세지면	35	대덕면	39	영남면	35	마량면
32	왕곡면	36	무정면	40	과역면	36	도암면
33	반남면	37	금성면	41	남양면	37	신전면
34	공산면	38	용면	42	동강면	38	성전면
35	동강면	39	월산면	43	대서면	39	작천면
36	다시면	40	수북면	44	두원면	40	병영면
37	문평면	41	대전면				음천면
38	노안면			360	보성군	400	해남군
39	금천면			11	보성읍	11	해남읍
40	금산포면	320	곡성군	12	별교읍	31	삼산면
41	다도면	11	곡성읍	31	노동면	32	화산면
42	봉황면	31	오곡면	32	미력면	33	현산면
51	송월동	32	삼기면	33	결백면	34	송지면
52	영강동	33	석곡면	34	울어면	35	송평면
53	향교동	34	목사동	35	북내면	36	북일면
54	금남동	35	죽곡면	36	문덕면	37	북옥
55	성북동			37	조성면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38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38	낙월면	37	경상북도	33	내남면 내산면 서현면 곡동면 강천면 북면 성내동 성동동 성오동 중앙동 성건동 정동동 황남동 인교동 선도동 도동동 보황동 강성동 동천동 정래동 국동 보덕동		
39		450	장성군	010	포항시	34			
40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1	장성읍	011	남 구		35	
41			31	진원면	11			구룡읍	36
42			32	남면	12			연일읍	37
43	33		동화면	13	오천읍			38	
410	영암군		34	삼서면	31			대송면	51
11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35	삼계면	32	동해면			52	
31		36	황룡면	33	장기면			53	
32		37	서삼면	34	대보면			54	
33		38	북일면	51	상대1동			55	
34		39	북이면	52	상대2동			56	
35		40	북하면	53	해도1동	57			
36		460	완도군	54	해도2동	58			
37		11	완도읍	55	송도동	59			
38		12	금일읍	56	청림동	60			
39		13	노화읍	57	제철동	61			
40	31	군외면	58	효곡동	62				
420	무안군	32	신지면	59	대이동	63			
11	무안읍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33	고금면	012	북 구	64			
12		34	약산면	11	홍해읍	030			
31		35	청산면	31	신광면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32		36	소안면	32	청하면				
33		37	금당면	33	송라면				
34		38	보길면	34	기계면				
35		39	생일면	35	죽장면				
36		470	진도군	36	기북면				
37		11	진도읍	51	대홍동				
430		합평군	31	군내면	52			중양동	
11	합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32	고군면	53	덕수동				
31		33	의신면	54	대신동				
32		34	임회면	55	동빈동				
33		35	지산면	56	화학산동				
34		36	조도면	57	항구동				
35		480	신안군	58	양학동				
36		11	지도읍	59	죽도1동				
37		31	증도면	60	죽도2동				
38		32	임자면	61	용흥1동				
440		영광군	33	자은면	62	용흥2동			
11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남산면 염성면	34	비금면	63	우창동				
12		35	도초면	64	두호동				
13		36	후산면	65	장량동				
31		37	하의면	66	환여동				
32		38	신의면	020	경주시				
33		39	장산면	11	감포읍				
34		40	안좌면	12	안강읍				
35		41	팔금면	13	건천읍				
36		42	암태면	14	외동읍				
37		43	압해면	31	양북면				
				32	양남면				
						040	안동시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읍면동 산룡면 와후면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입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중구동 명륜동 옥울동 신홍동 용성동 동남동 대홍동 대신동 당북동 태화동 법상동 평화동 안기동 안막동 옥동 송하동 송천동 강남동	65 66 67 68 69 70 71 72	공단2동 광평동 사곡동 상모동 임오동 인민동 진미동 양포동	080	상주시	52 53 54 55 56	동부동 서부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060	영주시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51 52 53 54 55 56 57	풍기읍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순홍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1동 하망2동 하망3동 영주1동 영주2동 영주3동 영주4동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가흥2동	090	문경시	11 12 31 32 33 34 35 36 37 51 52 53 54 55 56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동 점촌동 중앙동 신흥동 신기동 대성동 모전동
050	구미시	070	영천시	100	경산시	11 31 32 33 34 35 36 37	하양읍 와촌면 진량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압량면 남천면 중양동		
11 31 32 33 34 35 36 37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읍면동 선무읍 울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고아면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원평3동 도량동 지산동 선주동 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56 57 58 59	금호읍 청녕면 신녕면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 동부동 중양동 교동동 완산동 주남동 봉작동 영도동 대전동 명산동	110	경산시	11 31 32 33 34 35 36 37	하양읍 와촌면 진량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압량면 남천면 중양동		
				310	군위군	11 31 32 33 34 35 36 37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320	의성군	11 31 32 33 34 35 36 37	의성읍 춘면면 단곡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양안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330	청송군	11 31 32 33 34 35 36 37	청송읍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파천면 파진면		
				340	영양군	11 31 32 33 34 35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수석보면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350	영덕군	37	기산면	52	도계동	58	무거1동	
11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400	예천군	53	동정동	59	무거2동	
31		11 예천읍 31 용문면 32 상리면 33 하리면 34 감천면 35 보문면 36 호명면 37 유천면 38 용궁면 39 개포면 40 지보면 41 풍양면	11	예천읍	54	소계동	60	옥동
32			31	용문면	55	팔용동	61	야음1동
33			31	용문면	56	명서1동	62	야음2동
34			32	상리면	57	명서2동	63	야음3동
35			33	하리면	58	봉곡동	64	선암동
36			34	감천면	59	사림동	65	개운동
37			35	보문면	60	반림동	66	장생포동
38			36	호명면	61	반지동		
			37	유천면	62	대원동	023	동 구
	38		용궁면	63	내동			
360	청도군			64	용호동	51	방어동	
11	화양읍 청도읍 남각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410	봉화군	65	신월동	52	일산동	
12		11 봉화읍 31 물야면 32 봉성면 33 법전면 34 춘양면 35 소천면 36 석포면 37 재산면 38 명호면 39 상운면	11	봉화읍	66	사과동	53	화정동
31			31	물야면	67	상남동	54	대송동
32			32	봉성면	68	중앙동	55	전하1동
33			33	법전면	69	가음동	56	전하2동
34			34	춘양면	70	남산동	57	전하3동
35			35	소천면	71	대방동	58	남목1동
36			36	석포면	72	성주동	59	남목2동
37			37	재산면	73	신촌동	60	남목3동
			38	명호면	74	삼귀동	61	주전동
	39		상운면					
370	고령군	420	울진군	020	울산시	024	울주구	
11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11	울진읍	021	중 구	11	농소읍	
31		11 울진읍 12 평해면 31 북서면 32 근남면 34 원남면 35 기성면 36 온정면 37 죽변면 38 후포면	31	평해면	51	학성동	31	강동면
32			31	북서면	52	반구1동	32	온산면
33			32	근남면	53	반구2동	33	서생면
34			34	원남면	54	북산1동	34	온양면
35			35	기성면	55	북산2동	35	청량면
36			36	온정면	56	북정동	36	용춘면
37			37	죽변면	57	옥교동	37	범서면
			38	후포면	58	성남동	38	두동면
					59	우정동	39	두서면
				60	태화동	40	언양면	
380	성주군	430	울릉군	61	다운동	41	상북면	
11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11	울릉읍	62	병영1동	42	삼남면	
31		11 울릉읍 31 서면 32 북면	31	서면	63	병영2동	43	상동면
32			31	용암면	64	약사동		
33			32	수륜면	65	진장동	030	마산시
34			32	가천면	66	효문동	031	합포구
35			32	대가면	67	송정동		
36			32	벽진면	68	양정동		
37			32	초전면	69	염포동		
38			32	월항면				
39			32	월항면				
390	칠곡군	38	경상남도	022	남 구	31	구산면	
11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석적면 복삼면 약북면	010	창원시	51	신정1동	32	진동면	
31		11 동북읍 31 대산면 32 의안동	11	동북읍	52	신정2동	33	진북면
32			31	대산면	53	신정3동	34	진전면
33			32	의안동	54	신정4동	51	현동
34			32	의안동	55	신정5동	52	가포동
35			32	의안동	56	달동	53	가월영1동
36			32	의안동	57	삼산동	54	가월영2동
							55	창포동
							56	월영1동
							57	창포남동
						58	반월동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59	완월동	57	중안동	51	도천동	59	삼안동		
60	자산동	58	봉곡동	52	서호동	60	불암동		
61	서성동	59	상봉동	53	명정동	090	밀양시		
62	동성동	60	상봉서동	54	항남동				
63	부림동	61	봉래동	55	문화동	11	삼량진읍		
64	추산동	62	장대동	56	태평동				
65	중성동	63	장대동	57	동호동	12	하남읍		
66	성호동	64	옥봉남동	58	정량동	31	부북면		
67	교원동	65	옥봉북동	59	부신동	32	상동면		
68	교방동	66	상대1동	60	무전동	33	산외면		
69	상남1동	67	상대2동	61	평립동	34	산내면		
70	상남2동	68	하대동	62	인평동	35	단장면		
71	오동	69	상평동	63	당동	36	상남면		
72	산호1동	70	초전동	64	미수1동	37	초동면		
73	산호2동	71	장재동	65	미수2동	38	무안면		
032	회원구	72	평거동	66	봉평동	39	청도면		
		73	신안동	67	도남동	51	내일동		
		74	이현동	070	사천시	52	내이동		
		75	판문동			53	교동		
		76	가호동	11	사천읍	54	삼문동		
		11	내서읍	050	진해시	31	사정동	55	삼가읍
						32	사정남면	56	용활동
33	사정용현면					100	거제시		
34	사정용곡면								
35	사정용곡면					11	신현읍		
36	사정용곡면					31	일운면		
37	사정용곡면					32	동부면		
38	사정용곡면			33	남부면				
39	사정용곡면			34	거제면				
40	사정용곡면			35	둔덕면				
41	사정용곡면			36	사등면				
42	사정용곡면			37	연초면				
43	사정용곡면			38	하청면				
44	사정용곡면			39	장목면				
45	사정용곡면	51	장승포동						
51	내동면	52	마전동						
52	내동면	53	능포동						
53	내동면	54	아주동						
54	내동면	55	옥포1동						
55	내동면	56	옥포2동						
040	진주시	060	통영시	11	진영읍	310	의령군		
				31	진장읍				
				32	진주읍	11	의령읍		
				33	진주읍	31	가례면		
				34	진주읍	32	가칠곡면		
				35	진주읍	33	대의면		
				36	진주읍	34	대화정면		
				37	진주읍	35	용덕면		
				38	진주읍	36	정곡면		
				39	진주읍	37	지정면		
				40	진주읍	38	낙서면		
				41	진주읍	39	부림면		
				42	진주읍	40	부봉수면		
				43	진주읍	41	공유면		
44	진주읍	42	유곡면						
45	진주읍								
51	문산읍								
52	문산읍								
53	문산읍								
54	문산읍								
55	문산읍								
56	문산읍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320	함안군	360	남해군	400	거창군	69	도두동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여항면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남해읍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서면 고현면 실천면 창선면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거창읍 주상면 옹양면 고계면 복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020	서귀포시
330	창녕군	370	하동군	410	합천군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송산동 방동동 정양동 중천동 지동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서문동 대천동 대중동 예혜동
11 12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창녕읍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이면 대지면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횡천면 고전면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중면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울곡면 초계면 쌍채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310	북제주군
11 12 13 14 31 32 33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380	산청군	39	제주도	320	남제주군
340	양산군	11 31 32 33 34 35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010	제주시	11 12 13 31 32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340	양산군	11 12 31 32 33 34 35	양산읍 웅상읍 동면 물금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용담3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350	고성군	390	함양군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1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백병곡면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북한	048	창성군	093	통천군	750	아프리카 전지역 미상
	황해도	049	벽동군	094	고성군	790	
001	해주시 사리원시 송림시 벽성군 연백군 금천군 평산군 신계군 장연군 송화군 은율군 안악군 신천군 제령군 황주군 봉산군 서흥군 수안군 곡산군	050	위원군	095	인제군		
002		051	초산군	096	양구군		
003		052	회천군	097	회양군		
004		053	강계군	098	평강군		
005		054	자성군	099	이천군		
006		055	후창군	100	김화군		
007			함경남도	101	철원군		
008					외국		
009			056	함흥시	310	중국	
010			057	원산시	320	홍콩	
011			058	홍남시	330	일본	
012			059	함주군	340	마카오	
013			060	정평군	350	캄보디아	
014			061	영흥군	360	인도네시아	
015			062	고원군	370	말레이시아	
016			063	문천군	380	미얀마	
017			064	안변군	390	필리핀	
018			065	홍원군	400	싱가포르	
019			066	북청군	410	태국	
	평안남도	067	이원군	420	베트남		
020	평양시 진남포시 대동군 순천군 맹산군 양덕군 성천군 강동군 중화군 용강군 강서군 평원군 안주군 개천군 덕천군 영원군	068	단천군	430	방글라데시		
021		069	신흥군	440	인도		
022		070	장진군	450	이란		
023		071	풍산군	460	이라크		
024		072	삼수군	470	네팔		
025		073	갑산군	480	파키스탄		
026		074	혜산군	490	스리랑카		
027			함경북도	500	바레인		
028			075	청진시	510	이스라엘	
029			076	나진시	520	쿠웨이트	
030			077	성진시	530	사우디아라비아	
031			078	학성군	540	터어키	
032			079	길주군	550	기타아시아지역	
033			080	명천군	560	덴마크	
034			081	경성군	570	이태리	
035			082	부령군	580	스페인	
	평안북도	083	무산군	590	프랑스		
036	신의주시 의주군 용천군 철산군 선천군 정주군 박천군 영변군 운산군 태천군 구성군 삭주군	084	회령군	600	독일		
037		085	중성군	610	스위스		
038		086	운성군	620	영국		
039		087	경원군	630	러시아		
040		088	경흥군	640	구소련 (러시아제외)		
041			경기도	650	기타유럽지역		
042			089	개성시	660	미국	
043			090	장단군	670	캐나다	
044			091	개풍군	680	멕시코	
045			092	웅진군	690	브라질	
046			강원도	700	아르헨티나		
047				710	기타아메리카		
				720	호주		
				730	뉴질랜드		
				740	기타대양주지역		



승 인 번 호
제 00000 호

정부에서는 통계법 제3조에 의거 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통계조사만 “정부승인 통계마크”를 표시토록 하였으니 이 마크가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성실한 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응답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